「보험동향」 2003년 여름호 통권 제26호 2003년 7월 1일 발행 등록 1997년 7월 15일 (바-2873)

통권 제26호
2003년 여름호

# 보 험 동 향

## Insurance Trends

◆ 테마진단

방카슈랑스 시대의 개막 :
국내보험산업에의 영향과 대응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동향 및 특징

◆ 보험지표동향

보험산업 총괄
보험 주요지표 분석

◆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재경부,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초안 마련
생·손보 직무위험등급 일원화 기준 마련
2003년도 하반기 보험감독 중점추진과제
재경부, 통합금융법 2007년 시행 예정

◆ 해외보험동향

미국, 보험업계 위기와 대처
북미, 건강보험 계약심사기법의 신경향
미국, 장기간병보험 실태
미국,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미국, 손해보험회사 파산 실태
미국,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오차 분석

◆ OECD 동향

OECD의 보험관련 국제기준 논의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 목 차

**테마진단** ..... **1**

1. 방카슈랑스 시대의 개막 : 국내보험산업에의 영향과 대응 ..... 1
2. 방카슈랑스 시대의 개막 :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동향 및 특징 ..... 19

**보험지표동향** ..... **35**

1. 보험산업 총괄 ..... 35
2. 보험 주요지표 분석 ..... 42
   가. 생명보험 ..... 42
   나. 손해보험 ..... 56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 **72**

1. 재경부,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초안 마련 ..... 72
2. 생·손보 직무위험등급 일원화 기준 마련 ..... 76
3. 2003년도 하반기 보험감독 중점추진과제 ..... 78
4. 재경부, 통합금융법 2007년 시행 예정 ..... 81

**해외보험동향** ..... **83**

1. 미국, 보험업계 위기와 대처 ..... 83
2. 북미, 건강보험 계약심사기법의 신경향 ..... 92
3. 미국, 장기간병보험 실태 ..... 101
4. 미국,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 109
5. 미국, 손해보험회사 파산 실태 ..... 113
6. 미국,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오차 분석 ..... 117

**OECD 동향** ..... **123**

1. OECD의 보험관련 국제기준 논의 동향 ..... 123

**통계표** ..... **129**

# 테 마 진 단

## ◆ 방카슈랑스 시대의 개막 : 국내보험산업에의 영향과 대응*

안 철 경
보험개발원 동향분석팀장

### 1. 방카슈랑스의 도입 배경

| |
|---|
|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프랑스어인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8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대표적인 금융겸업모델** |

□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프랑스어인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8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대표적인 금융겸업모델임.

o 협의로는 "동일 점포(지점) 내에서 동일 금융기관이 은행상품 및 보험상품을 제공·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사실상 통합한 형태로 금융서비스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 또는 보험회사가 채택하는 전략"으로 정의됨.[1)]

□ 유럽의 경우 지난 15년간 은행과 보험회사간의 연이은 인수, 합병, 합작투자를 통해 방카슈랑스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제 유럽 금융권에서 방카슈랑스는 가장 지배적인 요소로 등장함.[2)]

o 유럽의 생명보험 및 연금 시장에서 방카슈랑스 채널의 시장점유율은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의 경우 각각 72.2%(ICEA, 2000), 60%(FFSA, 2001), 54.1%(ANIA, 2000)로 50%를 넘어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로 활동중이며, 영국은 아직 10% 정도에 그치고 있음.[3)]

---

* 본 논문은 보험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개인견해임을 밝힘.
1) Nadege Genetay & Philip Molyneux, *Bancassurance*, 2000.
2) Susan Drury, *European Bancassurance*, Lafferty Publication, 2001.

o 유럽에 있어 공적연금의 민영화는 새로운 투자상품을 개발하도록 시장을 자극할 것이며 완벽한 서비스의 소매금융 서비스 모델을 추구하도록 은행들과 보험회사들을 독려할 것임.

o 향후 유럽의 방카슈랑스는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저수익률, 경쟁격화, 정부에 의한 연금제도개혁과 노후저축촉진책 등에 따라 유럽 생보사들이 판매채널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전역에서 더욱 성장해 갈 것으로 전망됨.

□ 독일의 Allianz와 Dresdner Bank의 결합으로 세계 4위 규모의 금융그룹이자 유럽 최대의 방카슈러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미래 EU의 금융 서비스를 지배하게 될 금융구조가,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은행업과 보험업을 통합한 막강한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주도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을 시사함.

| |
|---|
| **방카슈랑스의 시행은 보험구입의 편리성과 보험모집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보험소비자의 편익 향상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어야 함.** |

□ 국내에서는 보험구입의 편리성과 보험모집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보험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2003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방카슈랑스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됨.

o 지금까지 은행에서의 보험판매는 보험사가 은행창구를 빌려 직접 보험판매를 한 것으로 은행의 직접적인 보험판매가 아니었으나, 방카슈랑스 시대의 개막으로 은행이 주체가 되어 은행직원을 통해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됨.

o 종전에 보험모집시장에의 은행등의 참여를 제한[4]한 이유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상당히 커 시장참여 자체를 금지하였음.

- 예를 들면, 보험상품은 푸시형 상품으로 보험판매과정에서 모집종사자의 권유행위가 필수적이고, 그 권유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필요치 않는 상품을 구입하게 되는 불완전판매의 개연성이 높아 보험모집시장

3) Miguel Florido, *Bancassurance in Europe*, Nov. 2002, LIMRA Europe Ltd.
4) 보험업법상 은행등의 보험모집시장 참여 규제는 보험업법(개정전) 제149조제4항과 제150조의2제2항 참조.

참여자체를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지해왔음.

□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은행등의 보험모집시장 참여를 허용한 취지는 은행창구에서 원스톱쇼핑(one-stop-shopping)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상품 구매 편리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o 또한 은행등이 기존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보험모집을 함으로써 보험판매비용 또는 관련 사업비가 절감되어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등의 양질의 보험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순기능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음.

## 2. 국내 방카슈랑스 추진현황

**대형사의 판매제휴 독점을 방지하고 중소형사에게도 방카슈랑스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제정된 규제가 근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휴 편중 현상이 두드러짐.**

□ 방카슈랑스는 2003년 8월 저축성·가계성보험부터 허용하여 2005년 4월부터는 개인보장성보험으로 확대하고, 2007년 4월에는 단체보험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임.

**<표 1> 방카슈랑스 허용 보험상품 범위**

| | 시기 | 허용종목 | |
|---|---|---|---|
| |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1단계 | 시행령시행일<br>2005.3.31 | 1. 개인저축성보험<br>가. 개인/ 일반연금<br>나. 교육보험<br>다. 생사혼합보험<br>라. 그밖의 개인저축성<br>2. 신용생명보험 | 1. 개인연금<br>2. 장기저축성보험<br>3. 화재보험(주택)<br>4. 상해보험(단체상해제외)<br>5. 종합보험<br>6. 신용손해보험 |
| 2단계 | 2005.4.1<br>2007.3.31 | 1. 1단계 허용상품<br>2. 개인보장성보험 | 1. 제1단계 허용상품<br>2. 장기보장성보험<br>3. 자동차보험(개인용) |
| 3단계 | 2007.4.1 이후 | 모든 생명보험상품 | 모든 손해보험상품 |

□ 방카슈랑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휴 실적을 보면, 대형사의 제휴독점을 방지하고 중소형 보험사에게도 방카슈랑스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제정된 규제가 근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중소형사가 배제되는 등 제휴 편중 현상[5]이 나타났음.

o 즉, 브랜드을 갖춘 상위보험사와 일부 외국보험사 및 국내사들은 다수의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음.

o 반면 국내 중하위사의 경우 제휴관계를 대부분 성사시키지 못함(<부표>참조).

| |
|---|
| **정부는 방카슈랑스 도입과 동시에 초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방카슈랑스시 금지행위 및 모집시 영업기준 등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 |

□ 보험사와 금융기관과의 판매제휴 협상 과정에서 은행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요구하거나, 계약자보호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규제방안 마련이 요구되었음.

o 이에 개정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기관의 보험 모집자격, 금지행위 및 준수사항, 보험회사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6]

□ 법 제100조 ①항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7]등의 모집시 금지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o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끼워팔기 등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모집행위

o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o 당해 금융기관의 점포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

5) 2003년 6월 기준 제휴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은 10개이상과 제휴를 맺은 반면, 대신생명, 동부생명, 뉴욕생명, SK생명, 한일생명, 프루덴셜생명, 신동아화재, 그린화재, 쌍용화재, 제일화재 등은 제휴실적이 없음.
6) 법 시행령의 경우 개정안(2003.6.27자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을 중심으로 살펴봄.
7) 개정법률에 의해 규정된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외에 특수은행(기업, 산업은행) 및 신용카드사를 시행령에서 포함함.

o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당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o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모집에 종사하는 자 이외의 소속 임원 또는 직원에게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도록 하고 소개수수료 등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시행령 제48조 ①)

□ 법 제100조 ②항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시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o 당해금융기관이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계약 미체결시에도 대출등을 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것

o 당해 금융기관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릴 것

o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할 것

o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당해 금융기관의 본점에 설치하여 운영할 것(시행령 제48조 ②)

□ 법 제100조 ③항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o 당해 금융기관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할인을 요구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금지원 및 보험료 등의 예탁을 요구하는 행위

o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함에 있어 발생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o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 등을 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모집수수료 이외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행위(시행령 제48조 ③).

- 보험요율의 산출에 개입하는 등 보험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행위(시행령 제48조 ③).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o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8] 및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9]의 수 및 영업기준 등[10]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모집방법>

·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점포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방법(In-bound).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안내 또는 설명하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의 청약이 있는 경우 모집하는 방법.

· 신문·방송 등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 등을 소개·설명하는 방법.

<보험설계사의 수>

· 모집에 종사하는 인원수는 금융기관의 점포별로 2인의 범위내로 하고, 모집에 종사하는 인원은 대출 등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모집을 위해 별도의 사용인을 둘 수 없음.

<영업기준>

·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금융기관[11]은 1개 보험회사 상품을 50% 이상 모집할 수 없으며, 동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대리점과 특수한 관계(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가 있는 보험회사의 상품판매액은 합산하여 적용함.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모집수수료율을 점포의 창구 및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는 모집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하여야 함.

---

8) 법 제9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0조 2항
9) 보험업법개정을 반영하여, '보험모집인'을 '보험설계사'로 개칭함.
10) 법 제9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0조 3항 내지 8항
11) 2002년 12월말 현재 은행 15개, 증권사 9개임

## 3. 국내 보험산업에의 영향

### 가. 보험판매채널 재편의 계기

| |
|---|
| **은행의 보험판매는 전통적인 보험판매채널인 전속보험설계사 채널에 위기감을 높여 모집조직의 재편흐름을 더욱 강화할 것임.** |

□ 은행이 넓은 점포망과 고객기반,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리성에 더하여 저비용 판매채널로서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국내에서 방카슈랑스의 진전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는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재편을 촉진하는 동력이 될 것임.

- o 은행채널의 등장으로 보험사는 판매 분야의 비용절감과 경쟁우위를 갖춘 판매채널 구축에 대한 강한 압력을 받게 될 것임.
- o 보험사는 은행채널 활용 이외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채널의 전문화, 다이렉트마케팅 채널의 확대 등 판매채널 구조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o 기존채널 중심의 푸시형 영업전략을 수정하고 부유층 고객을 중심으로 생애재무설계서비스,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세무 및 상속 등의 각종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이 심화될 것임.

### 나. 보험산업 구조개편 가속화

| |
|---|
| **은행이 보험판매 제휴단계에서 자회사 설립단계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은행자본 진입을 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 구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보험사 처리를 중심으로 진행된 보험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은행과 보험업의 영역을 허무는 방카슈랑스 도입은 보험산업 구조개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o 방카슈랑스 도입은 판매채널 재편, 산업 구조조정, 겸업화, 글로벌화 등 보험산업의 구조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됨.

□ 은행의 보험자회사 설립으로 이어지는 방카슈랑스의 진전은 보험산업내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o 은행채널의 등장으로 보험사의 주력 판매채널인 보험설계사조직이 위협을 받으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수익성 확보에 필요한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o 전속보험설계사 채널의 위기는 경쟁력이 취약한 보험사의 성장 위축과 더불어 산업내 구조조정으로 확산될 수 있음.

□ 은행이 보험판매 제휴단계에서 자회사 설립단계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은행자본 진입을 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 구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o 금융지주회사나 은행자본을 중심으로 기존 보험사에 대한 인수·합병, 새로운 보험회사 설립이 나타날 수 있음.

### 다. 겸업화 및 대형화 진전 및 글로벌 금융기관 영향력 확대

| |
|---|
| **방카슈랑스는 보험을 포함한 국내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의 한 계기로 작용할 것임.** |

□ 방카슈랑스로 인해 금융겸업화가 보험업을 포괄하는 단계로 진전됨에 따라 통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금융지주회사 설립, 대형 금융기관간 전략적 제휴 강화 등의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o 대형 금융기관의 보험업 참여로 보험산업 내 경쟁은 보험권역을 넘어선 종합금융그룹간 경쟁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임.

o 금융겸업화가 진전된 유럽 금융시장에서의 활동경험을 가진 외국 금융그룹들은 겸업금융기관의 시너지 효과와 방카슈랑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보험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됨.

## 4. 방카슈랑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대응방안

### 가. 보험회사 측면

| |
|---|
| **시행 초기 채널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러한 갈등은 보험상품 판매비용의 절감분을 훨씬 초과하는 조정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널간 갈등 해소에 주력** |

□ 방카슈랑스로 인해 보험시장의 채널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갈등은 은행 지점을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로 절감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조정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널간 갈등 해소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o 채널간 갈등해소를 위해 판매자회사 방식의 적극적 검토, 채널별 상품 포트폴리오, 기존 조직의 전문화 등 채널활용방안에 대한 회사별 연구가 필요함.
- o 보험산업적 차원에서는 방카슈랑스가 기존 보험회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의 보험 인식제고, 보험 신시장 개척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o 보험사는 고유의 본업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은행의 광범위한 지점 네트워크를 통한 cross-selling의 수익기반을 강화함.

□ 보험회사는 자사와 제휴관계를 맺은 은행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향후 방카슈랑스로 인하여 전개될 시장경쟁구도에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함.

- o 초기 은행과의 판매제휴 단계를 지나면 판매제휴 파트너인 은행이 추가적 이익의 확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판매채널 및 고객정보 측면에서의 우위를 내부화하려 할 경우 보험회사는 시장기회를 상실할 리스크가 매우 높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함.
- o 대형은행과 제휴를 맺은 보험회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제2단계로 예상되는 은행의 보험자회사 소유에 대비하여 은행에 특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고객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o 중소형 지방은행과 제휴를 맺은 보험회사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상품을 개발하고 은행의 지역집중도를 활용하여 보험상품 구매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적절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
|---|
| **소비자들의 금융니즈가 복잡화되고, 단순한 보험상품 판매자가 아닌 전문가를 통한 보험구매 선호고객에 대응하여, 전통채널의 전문화 ·고급화를 통해 은행과의 차별화를 도모** |

□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인해 보험산업 내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금융그룹과 특화보험사가 보험고객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찾는가에 따라 경쟁의 승패가 결정될 것임.

o 금융그룹을 형성하여 경쟁하는 방식은 여러 금융기관이 연계하여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유리할 것이며, 고객기반 및 IT투자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도 경쟁우위에 있을 수 있음.

o 특화보험사는 저가형 채널을 활용하지 않는 한 가격 중심의 경쟁구도에서는 불리할 것이므로, 경쟁력 있는 보험기법을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임.

o 보험시장에서는 종합적인 역량에 의해 경쟁우위가 결정되므로 특화전략을 추구하는 보험사라 할지라도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다른 역량의 효율적 보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 등의 방법을 추구해야 할 것임.

□ LIMRA(Life Insurance Marketing Research Association)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금융니즈가 복잡화되고, 단순한 보험상품 판매자가 아닌 전문가를 통한 보험구매를 선호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우 전통채널의 전문화 · 고급화를 통해 은행과의 차별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을 주장함.

o 국내의 경우에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재무설계서비스,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세무 및 상속 등의 각종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그동안 보험설계사들에게 요구되어 왔던 전문화, 고급화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습득과 판매능력의 확충이 필요함을 의미함.

**중장기적으로 방카슈랑스가 진전되면서 은행들은 보험사와의 전략적 제휴보다는 보험자회사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과의 제휴모델 강화 또는 대형화 전략 적극 검토**

□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경험에서 보면 판매제휴방식의 방카슈랑스는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은행은 자체 보험자회사를 설립하였음.

o 프랑스의 Credit Agricole, 독일의 Commerzbank, 이탈리아 UniCredito는 제휴형태로 방카슈랑스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자사의 브랜드 인지도 등의 우위를 보험사와 공유하기보다는 내부화하기 위해 보험자회사를 설립함.

□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볼 때 판매비용이나 고객로열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을 세운 보험사는 고객의 금융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도 또는 은행과의 제휴모델 강화 등을 통해 방카슈랑스를 성공시켰음.

o CNP사는 自社의 판매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의 높은 신뢰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기관들과 제휴를 통해 성공한 사례임.

o 방카슈랑스 형태 중 보험사 입장에서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것은 은행과의 판매제휴 형태이며, 보험사는 은행과의 판매제휴가 지속되는 한 판매채널 운영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임.

□ 고객 인지도가 높은 은행계 보험자회사의 진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보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대형화 전략을 들 수 있으며, 대형화 전략은 보험사가 이종 보험사를 인수·합병하여 보험그룹이 되는 것과 보험사가 은행을 인수하여 금융그룹이 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o 보험그룹화를 통한 대형화는 생명·손해보험사간 통합을 이루어 비용의 효율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향후 보험상품의 교차판매가 허용되는 등 규제완화에 대비하여 고려할 수 있음.

o 다른 한편 보험사도 중장기적으로 금융전업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은행 지분 확대 또는 해외 은행 인수를 통한 국내 은행지점 설치와 같은 우회전략 등을 통해 은행을 자회사로 두어 방카슈랑스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나. 은행측면

| |
|---|
| **장기적 특성을 갖는 보험사업의 특성상 은행은 단기적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다각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의 한 축으로서, 양질의 보험을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 주력** |

□ 은행은 본격적인 보험시장 진입에 앞서 보험사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o 보험사업이 은행에게는 분명 하나의 새로운 수익원임에는 분명하지만, 장기적 특성을 갖는 보험사업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보다는 초반에는 양질의 보험을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카슈랑스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임.
- o 지속적인 직원대상 보험교육, 전산시스템 및 판매상품 선정 및 개발완료, 소비자 선호도 조사 등이 필요하며, 특히 방카슈랑스 시행 초기 보험모집관련 규제에 대해 관련 법제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영업에 임하여야 할 것임.

□ 고객에 대한 다각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의 한 축으로 방카슈랑스를 인식하여, 은행 고객에게 보험을 포함한 광범위한 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보유 강화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수익을 통해 수익성 향상의 기회로 활용는 전략이 필요함.

- o 은행과 보험사간의 이해가 부합되기 위해서는 은행(거래 중심의 문화)과 보험사(영업중심의 문화)간 적절한 문화(culture)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o 또한 은행과 보험사의 IT 영업지원 시스템의 호환성을 높이고, 특히 제휴 보험사와의 공동의 미션 및 목표를 공유함.

| |
|---|
| **단순한 상품, 저가격 상품, 즉시가입상품, 무진단계약 등 성공적 상품특성과 1page 청약서, 8~10분 거래, 짧은 계약심사 등 성공적 업무처리특성을 갖춘 상품과 프로세스의 개발능력이 필요** |

□ 상품개발 측면에서 저렴한 유통수단인 은행원, 기타 재무컨설턴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단순한 상품 및 처리과정의 개발이 필요함.

o 보험상품의 전문성과 복잡성, 긴 시간의 소요, 사후관리 등으로 인해 은행원들의 보험판매가 초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o 따라서, 은행원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 및 유통편의성에 바탕을 둔 보험상품의 판매와 함께 유통과정의 원활화를 위해 특화할 필요가 있음.

o 또한 방카슈랑스 도입을 계기로 고객의 복합적인 금융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복합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은행의 보험판매시 안전성과 편의성에 대한 은행 브랜드 이미지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저축성보험 및 단순 건강/상해보험을 중점 판매**

□ 보험개발원 설문조사(2003)에 따르면 보험 구입시 은행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15.2%로 나타났으며, 은행 선호 소비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선호이유로서 "안전성과 양질의 서비스" 등을, 희망구매상품으로는 "저축성보험", "건강 및 상해보험"으로 나타남.

o 구체적인 은행선호이유로는 "안전성과 양질의 서비스"(45.6%)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보험상품구입 및 보험료 납부의 편리성"(29.1%), "낮은 가격수준"(25.3%) 순으로 응답함.

o 은행을 이용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으로는 저축성보험(33.5%)과 건강/상해보험(32.4%)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다음으로 연금보험(12.1%), 종신보험 (8.2%), 장기상해·건강보험(7.7%), 자동차보험(4.4%) 순 임.

<표 2> 계층별 향후 보험상품 구매 선호 경로

(단위 : %)

| 전 체 | | 사례수 | 보험 설계사 | 은행 | 인터넷 | 기타 |
|---|---|---|---|---|---|---|
| | | (1200) | **70.1** | **15.2** | 13.0 | **1.7** |
| 응답자 연령별 | 20 대 | (150) | 59.3 | **14.0** | 25.3 | **9.5** |
| | 30 대 | (406) | 66.7 | **14.0** | 17.2 | **2.1** |
| | 40 대 | (349) | 72.8 | **15.8** | 9.7 | **1.7** |
| | 50 대 이 상 | (295) | 77.0 | **16.6** | 4.7 | **1.7** |
| 교 육 수준별 | 중 졸 이 하 | (141) | 70.9 | **22.7** | 3.5 | **2.9** |
| | 고 졸 | (755) | 73.6 | **15.4** | 9.5 | **1.5** |
| | 대 재 이 상 | (302) | 60.9 | **10.9** | 26.2 | **2.0** |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03.3.

**미국의 경우 은행의 보험판매로 인한수익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중장기적 접근 필요**

□ 미국의 방카슈랑스 사례 분석 결과, 은행의 생명보험판매 경과년수가 일정기간 소요되기까지는 수익의 급격한 개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12)]

o 즉, 경과년수 4년까지는 총수익 및 초년도 수익이 개선되기는 하지만 개선율이 급격하지는 않은 반면, 경과년수 5 10년 이후 수익이 현저히 증가하였음.

o 따라서 새로운 채널을 도입시 초기 판매프로그램/ 시스템구축 비용 및 시간의 투자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국내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채널 성숙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2) LIMRA, *2001/2002 Kehrer-LIMRA Bank Life Sales Study*, 2002.

<그림 1> 은행의 보험판매 경과년수별 수익

자료 : LIMRA, 2002.

□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로 인한 세전이익기여도는 생명보험 판매사업 및 프로그램 등이 정착되기까지는 완만한 성장을 나타내지만,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은행 고객당 연평균이익은 보험판매 초기 3년간 평균 16센트로 조사되었으나, 4년째에 2배, 5년 10년 사이에 3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보험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고객당 세전이익기여도는 1.50달러임.

<그림 2> 보험판매 경과년수별 고객당 세전이익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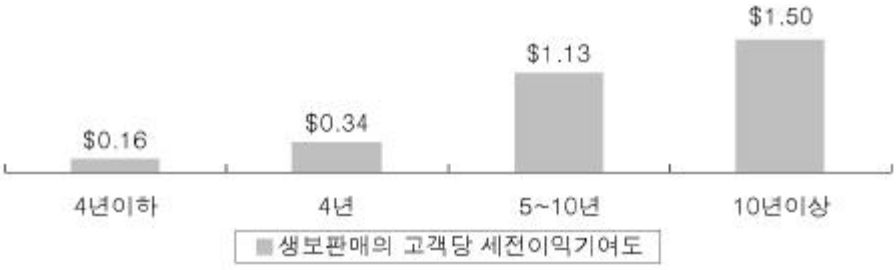


자료 : LIMRA, 2002.

## 5. 향후 방카슈랑스 정책 방향

| |
|---|
| **방카슈랑스 시행을 앞두고 보험권은 '규제강화', 은행권은 '규제완화'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방카슈랑스의 근본취지를 고려하여 금융기관간 균형적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이 되는 정책의 수립이 중요** |

□ 방카슈랑스는 단순한 규제개혁 차원이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정책차원으로 접근하여 금융기관간 균형적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o 방카슈랑스를 계기로 보험시장 내에서 산업의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방카슈랑스의 규제는 국내 보험모집조직의 특수성을 고려, 대량실업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보험사가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은행권의 공격적 영업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약자적 입장을 고려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제가 설정되어야 함.

o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은행 숫자가 10여개밖에 안되므로 만일 은행들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전적으로 100% 자회사의 상품만 판매할 경우,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이 향후 보험판매고를 좌지우지하게 됨으로써 국내 상위권 은행들의 보험자회사가 보험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보험사들은 모두 상당한 고전이 예상됨.

o 이렇게 될 경우 기존 생명보험회사에 속해 있는 보험설계사 및 기존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대리점의 상당수가 실업자가 되고 기존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로 국민경제적 폐해가 우려됨.

□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방카슈랑스 허용이 판매채널의 다양화 · 효율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감독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o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산업의 독과점화 현상, 은행의 우월적 지위 등 제반 금융환경을 감안할 경우 제도 시행 초기에 방카슈랑스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경제력 집중, 불공정 경쟁,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음.

o 은행 등의 불공정행위는 대부분 보험판매비용 또는 관련사업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험료 인하를 통한 보험계약자의 편익 향상이라는 당초의 취지는 사라질 것이며, 이런 불공정행위로 인한 이익은 은행이 챙기고, 그 부담은 결국 보험계약자의 몫이 될 것임.

**시행 초기 불공정경쟁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단기 ·중장기 감독방향 제시 필요**

□ 방카슈랑스로 인해 그동안 보험시장에서 대표적인 불공정관행의 사례로서 지적되어 온 "리베이트"를 없애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측면의 불공정 요소(특별수수료, 준비금의 특정 투신사 위탁 요구 등)가 나타날 것이 우려됨.

o 은행이 보험대리점으로 판매기능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보험비용중 "신계약비"라고 하는 판매수당 이외에는 요구할 수 없으며, 보험사의 경영이익은 보험사 주주의 것이지 이것을 대리점에게 나누어 주는 사례는 전세계에 전무함.

□ 방카슈랑스를 우리나라 금융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시행 초기 불공정경쟁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이 필요함.

o 향후 은행의 보험영업 현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신중한 정책이 요구됨.

o 단기적으로는 보험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은행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요구됨.

- 첫째, 과도한 수수료 요구, 고객정보의 독점, 비용전가, 언더라이팅 개입, 자산 위탁기관 선정 간여 등에 대해 은행의 우월적 지위 규제방안 마련.
- 둘째, 우월적 지위 남용, 판매비율 및 판매상품 준수, 소비자보호의 적정성 여부, 방카슈랑스 관련 사업비집행 실태 등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체제 구축.
- 보험사별, 상품별 판매수수료율 공시 등 공시제도 강화.

o 장기적으로는 방카슈랑스의 성공적 정착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요구됨.

- 판매비율, 지점당 보험판매직원수 조정 등 실효성 있는 규제의 보완을 통해 보험사간 형평성 제고.
- 은행에 대한 과도한 비용집행 방지 및 U/W이익의 공유 등을 통한 부실화 방지 유도를 통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유지.

o 은행의 보험영업과 관련한 민원 발생 사례에 관한 업무지침서를 작성하며, 은행 내부적으로 보험판매와 관련한 검사를 의무화함.

□ 방카슈랑스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내 중소형사의 경우 나름대로의 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대안채널, 예를 들면, TM, 인터넷 등 온라인채널 전략으로 전문화하거나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o 현재 은행과의 판매제휴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상황에서 은행이 지속적으로 가격인하 등 추가적 요구를 해올 경우 중소사들은 저가격으로는 이익채산이 없는 방카슈랑스 전략을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임.

o 결국 근본적으로 중소사에 특화된 상품과 지역, 채널 등의 개발이 필요하고 동시에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비용절감 전략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임.

# ◇ 방카슈랑스 시대의 개막 :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동향 및 특징

## 1. 미국

| |
|---|
| 미국은행의 보험인수사업은 주로 신용보험, 연금, 생명 및 건강보험을 취급하며, 판매사업의 경우 74%의 은행이 보험 또는 연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하고 있지 않은 은행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 가. 진입형태

□ 미국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채널은 DM, TM, CM 등 직판채널(direct channel)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 대리점에 의한 보험판매를 하며, 은행에 따라서 또는 판매하는 종목에 따라 주로 다음의 5가지의 형태로 구분이 가능함.

o 은행에 의한 대리점의 신설(de novo agency), 독립대리점·브로커의 매수, 보험회사와의 제휴, 합작투자(joint venture)로 설립한 대리점과의 제휴, 외부판매회사와의 제휴 등임.

□ 은행의 보험사업 진입형태는 보험인수사업에의 진입과 보험판매사업에의 진입으로 구분될 수 있음.

o 미국은행보험협회(American Bankers Insurance Association : 이하 ABIA)가 2002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447개 응답은행의 보험인수사업 진입현황을 은행 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음.

o 보험종목별로 보면 신용보험을 인수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밖에도 연금, 생명·건강보험, 손해보험 순으로 보험인수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표 1> 은행의 보험인수사업 진입 현황(2002, 미국)

| | 자산100억 초과 | | 자산 10-100억 달러 | | 자산 10억 달러 | |
|---|---|---|---|---|---|---|
| | 인수중 | 검토중 | 인수중 | 검토중 | 인수중 | 검토중 |
| 신용보험 | **33%** | **5%** | **20%** | **4%** | **20%** | **2%** |
| 연금 | 17% | 2% | 9% | 4% | 10% | 5% |
| 생명 ·건강보험 | 12% | 5% | 10% | 3% | 10% | 5% |
| 손해보험 | 10% | 5% | 8% | 4% | 7% | 3% |
| 권원보험 | 3% | 3% | 4% | 2% | 4% | 2% |

주 : ABIA와 Reagan Consulting사가 공동 조사한 447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며, 이들 금융기관의 자산규모는 연방저축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49%에 해당함.

자료 : ABIA, *Study of Leading Banks in Insurance* (2002), 이하 미국자료는 동일함.

o 2002년 보험상품의 판매사업에의 진입현황을 보면, 74%의 은행이 보험 또는 연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 또는 연금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은행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은행을 통한 보험판매가 확대되고 있음.

<그림 1>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사업 진입현황(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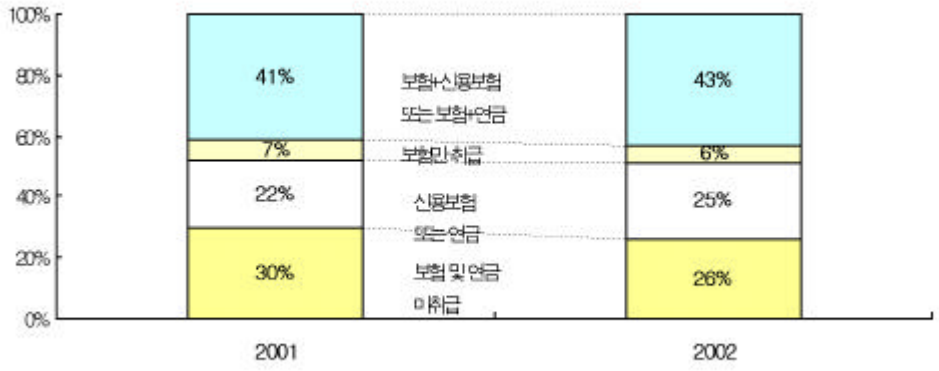

## 나. 은행의 보험판매실적

**은행에 의한 보험판매의 주요특징은 연금상품의 지속적 고성장세, 기업형보험으로의 마케팅 확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은행들의 보험판매 본격화 진입 등임.**

□ 2001년 은행에 의한 보험판매 실적은 전년 대비 22.9% 증가한 552억달러이며, 최근 들어 은행들의 기업보험분야 진입을 위해 대형 브로커 및 대리점의 영입에 노력한 결과 손해보험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짐.

□ 과거 5년간 은행의 보험판매 보험료 추이를 보면 다음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남.

o 첫째, 연금상품이 방카슈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 매년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나타냄.

o 둘째, 기업형 보험은 최근 들어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은행이 초기 개인 보험시장 중심의 영업에서 점차 기업형 시장에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함.

o 셋째, 전체적으로 방카슈랑스의 보험료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아 은행에서의 보험판매가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2> 방카슈랑스 상품별 판매추이 및 증감율(미국)**

(단위 : 억달러, %)

| 구 분 | 1997 | | 1998 | | 1999 | | 2000 | | 2001 | |
|---|---|---|---|---|---|---|---|---|---|---|
| | 보험료 | 증감 | 보험료 | 증감 | 보험료 | 증감 | 보험료 | 증감 | 보험료 | 증감 |
| 연 금 | 188 | - | 196 | 4.3 | 242 | 23.5 | 310 | 28.1 | 371 | 19.7 |
| 신용보험 | 28 | - | 29 | 3.6 | 29 | 0.0 | 27 | -6.9 | 28 | 3.7 |
| 개인생명 | 13 | - | 15 | 15.4 | 18 | 20.0 | 21 | 16.7 | 23 | 9.5 |
| 기업보험 | 28 | - | 40 | 42.9 | 44 | 10.0 | 54 | 22.7 | 89 | 64.8 |
| 개인손보 | 20 | - | 29 | 45.0 | 31 | 6.9 | 37 | 19.4 | 41 | 10.8 |
| 합 계 | 278 | - | 311 | 11.9 | 367 | 18.0 | 449 | 22.3 | 552 | 22.9 |

<그림 2> 미국의 방카슈랑스에 의한 종목별 보험료(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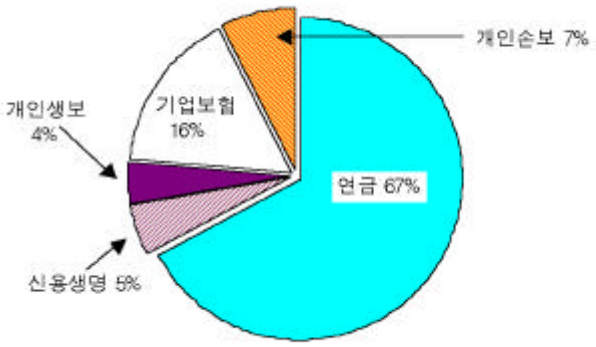


□ 방카슈랑스의 주된 보험상품으로는 신용생명보험(62%)이 가장 많은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도 채권자신용불능신용보험(59%), 각종 연금상품들이 40%이상의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음.

o 손해보험에서는 가정종합(homeowners)보험(33%), 자동차보험(32%), 그 밖에 기업형보험의 순이며, 2002년 들어 전년에 비해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판매의 진입속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o 2001년과 2002년을 기준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비교하면, 가정종합보험, 소규모사업자형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의 진입 성장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표 3> 참조).

□ 은행의 자산규모별 판매보험상품 상위 10개 종목을 분석하면, 자산규모 100억달러 이상의 대형은행에서 50% 이상이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도 10억 달러 미만의 소형은행에서는 30% 내외의 저조한 판매 수준을 보이고 있음(<그림 3> 참조).

o 보험인수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사업의 경우에도 대형은행에 비하여 소형은행의 진입정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방카슈랑스 취급보험종목별 은행비율(미국)

| 순위 | 보험종목 | 2001(%) | 2002(%) | 증감(%p) |
|---|---|---|---|---|
| 1 | 신용생명보험 | 60 | 62 | 2 |
| 2 | 채무자취업불능의무보험 | 58 | 59 | 1 |
| 3 | 정액연금 | 52 | 49 | -3 |
| 4 | 정기생명보험 | 44 | 46 | 2 |
| 5 | 변액연금 | 49 | 45 | -4 |
| 6 | 종신보험 | 40 | 41 | 1 |
| 7 | 유니버셜생명보험 | 39 | 39 | 0 |
| 8 | 변액생명보험 | 38 | 37 | -1 |
| 9 | 장기간병보험 | 30 | 36 | 6 |
| 10 | 생존자사망생명보험 | 35 | 35 | 0 |
| 11 | 가정종합보험 | 26 | 33 | 7 |
| 12 | 취업불능보험 | 30 | 32 | 2 |
| 13 | 자동차보험 | 26 | 32 | 6 |
| 14 | 상해질병보험 | 28 | 31 | 3 |
| 15 | 기업손보(소규모기업형) | 23 | 30 | 7 |
| 16 | 기업손보(중대형기업형) | 22 | 27 | 5 |
| 17 | 보완적의료보험 | 25 | 27 | 2 |
| 18 | 보증보험 | 21 | 26 | 5 |
| 19 | 단체급부 | 22 | 26 | 4 |
| 20 | 권원보험 | 18 | 13 | -5 |

<그림 3> 은행 자산규모별 판매보험상품 상위 10종목(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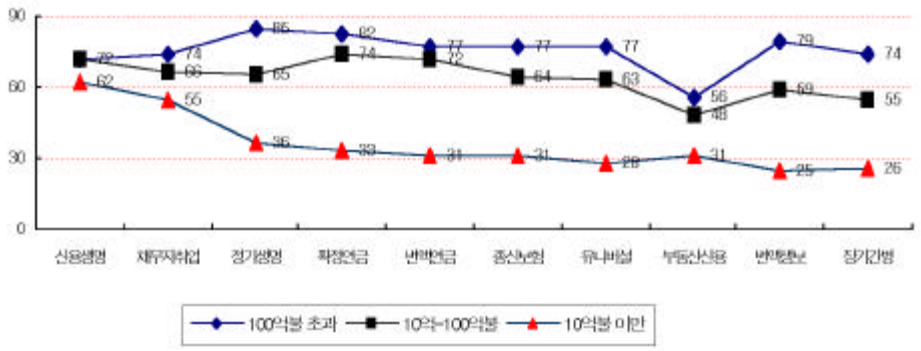

## 2. 영국

| |
|---|
| **은행과 주택금융조합이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보험을 비롯 금융서비스 분야에의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진입형태는 생명보험 및 연금의 경우 자회사, 손해보험의 경우 금융상품과 보험상품의 교차판매가 주요 흐름 형성** |

□ 영국의 경우 1960년대 전후부터 은행이나 주택금융조합이 보험판매를 시작하였으며, 특히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보험판매를 수행함.

- o 1980년대 은행은 송금이나 대부를 중심적 업무로 취급하여 왔지만 이자부당좌예금의 도입 등에 의해 수익률이 저하됨.
- o 동시에 1990년대초 주택시장의 저성장으로 주택대출업자간의 경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특히 주택대출대부를 주요 업무로 한 주택금융조합의 수익이 악화됨.
- o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과 주택금융조합은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보험을 비롯 금융서비스 분야에의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함.

□ 은행의 보험진입형태는 생명보험 및 연금의 경우 은행이 생명보험회사를 자회사화하여 자회사로 보험을 인수시키는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손해보험의 경우 금융상품과 보험상품의 교차판매(cross selling)를 수행함.

- o 생명보험의 "은행창구 판매"는 은행이 보험회사를 자회사화하고, 은행의 지점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임.
- o 대부분 은행의 손해보험판매는 보험인수 보다는 주로 대리점 또는 브로커로서 보험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입을 받는 형태였으나, 최근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통해 손해보험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추세임.

□ Datamonitor사에 의한 은행의 보험사업 영위형태를 구분하면 은행소유보험회사(bank owned insurers), 캡티브보험회사(captive Insurer), 비인수 캡티브보험회사(non-underwriting captive insurer), 중개자(intermediaries)로 구분할 수 있음.[1)]

1) Datamonitor, *UK Bancassurance and Tied Advice 2002*, 2002.7

o 은행소유보험회사란 보험회사 주식을 다수 보유하는 은행이 주주로서 보험회사 경영에 참가하여 은행이 독자적으로 보험판매를 수행하는 형태를 말함.

o 캡티브보험회사란 은행이 보험회사를 자회사화하고 자회사의 보험상품을 은행 지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말함.

o 비인수캡티브보험회사란 운영은 은행이 하지만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마케팅 및 인수업무를 타 보험회사와 분담하는 형태로 인수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주로 보험상품의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o 중개자란 은행이 보험회사와 제휴를 체결하여 그 보험회사의 대리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를 말함.

□ 은행이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주로 생명보험 및 연금은 주로 양로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기타 생명 및 단체연금, 개인연금 등의 생명보험 및 연금이며, 손해보험의 경우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대출보증보험, 여행보험, 상해보험 등임.

o 손해보험중 은행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종목은 화재보험 중심의 재산보험으로 화재보험은 주택대출시 부과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며, 여행보험 또한 화재보험의 옵션으로서 판매됨.

<표 4> 생명보험 및 연금의 채널별 시장점유율(영국)

(단위 : %)

| 구 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IFA* | 54.5 | 50.5 | 51.2 | 54.0 | 58.9 | 63.8 |
| 보험판매직원 | 37.3 | 42.1 | 40.7 | 37.9 | 31.4 | 25.5 |
| **은행창구판매** | **5.6** | **5.2** | **5.2** | **4.9** | **4.6** | **4.8** |
| 대리점 | 5.6 | 5.2 | 5.2 | 4.9 | 4.6 | 4.8 |
| 직판채널 | 2.6 | 2.2 | 2.9 | 3.2 | 5.1 | 5.9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 *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보험회사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설계사임. 여기서는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설계사를 말함.

자료 : Datamonitor(2002)

<표 5> 손해보험 채널별 시장점유율(2002, 영국)

(단위 : %)

| 구 분 | 가계분야 | 개인자동차 | 기타개인물건 | 기업물건 |
|---|---|---|---|---|
| 국내브로커 | 10.4 | 17.8 | 8.7 | 52.6 |
| Telebroker 등 | 5.9 | 17.9 | 9.7 | 8.8 |
| 독립중개인 | 21.3 | 17.9 | 18.2 | 20.9 |
| 다이렉트채널 | 22.3 | 35.2 | 26.0 | 11.2 |
| 보험회사직원 | 10.6 | 6.7 | 3.5 | 1.4 |
| 대리점 | 8.9 | 4.4 | 9.4 | 5.2 |
| 은행 주택금융조합 | 19.1 | 0.0 | 19.7 | 0.0 |
| 기타 | 1.4 | 0.0 | 4.8 | 0.0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 NTC Publications, *Insurance Pocketbook 2003*.

□ 영국에서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영국의 은행들은 최근까지 지점업무를 줄이는 데에 몰두하였으며, 또한 고객의 은행에 대한 불신감이 컸기 때문임.

## 3. 독일

**독일은 Allfinanz전략 진행에 따라 보험회사 보다 우위에 있는 은행이 보험을 판매하여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로 은행 창구의 보험 중개역할이 보편화됨.**

□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 종합화의 움직임이 독일에서는 Allfinanz(종합금융 : All finance)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o 독일은 유니버셜 제도하에 일찍부터 종합금융화가 시작되었는데 1920년대에 은행에 의한 보험자회사 설립이 있었음.

o 1970년대는 고령화, 저출산율, 사회보장의 불안 등으로 민간연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양로보험의 판매가 이때부터 시작되어 은행의 예금으로부터 보험회사로 자금유입이 크게 확대됨.

□ 보험회사의 양로보험에 대응하기 위해 1983년 독일은행에서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양로보험과 유사한 상품으로 일정기간(8년 이상)의 보험계약과 저축계약을 보험회사와 은행이 각각 운영하는 상품임.

o 동 상품은 환금성이 크다는 특성으로 여유자금이 필요한 계층의 높은 인기의 영향으로 은행의 예금이 저축성보험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결국 은행의 예금액 증대의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함.

□ Datamonitor사에 따르면 독일에서 은행의 보험시장 진입형태는 8가지로 구분함.

o ‘은행소유보험회사(Bank-owned insurer)’는 은행이 자회사로서 보험회사를 소유하지만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주로 은행측의 활동은 주주로서의 범위에 한하고, 방카슈랑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음.

- 보험회사의 상품은 은행 외의 채널(대리점, 브로커, 직판)을 통해 주로 판매되지만, 이러한 유형은 많지 않음.

o '캡티브보험회사(Captive insurer)'는 은행이 50% 이상의 자본을 소유하는 자회사로서 이 보험회사의 상품은 주로 은행 지점 또는 은행 소유의 타 채널을 통하여 판매됨.

o '다중캡티브보험회사(Multi-captive insurer)'는 복수의 은행이 출자하고 있는 캡티브보험회사로, 주식을 소유한 복수의 은행이 보험회사에 캡티브보험회사의 기능을 부여하고, 은행이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임.

o '비인수 캡티브보험회사(Non-underwriting captive insurer)'는 청약 및 운영은 은행이 담당하고,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마케팅 및 인수업무 등을 타 보험회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독일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음.

o ‘합작투자(Joint venture)'는 은행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설립한 보험회사가 보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은행점포가 주요한 판매채널이 됨.

o '지배권을 갖지 않는 소수주식보유(Minority interest)'는 방카슈랑스로서의 전략적 의미보다는 투자 등의 목적이 큰 경우가 많음.

o '중개자(Intermediary)'는 은행이 자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보험판매에 관한 중개를 행하는 형태로 거래에 기초하여 각 계약당 수수료를 보수로서 취득함.

o '어슈어뱅크(Reverse bancassurer)'는 보험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형태로 보험회사의 기존 고객에게 개인형 은행상품을 판매함.

| |
|---|
| 독일의 은행은 보험의 저축기능과 경쟁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의 확보를 위해 보험업과 제휴하여 보험업의 판매기능을 대행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료실적 및 은행의 수수료 확대도모 |

□ 새로운 전략으로 은행은 보험의 저축기능과 경쟁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의 확보를 위해 보험업과 제휴하여 보험업의 판매기능을 대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o 개인고객의 이체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은 고객의 금융 니즈를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은행영업 거점이 보험 대리점을 통하여 고객을 개척하는 것 보다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함.

o 결국 보험회사는 실적이 확대되었으며, 은행도 수수료의 확대가 가능하게 됨.

**<그림 4> 채널별 보험료 구성비(1999, 독일)**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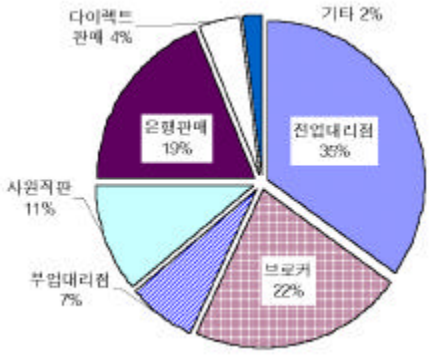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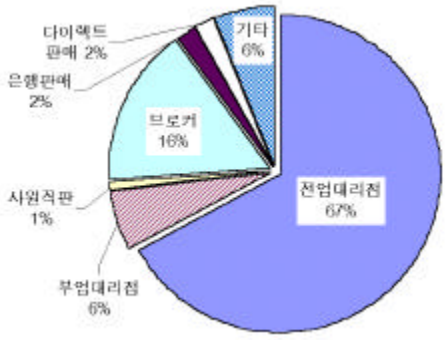


주 : 전업대리점은 전속대리점과 독립대리점으로 양분되며, 겸업대리점은 거의 전부가 전속대리점임.

자료 : GDV

□ 은행의 보험판매는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1999년 기준 손해보험의 경우 전체의 2%에 불과한 반면, 생명보험의 경우는 19%에 달함(<그림 4> 참조).

□ 은행이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다양하지만 거래규모는 연금 및 생명보험이 많고,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o 또한 의료보험 상품과 같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에서 방카슈랑스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

<표 6> 방카슈랑스 보험료 및 시장점유율(독일)

(단위 : 백만마르크)

| | 1992 | 1998 |
|---|---|---|
| 생명보험 | 7,420(15%) | 19,486(25%) |
| 손해보험 | 1,366(1%) | 4,229(3%) |

주 : 본 자료는 Datamonitor사의 자료로서 단순히 은행채널이 판매한 것만은 아니고 중개를 제외한 은행의 진입형태에 따라 거수한 보험료 전체를 합하여 집계하여, 앞의 채널별 시장점유율과는 다소 상이함.

자료 : Datamonitor, *Bancassurance in Germany*, 1999.

□ 은행은 금융겸업의 지식이나 브랜드 등이 작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발휘해오고 있지만, 보험전문지식이나 사고대응을 요하는 부문에서는 취약함.

o 한편, 사회제도의 변혁 등을 배경으로서 확대기조에 있는 연금 등의 시장에서는 은행채널이 확실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4. 프랑스

| |
|---|
| 프랑스에서는 방카슈랑스가 생명보험분야에서 60%의 시장점유율로 완전히 정착되었으며, 손해보험에 있어서도 방카슈랑스에 의한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 방카슈랑스의 시장점유율은 생명보험의 경우 1992년 46%에서 2001년에는 60%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2001년 8% 수준으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함.

**<그림 5> 보험모집채널별 시장점유율 추이(생명보험,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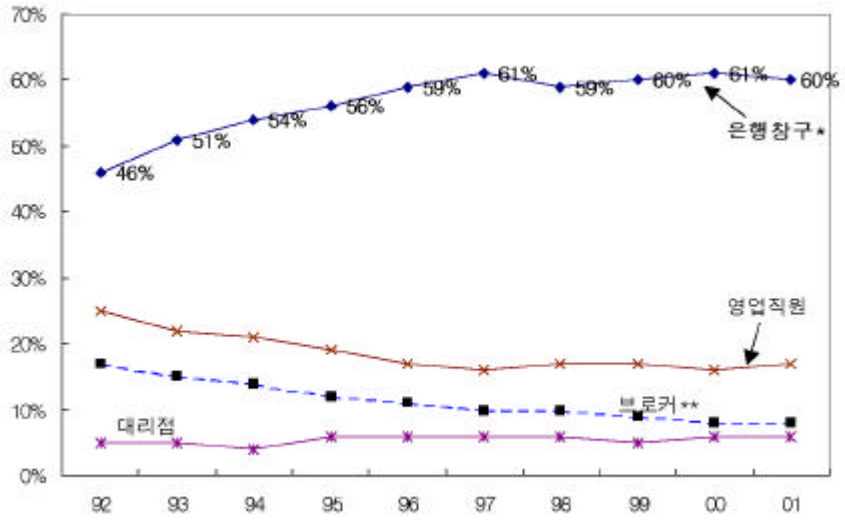


주 : * '은행창구'란 금융기관 창구 외에 우체국, 재무국의 창구판매를 포함함. 재무국 판매라 함은 공무원인 관료가 징세업무, 금융자문업무, 지방관청의 행정운영업무 등을 행하고, 보험상품도 판매하는 프랑스의 독특한 시스템임.
** '브로커'란 대리점 업무중 브로커 부분에 대하여는 브로커에 포함함.

자료 : FFSA, French insurance in 2001

o 손해보험의 경우 대리점 및 직판상호보험회사가 중심이고, 여기에 기업물건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브로커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는 1990년대 후반부부터 시장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6> 보험모집채널별 시장점유율 추이(손해보험,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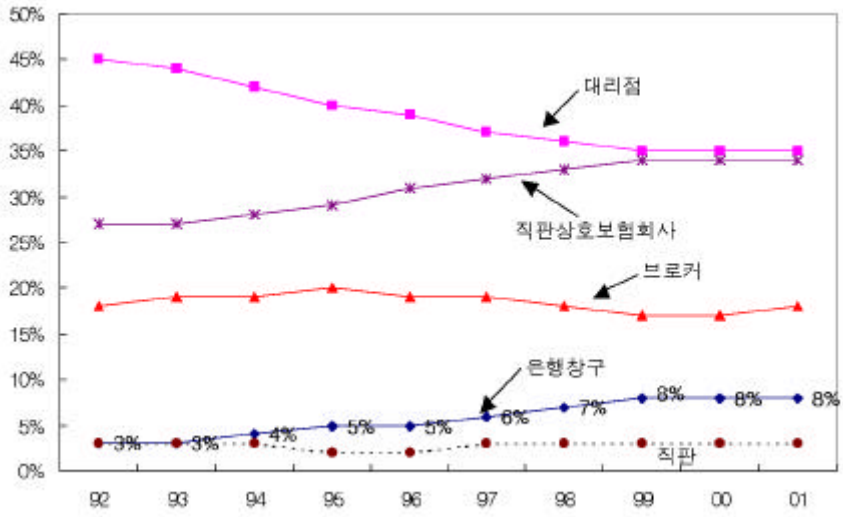


| |
|---|
| 프랑스의 경우 민간 방카슈랑스 외에도 2개의 특권적 사업자(우체국, 재무국)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프랑스 보험시장에서 불공정경쟁 사업자로 비판받고 있음. |

□ 우체국(La Poste)은 우편·전기통신사업에 있어 공공기업의 조직에 관한 법률(1990년 7월2일자)에 의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면허가 부여됨.

o 이에 따라, 막대한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한 보험판매뿐만 아니라, 국영공사 또는 공공서비스기관이라고 하는 지위상의 이점에 더하여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적용받고 있음.

o 이에 대해 1998년 4월 프랑스보험협회(FFSA), 프랑스보험총대리점조합전국연합(AGEA) 및 프랑스보험·재보험브로커협회(FCA)는 프랑스은행협회(AFB)와 함께 歐洲委員會에 대해 우체국이 공공재를 이용함으로써 부여받는 불공정한 우위성과 정부보조금의 사용의 부당함을 언급, 제소함.

o 또한 FFSA는 우체국의 보험판매에 관한 프랑스정부와의 협정에 관해, 상기보험중

개자들과 결속하여 취급상품이 손해보험상품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반대함.

□ 또한, 재무국(Le Rresor public) 관료의 경우, 주된 업무와 동일한 범위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지위에 의해 그 취급상품이 타 채널의 상품보다도 우월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o 프랑스 회계검사원도 2000년 2월에 공공부문에 대한 보고서에서 유럽에서는 매우 특이한 이러한 현상을 지적함.

o 그러나 프랑스 국무원은 공정거래실천에 따른 조건에서 재무국에 의한 보험판매를 지지한다고 하는 내용을 2001년 2월 14일부로 하달하였고, 향후에도 이러한 형태에 의한 보험판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일반적으로 방카슈랑스 형태는 ① 은행에 의한 보험자회사의 설립 ② 은행에 의한 보험회사의 매수 ③ 은행과 보험회사의 합병에 의한 자회사 설립 ④ 은행과 보험회사의 판매제휴 ⑤ 보험회사에 의한 은행의 매수 ⑥ 보험회사에 의한 은행자회사의 설립 등을 열거할 수 있음.

o 프랑스 생명보험 방카슈랑스에서는 상기 ①의 형태(은행에 의한 보험자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손해보험 방카슈랑스는 상기 ③과 ④에 의한 기존 손해보험회사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고 ①의 형태는 적음.

| |
|---|
| 방카슈랑스 확대의 배경에는 개인 금융상품에 대한 니즈의 변화,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그리고 은행에 관한 의식의 변화 등이 작용 |

□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프랑스 은행의 보험판매는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크게 신장하였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됨.

o 첫째, 개인 금융상품에 대한 니즈의 변화로서, 평균수명 증가, 출생율 저하에 의해 장래 공적연금제도의 파산이 예상됨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개인 생존보험·연금과 같은 저축형생명보험상품에 대한 니즈가 증대함.

- 이로 인해 개방형 단체보험이나 종업원에 대하여 사업자가 체결하는 퇴직연금의 판매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수요가 증가된 저축형 생명보험 판매분야에 대

해 은행의 진입기회가 나타나게 됨.

o 둘째,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로서, 만기까지 8년 이상 20만 프랑까지의 생명보험 및 캐피탈리시옹계약 만기보험금에 있어서는 종래 전액 비과세로 되는 등 세제우대조치의 매력에 의해 저축형 생명보험상품의 판매가 크게 성장함.

o 셋째, 은행에 관한 의식의 변화로서, 금융자율화에 의해 금융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업에의 진입이 수익성 확대의 중요한 전략이 됨.

- 당초 은행은 생명보험사업을 수수료 비즈니스로서 출발하여 판매업무에만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보험금지불이 비교적 단순하고 또한 사업자체의 수익성도 높았기 때문에 1980년대 후반 이후 생명보험 자회사를 설립하고 생명보험 인수업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됨.

□ 취급상품에 있어서는 생명보험의 경우 생사혼합보험과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갖는 상품을 피하고 저축 또는 보장중의 어느 한 쪽에 특화한 간단한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개인고객을 타겟으로 주택종합보험, 자동차보험 및 상해보험의 3종류에 한정해서 취급하는 은행이 많음.

o 캐피탈리시옹에 있어서는 1990년대의 예산법 개정으로 세제우대 조치가 되었고, 또한 PEP(Plan d'Epargne Populaire : 국민저축계획)이라고 하는 저축장려를 목적으로 한 세제우대조치가 포함된 저축상품이 판매되었음.

o 또한 저축형 생명보험상품에 있어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는 주식회사의 활황에 따른 변액 형태의 Unit-Link형 생명보험이 방카슈랑스 성장의 기폭제가 됨.

□ 프랑스의 최대 생보사인 CNP(Caisse National de Prevoyance)사의 예를 살펴보면 자사 판매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등과의 제휴를 통해 저축상품, 생명보험, 신용보험 등을 판매하여 방카슈랑스를 성공시켰음.

o 프랑스에서는 소비자들의 은행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편이며, 보험사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금융기관 선호도를 보험상품 판매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o CNP사의 방카슈랑스 전략 성공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우체국의 고객은 연령층이 높고, 저축은행 고객은 보다 젊고 자금이 풍부

한 점을 감안하여 각 네트워크별로 상품구성을 달리함.

- 둘째, CNP사는 상품개발과 가격설정, 계약관리, 신상품개발시 제휴사에 대한 어드바이스 등을 담당하고, 제휴사는 판매, 네트워크관리, 고객에 대한 어드바이스 등에 책임을 지면서 각각 핵심역량에 집중함.
- 셋째, CNP사는「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과 제휴관계를 맺었으며 이것이 대성공의 요인으로 작용함.
- 넷째, 국내외 150개 금융기관과 제휴를 하고 있으며, 제휴사의 수나 다양성이 프랑스 보험시장에서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임.

<표 7> 은행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프랑스)

| 구 분 | | 보험종목 |
|---|---|---|
| 개인형상품 | 은행업무보완형 | 채무자사망 · 고도장해시 채권보전보험 |
| | 저축형생보상품 | 순수생존보험 · 유로기준 보험(정액형)<br>순수생존보험 · Unit-link형계약(변액형)<br>복수투자펀드조합선택계약(Multi support)<br>카피탈리시옹 |
| | 보장형생보상품 | 사망보장 |
| | 손해보험상품 |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주택종합보험<br>배상책임보험, 레저보험, 소득보상보험,<br>장기간병보험 |
| 기업형상품 | 저축형생보상품 | 기업연금 |
| | 손해보험상품 | 신용보험, 영업중단보험, 기업종합보험 |

(안철경 동향분석팀장)

# 보험지표동향

## 1. 보험산업 총괄

### 가. 총자산

**FY2002 국내 보험산업 총자산의 경우 생보는 수보증가와 보험금지급률하락, 손보는 수보증가와 손해율감소로 전년 대비 13.6% 증가함.**

□ FY2002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199조 5,90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도 175조 7,607억원보다 13.6% 증가함.

o 생명보험 총자산은 164조 2,2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 수입보험료증대 및 보험금지급률개선에 따른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와 투자손익구조의 개선 등의 효과로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o 손해보험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35조 3,683억원으로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한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실 등 투자환경악화로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둔화됨.

<표 1>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 억원, %)

| 종목 \ 연도 | FY2001 | | FY2002 | | |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생명보험 | 1,430,340<br>3.7 | 1,430,340<br>16.7 | 1,485,055<br>3.8 | 1,537,809<br>3.6 | 1,632,661<br>6.1 | 1,642,225<br>0.6 | 1,642,225<br>14.8 |
| 손해보험 | 327,267<br>-1.6 | 327,267<br>16.7 | 329,844<br>0.8 | 339,338<br>2.9 | 352,114<br>3.8 | 353,683<br>0.4 | 353,683<br>8.1 |
| 합계 | 1,757,607<br>2.7 | 1,757,607<br>16.7 | 1,814,899<br>3.3 | 1,877,147<br>3.4 | 1,984,775<br>5.7 | 1,995,908<br>0.6 | 1,995,908<br>13.6 |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및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 나. 수입보험료

**FY2002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대비를 위한 보험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5.5% 증가함.**

□ FY2002 보험산업의 전체 수입보험료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여 전년 66조 530억원 대비 5.5% 증가한 69조 6,614억원을 기록하였음.

o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뚜렷한 성장세에 힘입어 개인생명보험이 9.5%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생명보험과 퇴직보험의 수입보험료가 28.1%, 17.2% 가량 감소하여 전체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3.6% 증가했음.

o 퇴직보험 전환계약의 소진으로 인한 단체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가 FY2002 이후 퇴직보험의 신규 수요 감소와 함께 이어지고 있으며, 저축성 단체보험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41.9%)했음.

o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0.2% 성장, 전년에 이은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며 이는 손해보험의 주력종목인 자동차보험성장률 둔화와 장기보험의 성장률 회복이 복합된 결과임.

o 손해보험에서는 퇴직보험, 보증보험, 특종보험이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표 2>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 연도 / 종목 | FY2001 | | | FY2002 | | | | |
|---|---|---|---|---|---|---|---|---|
|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생명보험 | 138,750<br>-14.8 | 111,684<br>-1.0 | 473,643<br>-9.5 | 115,606<br>3.1 | 113,917<br>2.5 | 145,448<br>4.8 | 115,697<br>3.6 | 490,668<br>3.6 |
| 손해보험 | 49,755<br>12.4 | 46,649<br>10.8 | 186,887<br>10.8 | 49,494<br>12.2 | 51,409<br>10.9 | 54,958<br>10.5 | 50,083<br>7.4 | 205,944<br>10.2 |
| 합계 | 188,505<br>-8.7 | 158,333<br>25.6 | 660,530<br>-4.5 | 165,100<br>5.7 | 164,966<br>4.8 | 200,406<br>6.3 | 165,782<br>4.7 | 696,614<br>5.5 |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 다. 1인당 보험료 및 보험침투도

**FY2002년 국민 1인당 보험료는 수입보험료 상승 반전에 따라 전년대비 4.8% 증가한 146만 2천원이며, 보험침투도는 전년 대비 0.3%p 감소한 11.7%를 기록함.**

□ FY2002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는 인구증가율과 GDP 성장률의 증가에 대비한 전체 수입보험료의 소폭 증가로 전년 대비 4.8%증가와 0.3%p 감소하였음.

o FY2002 국민 1인당 보험료 즉,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생명보험이 103만원, 손해보험이 43만원 2천원으로 생손보 전체가 146만 2천원에 이르러 FY2001 대비 4.8% 증가, FY200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집계됨.

o FY2002 보험침투도는 GDP의 성장(추정치)에도 불구하고 생보산업의 소폭 성장으로 인하여 FY2001 대비 0.3%p 감소한 11.7%를 기록하였으나 GDP 실적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침투도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전년 대비 0.4%p 감소한 8.2%를 시현함.
- 손해보험의 경우 전년 대비 0.1%p 증가한 3.5%를 시현함.

**<표 3> 1인당 보험료 및 보험침투도**

| 구분 \ 연도 | | FY1996 | FY1997 | FY1998 | FY1999 | FY2000 | FY2001 | FY2002 |
|---|---|---|---|---|---|---|---|---|
| 1인당 보험료 (천원) | 생보 | 838 | 1,065 | 1,002 | 1,003 | 1,113 | 1,001 | 1,030 |
| | 손보 | 290 | 347 | 305 | 308 | 349 | 394 | 432 |
| | 계 | 1,128 | 1,413 | 1,308 | 1,311 | 1,461 | 1,395 | 1,462 |
| 보험 침투도 (%) | 생보 | 9.1 | 10.8 | 10.4 | 9.7 | 10.0 | 8.6 | 8.2 |
| | 손보 | 3.2 | 3.5 | 3.2 | 3.0 | 3.1 | 3.4 | 3.5 |
| | 계 | 12.3 | 14.3 | 13.6 | 12.7 | 13.2 | 12.0 | 11.7 |

주 : 1) 보험침투도는 수입보험료/ 명목GDP임(2002년은 추정치임).
2) 1인당 보험료는 수입보험료/ 추계인구(2001년 11월 개정)
자료 : www.bok.or.kr(한국은행, 국내총생산) 및 www.nso.go.kr(통계청, 추계인구)

## 라. 금융저축 추이

**2002년 12월말 국내 금융저축 잔액은 1,500조원으로 전분기의 1,460조원에 비해 2.7% 증가함.**

□ 2002년 12월말 국내 금융저축 잔액은 1,500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2.7% 증가하였음. 은행의 비중이 28.8%로서 전분기 보다 1.0%p 증가한 반면, 비은행부문의 비중은 전분기 보다 다소 감소한 71.2%로 나타남.

o 은행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수요의 위축 및 유가증권 투자의 감소로 저축잔액이 전분기 대비 6.1% 증가하여 은행의 금융저축비중은 전분기 대비 1.0%p 증가하였음.

o 보험부문은 노후생활보장 욕구 증가와 건강에 관한 관심 증대로 개인생명보험과 장기보험 등이 꾸준히 성장함으로써 전분기 대비 0.1%p 증가한 8.9%의 비중을 보임.

o 유가증권의 비중은 은행예금의 수요 증가와 채권수익률의 지속적 하락으로 국공채가 감소하여 전분기 보다 0.6%p 감소한 33.5%의 비중을 보임.

<표 4> 금융저축 비중

(단위 : %)

| 구분 \ 연도 | 2001 | | 2002 | | | |
|---|---|---|---|---|---|---|
| | 3/4 | 4/4 | 1/4 | 2/4 | 3/4 | 4/4 |
| 은행 | 27.7 | 27.9 | 28.1 | 28.2 | 27.8 | 28.8 |
| 보험 | 8.3 | 8.7 | 8.4 | 8.6 | 8.8 | 8.9 |
| 금전신탁 | 5.0 | 5.1 | 4.9 | 4.7 | 4.5 | 4.6 |
| 투자신탁 | 11.5 | 10.2 | 11.1 | 10.8 | 10.9 | 10.7 |
| 유가증권 | 33.5 | 34.0 | 33.7 | 33.9 | 34.1 | 33.5 |
| 주식 | 10.5 | 10.6 | 10.3 | 10.1 | 10.1 | 9.9 |
| 기타 | 14.1 | 14.1 | 13.8 | 13.8 | 13.8 | 13.6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 1) 부문간 거래는 포함되었으며, 은행은 CD를 포함한 비중임.
2) 기타는 단기금융, 상호금융, 신용금고, 신협, 기타의 합계임.
자료 :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2002년 2/4분기 및 2001년 각 분기.

<그림 1> 금융저축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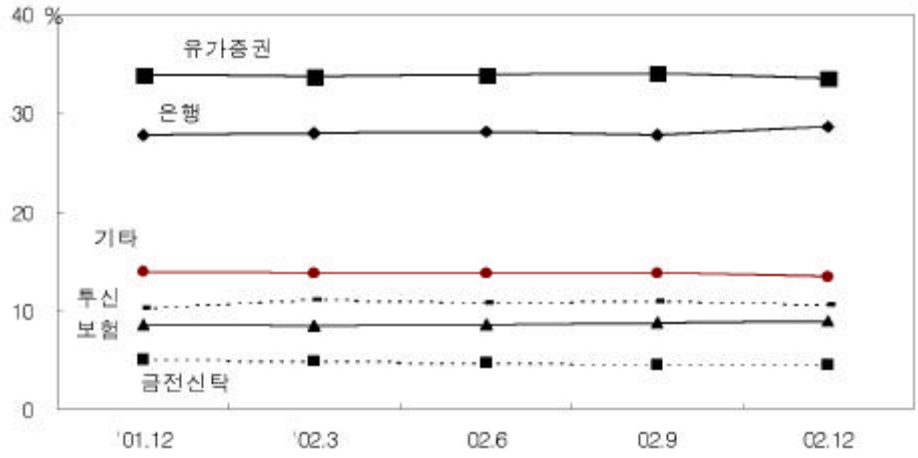


## 마. 개인 금융자산 추이

| |
|---|
| **2003년 3월말 현재 총 금융자산 잔액은 4,451조 3천억원으로 전분기 말의 4,376조 8천억원 보다 1.7% 증가하였으며, 개인금융자산은 991조 8천억원으로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2003년 1분기 중 개인부문의 금융자산 조달규모는 주택가격 안정과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대책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24.1조원)보다 크게 줄어든 5.6조원을 조달하였고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차입금 모두 증가세가 둔화됨.

o 2003년 1/4분기중 개인부문의 자금조달규모는 예금은행차입이 크게 둔화되고 카드사대출금을 순상환하는 등 비은행금융기관차입 증가도 둔화되어 전분기(24.1조원)보다 크게 감소한 5.6조원을 기록함.

o 자금운용규모도 유가증권투자가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자금조달규모도 축소된 데다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소비지출 증가로 전분기(32.4조원)보다 대폭 줄어든 10.7조원을 기록함.

□ 개인부문의 금융자산 잔액은 2003년 1분기 말의 부동산 경기 안정과 주식시장 불안 및 경제주체 심리위축으로 비은행금융기관 및 예금은행으로 자금이동이 일어나고 전분기(981조원, 증가율 3.4%) 대비 1.1% 소폭 증가한 982조원(기타자산 포함)을 기록함.

o 생명보험 및 연금의 경우 전분기 대비 0.2% 증가한 188.2조원을 기록하여 전체금융자산 증가율이나 유가증권을 제외한 여타 금융기관 금융자산 증가율 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임.

o 비중이 큰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은 전분기 대비 각각 1.5%, 2.1%의 증가율을 보여 328조, 260조의 금융자산을 기록함.

□ 생명보험 및 연금 등의 비중은 증가세 둔화에 따라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0.2%p)하고 비은행금융기관 예치금과 예금은행 예치금 비중은 소폭 증가(0.4%p)함.

o 생명보험 및 연금의 경우 생존보험 등 개인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였으나 소폭에 그쳐 전분기 대비 0.2%p 감소한 19.0%의 비중을 차지함.

o 자금조달 규모의 감소와 소비지출의 증가로 인한 금융저축 여력의 감소로 저축성예금 등 은행수신의 비중과 채권비중이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증권시장의 침체로 수익증권이 크게 감소하여 유가증권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표 5> 개인부문 금융자산 형태별 비중

(단위 : %)

| 연도 / 구분 | 2001 | 2002 | | | | 2003 |
|---|---|---|---|---|---|---|
| | 4/4 | 1/4 | 2/4 | 3/4 | 4/4 | 1/4 |
| 금융기관예치금 | 60.2 | 60.9 | 59.5 | 59.0 | 58.9 | 59.3% |
| 예금은행 | 31.9 | 32.5 | 32.4 | 32.6 | 33.0 | 33.1% |
| 비은행 금융기관 | 28.4 | 28.4 | 27.1 | 26.4 | 26.0 | 26.2% |
| 생보 및 연금 | 18.4 | 18.3 | 18.6 | 18.9 | 19.1 | 19.0% |
| 유가증권 | 15.8 | 16.3 | 16.7 | 16.9 | 15.8 | 15.4% |
| 수익증권 | 6.3 | 6.5 | 6.6 | 6.8 | 6.4 | 5.6% |
| 채권 | 3.0 | 3.2 | 3.5 | 3.7 | 3.3 | 3.7% |
| 주식 | 6.6 | 6.5 | 5.1 | 6.5 | 6.1 | 6.1% |
| 기 타 | 5.5 | 4.6 | 5.0 | 5.2 | 6.1 | 6.3%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 기타에는 한은예수금, 현금, 출자지분이 포함되었음.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1/4분기중 자금순환 동향(잠정)』 및 각 분기.

<그림 2> 형태별 개인부문 금융자산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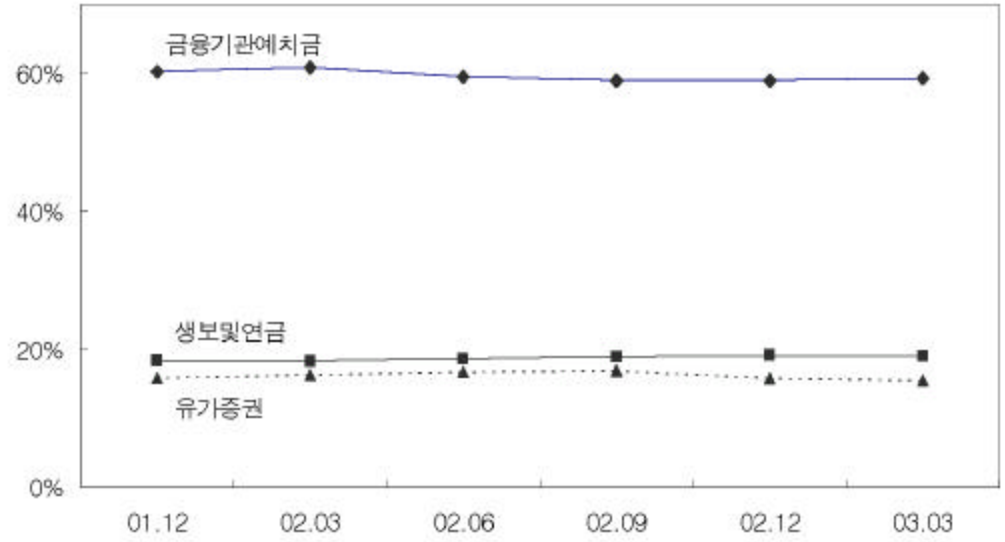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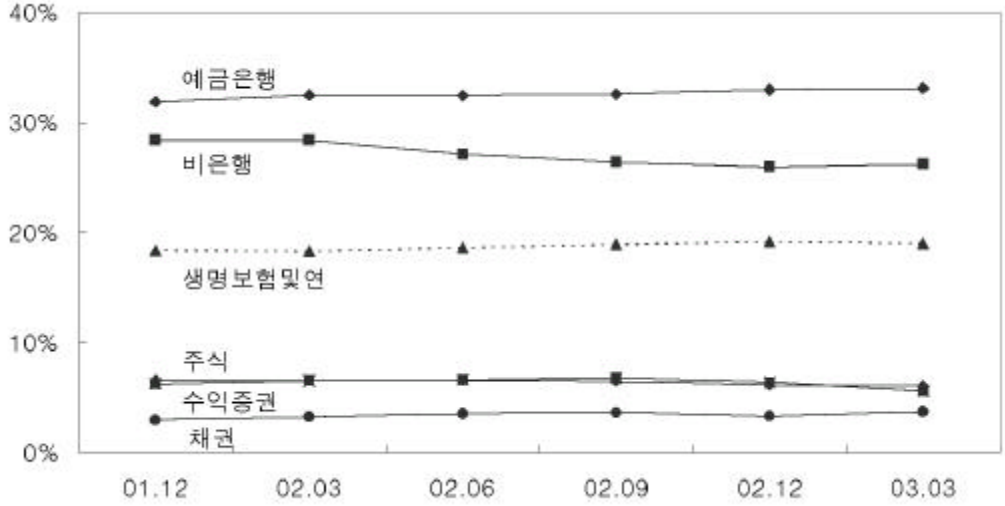


(김진억 선임연구원)

## 2. 보험 주요지표 분석

### 가. 생명보험

#### 1)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FY2002 생명보험산업은 지난해 보다 3.6% 성장한 49조원 규모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하여 전년도의 시장위축에 벗어났으나 저성장 기조에는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총자산은 164조 2천억 규모로 14.8%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

□ FY2002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의 성장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한 49조 688억원 수준을 기록함.

o 개인보험의 경우 연금분야의 수요 회복과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수입보험료가 전년대비 10.0% 증가한 41조 5,500억원을 시현함.

o 단체보험의 경우 경기침체 등 퇴직보험 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21.6% 감소한 7조 5,175억원을 시현함.

**<표 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 구 분 | FY2001 | | FY2002 | | |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총 자 산 | 1,430,340<br>3.7 | 1,430,340<br>16.7 | 1,485,055<br>3.8 | 1,537,809<br>3.6 | 1,632,661<br>6.1 | 1,642,225<br>0.6 | 1,642,225<br>14.8 |
| 수입보험료 | 111,684<br>-1.0 | 473,643<br>-9.5 | 115,606<br>3.1 | 113,917<br>2.5 | 145,448<br>4.8 | 115,697<br>3.6 | 490,668<br>3.6 |

주 : 1) 총자산 및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하단의 비율은 전분기(총자산)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2 총자산 규모는 164조 2,225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o 총자산이 증가한 것은 안정적인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전환과 수입보험료 증대로 인한 지속적인 준비금 규모 확대 등의 효과로 총자산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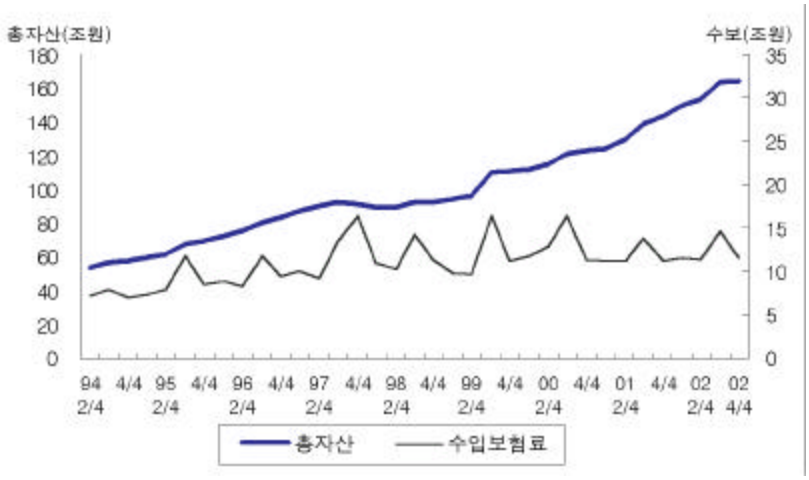


□ FY2002 개인보험의 종목별 수입보험료는 생사혼합보험이 큰 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요인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0.0% 증가하여 41조 5천억원 이상의 실적을 거둠.

o 개인보험의 성장을 주도하는 사망보험은 종신보험의 지속적인 수요 증대로 전년대비 22.6% 증가하여 21조 3,677조원을 기록하였음.

- 특히, 종신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98.1% 증가하였으며, 종신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o 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존보험은 생보사의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중 축소전략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니즈의 증가와 변액연금 등 연금보험에 다양한 상품개발 및 적극적 판매전략으로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남.

- 개인연금의 경우 2002년 12월 이후 비교공시제도를 통한 금융기관별 수익률 등의 비교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신규계약 및 초회보험료가 증가하고 있으며(전년대비 각각 26.8% 24.9% 증가), 일반연금 또한, 각각 12.1%, 30.3% 증가함.

o 단기 저축성보험이 대부분인 생사혼합보험은 2001년 이후 저축성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축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14.1% 감소함.

<표 2>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 구 분 | | FY2001 | | FY2002 | | | |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생존 | 보험료 | 20,431 | 74,955 | 21,382 | 22,121 | 23,611 | 24,311 | 91,424 |
| | 성장율 | -7.8 | -31.7 | 19.7 | 23.5 | 25.9 | 19.0 | 22.0 |
| 사망 | 보험료 | 47,632 | 174,334 | 50,313 | 52,829 | 54,866 | 55,814 | 213,677 |
| | 성장율 | 35.0 | 37.0 | 30.9 | 22.5 | 21.2 | 17.2 | 22.6 |
| 생사혼합 | 보험료 | 30,185 | 128,510 | 27,687 | 26,869 | 28,877 | 26,959 | 110,392 |
| | 성장율 | -20.3 | -22.8 | -16.5 | -16.5 | -12.4 | -10.7 | -14.1 |
| 개인계 | 보험료 | 98,248 | 377,799 | 99,382 | 101,818 | 107,116 | 107,084 | 415,493 |
| | 성장율 | 3.1 | -6.3 | 11.0 | 9.2 | 10.6 | 9.0 | 10.0 |
| 단체 | 보험료 | 13,436 | 95,844 | 16,131 | 12,098 | 38,332 | 8,613 | 75,175 |
| | 성장율 | -23.5 | -20.0 | -28.5 | -32.5 | -8.6 | -35.9 | -21.6 |
| 합계 | 보험료 | 111,684 | 473,643 | 115,606 | 113,917 | 145,448 | 115,697 | 490,668 |
| | 성장율 | -1.0 | -9.5 | 3.1 | 2.5 | 4.8 | 3.6 | 3.6 |

주 : 1) FY1999년부터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된 실적이며, FY2001 2/4분기부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2) 성장율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1 이후 성장을 지속한 종신보험은 수입보험료 규모가 FY2002 현재 8조 48백억원 이르고 있으며, 개인보험 및 보장성보험에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4%, 39.7%를 차지하여 단일 보험종목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함.

o 다만, 2003년 3월말 현재 종신보험 보유계약 건수가 600만건에 이르러 세대당 가입율이 41.6%을 기록하고, 초회보험료가 보장성보험 전체의 90.6%에 달하는 등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이 종신보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나 이러한 급성장 추세는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FY2002 신계약 건수 전년대비 10.3% 감소).

* 개인보험에서 종신보험의 점유율(FY2001, FY2002 : 11.3% → 20.4%)

* 보장성보험에서 종신보험의 점유율(FY2001, FY2002 : 24.5% → 39.7%)

□ 저금리기조의 지속으로 소비자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지면서 보험시장에서도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이 각각 도입되는 등 투자형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o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2003년 3월말 현재 1,976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 보다 28배정도 많은 실적이며, 2002년 10월 이후 판매된 변액연금도 4월말까지 1만 3,251건이 판매되었음.

□ FY2002 단체보험의 경우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은 종퇴보험의 퇴직보험 전환계약이 소진됨에 따라 FY2002 이후 퇴직보험의 신규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퇴직보험을 제외한 일반 단체보험의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o 이에 따라 퇴직보험과 일반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각각 17.2% 감소, 28.1% 감소함.

□ FY2002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는 사망보험이 4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생사혼합보험 22.5%, 생존보험 18.6%의 단체보험 15.4%, 순인 것으로 나타남.

o 보험종목별 구성비의 특징은 개인보험의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반면, 단체보험이 처음으로 10%대의 점유율을 기록함.

o 보장성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43.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계약 건수 기준으로 86.5%를 차지하는 등 생보사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대부분이 보장성보험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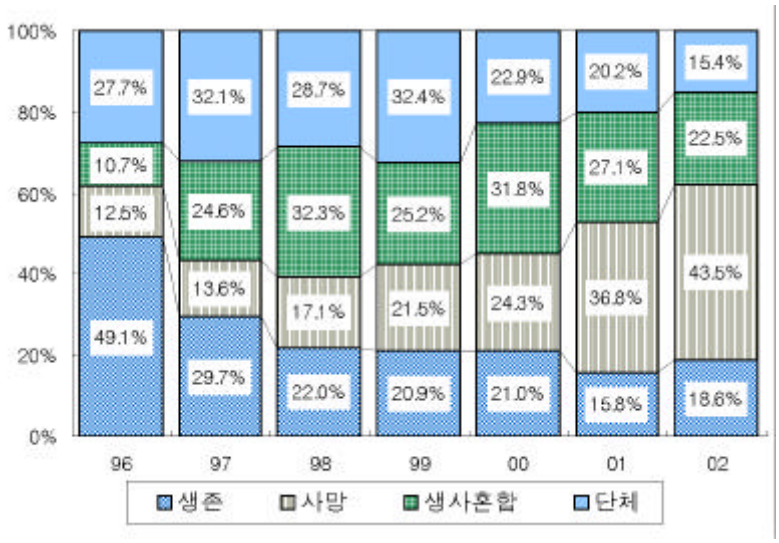


□ FY2002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상위3사와 국내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한 곳으로 나타남.

o 상위 3사의 경우 외형적인 성장에서 내실위주의 경영으로 전환에 따른 상품판매 전략 강화 및 판매조직 효율성 향상 등으로 FY2001 이후 과점형 시장구조가 개선되는 가운데 FY2002 현재 75.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함.

o 국내 중소형사의 경우 FY2001에 일시적인 증가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FY2002 현재 전년대비 0.3%p 감소한 13.7%를 기록함.

o 반면, 외국사의 경우 외국 대형사에 대한 인지도를 배경으로 영업조직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확충, 교육 및 보수체계의 혁신 등을 통한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하였음.

<표 3>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 구 분 | FY2001 | | FY2002 | | | | |
|---|---|---|---|---|---|---|---|
| | 4/ 4 | 연간 | 1/ 4 | 2/ 4 | 3/ 4 | 4/ 4 | 연간 |
| 상위 1개사 | 40.1 | 39.7 | 40.7 | 39.4 | 38.5 | 38.6 | 39.3 |
| 상위 3개사 | 76.4 | 78.0 | 77.0 | 75.4 | 76.3 | 74.5 | 75.8 |
| 상위 9개사 | 93.2 | 87.1 | 92.9 | 92.3 | 92.1 | 91.8 | 92.3 |
| 외 국 사 | 9.6 | 8.0 | 10.0 | 10.7 | 9.4 | 12.0 | 10.5 |
| 국내중소형사 | 14.0 | 14.0 | 13.0 | 13.9 | 14.2 | 13.6 | 13.7 |
| 허핀달지수 | 0.2330 | 0.2362 | 0.2373 | 0.2267 | 0.2254 | 0.2201 | 0.2271 |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3년 3월말 알리안츠, 푸르덴셜, ING, 라이나, AIG, 메트라이프, 프랑스, 뉴욕생명, PCA, 카디프 등 10사(ING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임.
4) 국내중소형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사로 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수지상황

**FY2002 당기손익은 손익위주 경영과 자산운용 구조 전환으로 FY2001 이후 높은 흑자수준으로 이어져 2조 8천억원의 흑자를 시현하였음.**

□ 보험수지차는 생보사의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판매확대 등 손익위주의 경영전환 결과로 FY2001 이후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FY2002 보험수지차는 전년대비 5조 9천억원 정도 증가한 11조 1,292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수입보험료의 증가와 지급보험금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임.

※보험수지차 = 수입보험료－지급보험금－사업비(단, 사업비는 이연신계약비 상각전 실제사업비 기준)

<표 4>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및 사업비

(단위 : 억원, %)

| 구 분 | FY2001 | | FY2002 | | |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지급보험금 | 66,527 | 343,528 | 64,103 | 62,639 | 82,372 | 85,068 | 294,180 |
| | -26.5 | –15.0 | -33.0 | -27.2 | -13.5 | 27.9 | -14.4 |
| 사 업 비 | 20,632 | 78,216 | 19,997 | 21,029 | 22,758 | 21,407 | 85,196 |
| | 2.1 | 8.0 | 9.1 | 10.5 | 12.5 | 3.8 | 8.9 |

주 : 1) 특별계정을 포함하였으며, 사업비는 신계약비 상각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사업비임.
2) 하단의 비율은 증감률로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3)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 생명보험산업은 만성적자에서 흑자구조로 전환한 FY2001 이후 FY2002에도 높은 흑자수준이 이어졌으며, 그 규모는 2조 8,320억원에 달하고 있음.

o 이러한 순이익의 증가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상품의 비중을 확대하는 보험상품의 판매구조 개선과 효율적 자원재분배를 통한 내실위주의 경영에 따라 생보사의 주요 경영지표가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보험금지급률 : FY2001. 72.5% → FY2002. 60.0%(△12.5%p)

o 또한, 채권 및 대출 중심의 안정적인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개선과 저금리추세에 따른 평가 및 매각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총투자수지가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o 그러나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투자수지 악화 및 종신보험의 급속한 증가세 둔화 가능성, 종신보험 판매에 따른 3차년 이후의 책임준비금 적립 문제를 감안[2]할 경우 손익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종신보험은 판매 초기인 1차년도 및 2차년도에 높은 비차익을 시현하고, 3 7차년도에 비차손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보험개발원,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CEO REPORT 2002 - 03, 2002. 6)

<표 5> 생명보험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 구 분 | | FY1998 | FY1999 | FY2000 | FY2001 | FY2002 |
|---|---|---|---|---|---|---|
| 보험영업 손익 | 수익 | 465,717 | 419,427 | 484,695 | 433,100 | 457,713 |
| | 비용 | 507,706 | 427,358 | 450,552 | 373,834 | 337,132 |
| | 손익 | -41,989 | -7,932 | 34,144 | 59,267 | 120,581 |
| 투자영업 손익 | 수익 | 100,462 | 106,073 | 84,204 | 92,351 | 105,707 |
| | 비용 | 65,439 | 45,874 | 38,546 | 22,691 | 23,368 |
| | 손익 | 35,023 | 60,199 | 45,658 | 69,660 | 82,339 |
| 준비금전입 | | 25,844 | 50,938 | 81,188 | 100,016 | 160,325 |
| 기타손익 | | -6,859 | -9,492 | -5,318 | -7,848 | -7,000 |
| 법 인 세 | | 543 | 1,646 | 228 | 3,835 | 7,275 |
| 당기순이익 | | -40,212 | -9,808 | -6,933 | 17,228 | 28,320 |

주 :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o FY2002 생명보험산업은 실적 호전에 힘입어 적자를 기록한 회사가 전년대비 8개사에서 6개사로 감소했으나 지급여력비율의 소정비율 상향조정(2003년 3월말 75%) 등으로 전체의 지급여력비율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232.5%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FY2002 생명보험회사 평균 지급여력비율 : 286.1%(FY2001) →305%(1/4분기) → 281%(2/4분기) → 303.8%(3/4분기) → 232.5%(4/4분기, 대신생명 제외)

3) 자산운용

**FY2002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164조 2,225억원으로 영업수지와 투자수지 개선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하였으며, 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현·예금 순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고 있음.**

□ FY2002말 생명보험회사들의 총자산은 164조 2,225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함.

o 보험사 그룹별 자산점유율을 살펴보면, 대형사의 경우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중소형사는 12.2%, 외국사 7.3%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총자산의 50.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출채권 28.8%, 부동산 6.0%, 현·예금 2.1%의 구성을 보이고 있음.

o 유가증권의 항목별 구성비는 채권 등의 비중이 42.7%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익증권 4.5%, 주식 3.6%의 순임.

o 주식시장 침체 등 투자환경 악화로 인한 주식의 보유비중은 감소한 반면, 증시불안정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채권 및 해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o 대출채권은 개인 및 기업대출의 자산 구성비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2.0%p 감소한 28.8%의 구성비를 차지함.

□ 주식시장 하락에 따라 유가증권의 이익은 감소하였으나 채권 및 대출, 부동산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투자수지차가 개선되어 투자비용을 감안한 투자이익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o 일반계정을 기준으로 한 총자산수익률은 7.7%로 전년대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자비용을 감안한 투자이익률의 경우 전년대비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3].

o 다만, 국내경기 침체 및 노사갈등 심화에 따른 대외 신인도의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향후 투자실적 전망의 불투명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3) 총자산이익률은 FY2001 5.9%이며, FY2002 6.4%임.

<표 6> 생명보험회사 자산구성 및 투자수익률

(단위 : %)

| 구 분 | FY2000 | | FY2001 | | FY2002 6월말 | | FY2002 연말 | |
|---|---|---|---|---|---|---|---|---|
| | 구성비 | 수익률 | 구성비 | 수익률 | 구성비 | 수익률 | 구성비 | 수익률 |
| 현·예금 및 예치금 | 3.3 | 7.1 | 2.0 | 5.3 | 1.9 | 6.2 | 2.1 | 5.3 |
| 유 가 증 권 | 42.7 | 8.6 | 48.3 | 8.6 | 49.9 | 8.4 | 50.8 | 10.8 |
| ○ 상품유가증권 | 9.6 | 8.7 | 6.1 | 11.8 | 5.4 | 11.4 | 4.0 | 11.3 |
| - 주 식 | 0.6 | 22.4 | 0.2 | 98.3 | 0.2 | 14.1 | 0.1 | 19.4 |
| - 채권 등 | 3.1 | 12.6 | 2.2 | 14.7 | 2.4 | 21.4 | 2.2 | 25.9 |
| - 수익증권 | 5.8 | 4.9 | 3.7 | 5.7 | 2.8 | 4.5 | 1.7 | 4.7 |
| ○ 투자유가증권 | 33.2 | 8.6 | 42.2 | 7.9 | 44.6 | 8.1 | 46.8 | 7.8 |
| - 주 식 | 4.4 | 5.2 | 6.0 | 4.3 | 4.4 | 5.0 | 3.5 | 5.2 |
| - 채권 등 | 25.1 | 10.6 | 33.0 | 8.9 | 37.6 | 8.3 | 40.5 | 11.0 |
| - 수익증권 | 3.6 | 1.7 | 3.2 | 5.1 | 2.6 | 10.2 | 2.8 | 6.5 |
| 대 출 채 권 | 34.0 | 11.5 | 30.8 | 10.7 | 29.9 | 10.4 | 28.8 | 10.8 |
| 부 동 산 | 8.4 | 3.6 | 7.0 | 2.8 | 6.4 | 3.9 | 6.0 | 3.6 |
| 운 용 자 산 계 | 88.5 | 9.1 | 88.1 | 8.7 | 88.1 | 8.7 | 87.8 | 8.6 |
| 비 운 용 자 산 | 11.5 | 1.1 | 11.9 | 1.5 | 11.9 | - | 12.2 | - |
| 일반계정자산 계 | 100.0 (93.1) | 8.2 | 100.0 (92.5) | 7.8 | 100.0 (92.9) | 7.9 | 100.0 (92.0) | 7.7 |
| 특 별 계 정 자 산 | 6.9 | - | 7.5 | - | 7.1 | - | 8.0 | - |
| 총 자 산 | 100.0 | - | 100.0 | - | 100.0 | - | 100.0 | - |

주 : 1) 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단 ( )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자산별 투자수익률은 각사 월말보고서 재산이용명세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일반계정의 총투자수익률 계산에서는 손익계산서 상의 투자수익을 사용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경영효율

**FY2002는 전년 대비 수보증가와 환급금감소로 보험금지급률이 개선되고 보험설계사 정착율은 소폭 상승한 반면 해약률은 상승하고 계약유지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FY'2002 생명보험회사 보험금지급률은 수입보험료의 증가(3.6%)와 지급보험금 하락(14.4%)에 힘입어 전년 대비 12.5%p 개선된 60.0%를 기록함.

o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전년 대비 18.9%와 10.4% 감소하였으나,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망보험의 수입보험료가 21.5%로 증가하여 전체 개인보험의 보험금지급률은 전년 대비 14.7% 감소하였음.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지급보험금의 감소폭(35.1%)이 커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FY2002 사업비율은 17.4%로 전년도에 이어 실제사업비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나 이는 경영효율성의 저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보험산업계의 지속적 경영개선 노력에 따른 비용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o 보험종목별로는 무배당 보험의 수입보험료가 21.0% 증가하고 실제사업비가 18.5% 증가했음. 상품별로는 금리연동형보험과 종신보험의 수입보험료가 26.6%, 93.5% 증가한 반면 실제사업비가 각각 72.1%, 47.5% 증가해 대조를 보였음.

<표 7> 생명보험회사 보험금지급률 및 사업비율

(단위 : %)

| 구 분 | FY2001 | | | FY2002 | | | | |
|---|---|---|---|---|---|---|---|---|
|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보험금지급률 | 68.7 | 59.6 | 72.5 | 55.4 | 55.0 | 56.6 | 73.5 | 60.0 |
| 사업비율 | 14.6 | 18.5 | 16.5 | 17.3 | 18.5 | 15.6 | 18.5 | 17.4 |

주 : 1) 보험금지급률은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은 사업비/수입보험료이며, 사업비는 이연신계약비를 감안하지 않은 실제사업비임.
2)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 생명보험회사들의 주요 경영효율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반기 해약률과 계약유지율, 보험설계사 정착률 등은 개선되다가 4/4분기 해약률은 상승, 계약유지율은 소폭 하락함.

o 최근 경기침체에 의한 영향으로 해약률은 전년동기 대비 0.9%p 상승하여 14.8%가 되었으며, 4/4분기의 13회차 계약유지율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고, 보험설

계사 정착률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채권위주의 안정적 자산운용으로 투자수익률은 8.9%로 전년 동기 대비 0.2%p 개선하였으나, FY2002 초부터 주식시장 침체와 금리하락으로 인해 투자환경은 악화되었음.

<표 8> 생명보험회사 주요 경영효율 지표

(단위: %)

| 구 분 | | FY2001 | | | FY2002 | | | |
|---|---|---|---|---|---|---|---|---|
| | | 2/ 4 | 3/ 4 | 4/ 4 | 1/ 4 | 2/ 4 | 3/ 4 | 4/ 4 |
| 해약률 | | 8.3 | 11.4 | 13.9 | 3.7 | 7.5 | 11.2 | 14.8 |
| 자산운용율 | | 87.6 | 88.4 | 88.1 | 87.9 | 88.1 | 88.2 | 87.8 |
| 투자 수익률 | 운용자산 | 8.8 | 8.6 | 8.7 | 9.1 | 8.7 | 8.6 | 8.9 |
| | 총자산 | 7.9 | 7.7 | 7.8 | 8.2 | 7.9 | 7.8 | 8.5 |
| 계약유지율 | | 72.3 | - | 79.0 | - | 81.9 | - | 78.8 |
| 보험설계사정착률 | | 27.1 | - | 28.8 | - | 31.2 | - | 30.6 |

주 : 1) 해약률, 자산운용율 및 투자수익률은 일반계정 기준.
2) 계약유지율은 13회차, 보험설계사정착률은 13월차 기준임.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월보』, 각 월호 및 「보험사의 경영효율」, 반기별 보도자료.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5) 판매채널

| |
|---|
| 판매채널 효율화 노력이 지속되어 보험 및 임직원수가 감소하고, 판매채널 다각화 및 효율화 노력의 결과 대리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생산성이 증가함. |

□ FY2002 초회보험료의 모집형태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판매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단체보험과 퇴직보험의 판매 부진으로 회사직급의 비중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o FY2002 단체보험의 상대적 영업부진과 퇴직보험의 감소로 인해 회사직급의 판매비중이 전년 동기 55.7%에서 46.0%로 감소함.

o 보험설계사의 판매비중은 전년 대비 41.6%에서 45.8%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변액종신보험 중심의 보장성보험과 연금보험의 판매급증, 단체보험의 신규수요 감소에 따른 회사직급의 비중이 하반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o 초회보험료에서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큰 폭 증가한 것은 생명보험사가 대리점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대리점을 통한 보험판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9> 보험모집 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원, %)

| 구 분 | FY2001 | | | | FY2002 | | | | |
|---|---|---|---|---|---|---|---|---|---|
|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회사직급 | 44.4 | 66.2 | 44.5 | 55.7 | 45.5 | 50.0 | 57.1 | 22.9 | 46.0 |
| 보험설계사 | 53.9 | 31.4 | 49.0 | 41.6 | 47.7 | 41.9 | 36.7 | 63.4 | 45.8 |
| 대 리 점 | 1.5 | 2.3 | 6.2 | 2.6 | 6.0 | 6.9 | 4.9 | 11.8 | 7.0 |
| 기 타 | 0.1 | 0.1 | 0.2 | 0.1 | 0.8 | 1.2 | 1.3 | 1.9 | 1.3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18,168 | 25,371 | 12,209 | 80,440 | 12,694 | 12,784 | 18.346 | 10,844 | 54,668 |

주 :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3) FY1999의 경우 특별계정을 제외하고, FY2000부터는 특별계정을 포함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 FY2002에도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임직원과 보험설계사수가 계속 감소한 반면 보험설계사생산성, 특히 대리점생산성은 크게 증가하였음.

o 보험설계사수는 151,064명으로 최근 지속적 감소추세를 이어 전년에 비해 11.9% 감소하였으며, 임직원수도 전년 대비 6.5% 감소하였음.

o 대부분 내국사들이 영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설계사를 줄이고(17.1%) 대리점수를 증가(5.2%)시켰으나, 외국사들과 일부 내국사의 경우 보험설계사수를 대폭 늘리고(20.2%), 임직원수를 늘려(6.3%) 영업조직을 확대하고 있음.

o FY2002은 투자형 보험상품판매확대, 통신판매 채널의 활성화로 전통적인 유통채

널인 모집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감축과 채널효율성 개선, 채널다각화 노력이 지속되었음.

<표 10> 판매채널 규모 및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 구 분 | FY2001 | | | FY2002 | | | |
|---|---|---|---|---|---|---|---|
| | 2/ 4 | 3/ 4 | 4/ 4 | 1/ 4 | 2/ 4 | 3/ 4 | 4/ 4 |
| 보험설계사수 | 192,331 | 177,133 | 171,505 | 168,654 | 160,324 | 155,393 | 151,064 |
| 대리점수 | 6,658 | 6,650 | 7,001 | 6,769 | 6,868 | 7,056 | 7,267 |
| 임직원수 | 30,670 | 29,179 | 28,572 | 28,136 | 26,729 | 26,561 | 26,726 |
| 보험설계사생산성<br>(대리점생산성) | 17,932<br>(22,104) | - | 18,244<br>(25,939) | - | 18,943<br>(63,374) | - | 19,585<br>(46,183) |

주 : 보험설계사생산성은 월평균 1인당 수입보험료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frac{\text{누적 보험설계사[대리점] 수입보험료}}{\text{(기초보험설계사[대리점]수+기말보험설계사[대리점]수)/ 2}} \div \text{누적월수}$$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금융감독원, "보험사의 경영효율", 반기별 보도자료.

(이상우 선임연구원, 김진억 선임연구원)

## 나. 손해보험

### 1)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FY200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 회복과 보증보험, 특종보험 등의 영업 신장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10.2% 증가한 20조 5,944억원을 시현함.**

□ FY200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 대비 10.2% 증가한 20조 5,944억원을 시현함.

o 이는 주로 건강 및 질병부문의 상품 판매 확대로 인한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 회복, 신용보험 판매 증대에 따른 보증보험의 영업 신장 및 특종보험에서의 성장율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o 자동차보험의 경우, 최근 성장율이 대폭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손해보험 시장의 38.4%라는 높은 점유율로 손해보험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 구 분 | FY2001 | | FY2002 | | |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총자산 | 327,267 | 327,267 | 329,844 | 339,338 | 352,114 | 353,683 | 353,683 |
| | -1.6 | 16.7 | 0.8 | 2.9 | 3.8 | 0.4 | 8.1 |
| 원수보험료 | 46,649 | 186,887 | 49,494 | 51,409 | 54,958 | 50,083 | 205,944 |
| | 12.4 | 10.8 | 12.2 | 10.9 | 10.5 | 7.4 | 10.2 |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율로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 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된 실적임.
3)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총자산 규모는 보험료 및 준비금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 투자환경 악화에 따른 투자영업이익 감소로 성장율 8.1%에 그침.**

□ FY2002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35조 3,683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여 전년도 총자산 성장율 16.7%보다 8.6%p 하락함.

o 이는 보험료 및 준비금 규모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침체 등 경제환경 악화에 따른 투자영업이익 감소에 기인하는 것임.

o 즉, 전년 대비 투자영업수익이 2,874억원 감소하고 투자영업비용은 5,808억원 증가함에 따라 FY2002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682억원 감소함.

<그림 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연도별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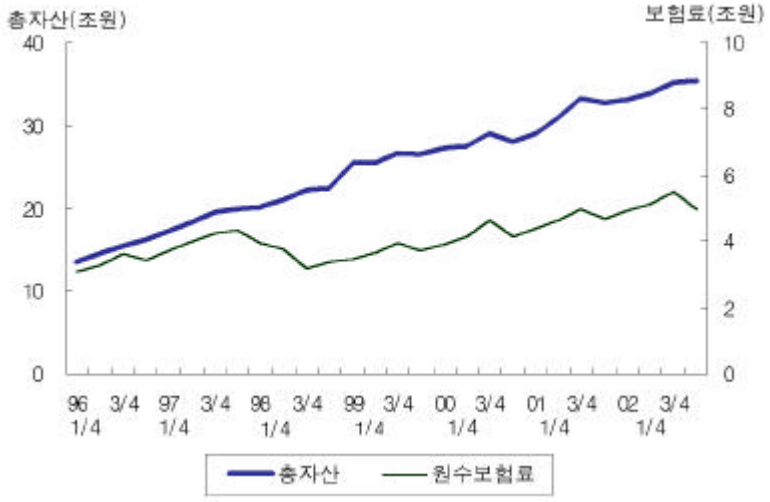


□ FY200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이 38.4%로 전년 대비 1.5%p 감소하였으며, 장기손해보험은 0.1%p 감소한 38.9%의 점유율을 나타냄.

o 특종보험(8.1%), 보증보험(4.5%)의 경우 FY2001보다 소폭 증가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상보험(2.7%) 및 화재보험(1.6%)의 점유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표 1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 구 분 | | FY2001 | | FY2002 | | | | |
|---|---|---|---|---|---|---|---|---|
| | | 4/ 4 | 연간 | 1/ 4 | 2/ 4 | 3/ 4 | 4/ 4 | 연간 |
| 화 재 | 보험료 | 698 | 3,035 | 804 | 755 | 910 | 750 | 3,219 |
| | 성장율 | 9.8 | 10.2 | 13.1 | 2.2 | 2.6 | 7.4 | 6.1 |
| | 구성비 | 1.5 | 1.6 | 1.6 | 1.5 | 1.7 | 1.5 | 1.6 |
| 해 상 | 보험료 | 1,402 | 5,292 | 1,506 | 1,388 | 1,293 | 1,418 | 5,605 |
| | 성장율 | 23.8 | 21.8 | 31.5 | 9.6 | -12.6 | 1.1 | 5.9 |
| | 구성비 | 3.0 | 2.8 | 3.0 | 2.7 | 2.4 | 2.8 | 2.7 |
| 자동차 | 보험료 | 18,012 | 74,601 | 19,334 | 20,917 | 20,529 | 18,358 | 79,138 |
| | 성장율 | 10.7 | 14.8 | 8.3 | 7.5 | 6.5 | 1.9 | 6.1 |
| | 구성비 | 38.6 | 39.9 | 39.1 | 40.7 | 37.4 | 36.7 | 38.4 |
| 보 증 | 보험료 | 1,954 | 7,156 | 2,184 | 2,235 | 2,413 | 2,530 | 9,362 |
| | 성장율 | 27.3 | 18.9 | 40.0 | 28.1 | 27.2 | 29.5 | 30.8 |
| | 구성비 | 4.2 | 3.8 | 4.4 | 4.3 | 4.4 | 5.1 | 4.5 |
| 특 종 | 보험료 | 3,110 | 13,876 | 4,302 | 4,319 | 4,641 | 3,472 | 16,734 |
| | 성장율 | 32.4 | 29.7 | 24.5 | 27.2 | 18.5 | 11.6 | 20.6 |
| | 구성비 | 6.7 | 7.4 | 8.7 | 8.4 | 8.4 | 6.9 | 8.1 |
| 해외 원보험 | 보험료 | 156 | 502 | 144 | 121 | 146 | 153 | 564 |
| | 성장율 | 159.9 | 13.8 | 7.9 | -2.1 | 63.8 | -1.8 | 12.3 |
| | 구성비 | 0.3 | 0.3 | 0.3 | 0.2 | 0.3 | 0.3 | 0.3 |
| 장 기 | 보험료 | 19,271 | 72,882 | 19,302 | 19,707 | 20,342 | 20,783 | 80,134 |
| | 성장율 | 11.8 | 5.0 | 11.6 | 11.0 | 9.6 | 7.8 | 10.0 |
| | 구성비 | 41.3 | 39.0 | 39.0 | 38.3 | 37.0 | 41.5 | 38.9 |
| 개 인 연 금 | 보험료 | 1,660 | 6,678 | 1,661 | 1,684 | 1,701 | 1,740 | 6,786 |
| | 성장율 | 3.4 | 8.5 | -0.4 | 0.4 | 1.7 | 4.8 | 1.6 |
| | 구성비 | 3.6 | 3.6 | 3.4 | 3.3 | 3.1 | 3.5 | 3.3 |
| 퇴 직 보 험 | 보험료 | 387 | 2,865 | 258 | 282 | 2,982 | 879 | 4,401 |
| | 성장율 | -42.6 | -25.1 | -12.9 | 38.9 | 50.7 | 127.3 | 53.6 |
| | 구성비 | 0.8 | 1.5 | 0.5 | 0.5 | 5.4 | 1.8 | 2.1 |
| 계 | 보험료 | 46,649 | 186,887 | 49,494 | 51,409 | 54,958 | 50,083 | 205,944 |
| | 성장율 | 12.4 | 10.8 | 12.2 | 10.9 | 10.5 | 7.4 | 10.2 |

주 : 1) 성장율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2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7조 9,138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하였으나, FY2001 성장율 14.8%에 비하여 대폭 둔화되었음.

o 이는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정체 현상 및 최근 2년에 걸친 자동차보험 요율 인하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즉, FY2002에는 월드컵 영향으로 신차 출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자동차 내수 침체로 분기별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이 정체 현상을 보임.

o 이와 더불어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의 비중이 FY2001 0.5%에서 FY2002 3.0%로 확대되면서 경쟁심화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o 이러한 성장율 둔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FY2002 4/4분기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1.9% 증가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0.0% 증가한 8조 134억원을 나타내었으며, 전체 손해보험 시장의 44.3%를 점유하는 등 성장이 회복되고 있음.

o 의료비 보장 상품과 고연령보장형 상품을 비롯한 질병 부문의 장기손해보험 성장 확대에 따른 것임.

o 이와 더불어, FY2001. 4월 시행된 참조위험률 상승 조정 효과[4]도 장기손해보험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함.

o 그러나, 금융시장의 저금리 추세에 따른 저축성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하여 FY2002 이후 분기별 성장율 추이는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연금보험은 FY2002 1.6%의 성장율을 보여 FY2001 8.5% 보다 대폭 하락하였으며, 손해보험 시장에서의 비중도 전년 대비 0.3%p 감소한 3.3%를 나타내는 등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임.

□ FY2002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30.8% 증가한 9,362억원을 나타내었으며,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한 4.5%를 기록함.

o FY2002 4/4분기 성장율 29.5%를 기록하는 등 보증보험 시장의 성장은 신용카드

4) 장기손해보험 참조위험률 검증 결과, 상해사망율을 손해율에서 발생율 개념으로 전환하는 등 위험률 적용 체계 개정 및 의료비위험률 상승 조정 등이 이루어졌음.

신용보험, 소액loan신용보험 등 신용보험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이행보증보험 시장의 꾸준한 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해상보험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5,605억원을 나타내면서 FY2002 보험료 성장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o 종목별 성장율을 살펴보면, 해상보험에서의 점유율 35.0%를 차지하는 적하보험의 성장율은 15.3%인 반면, 점유율 27.9% 및 29.7%인 선박보험과 항공보험은 각각 0.4%, 0.7% 감소하였음.

o 해외 출재비중이 높은 선박보험, 항공보험의 경우, 9.11 테러사태로 인하여 요율이 급상승하였으나, FY2002 이후 점차적으로 요율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FY2002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조 6,734억원으로 전년 대비 20.6%의 성장율을 시현하였으며, 손해보험 시장의 8.1%를 차지하고 있음.

o 전체 특종보험의 47.1%를 점유하는 종합보험이 17.5% 성장하였고, 이외에 책임보험 24.0%, 기술보험 27.1%, 상해보험 22.7%의 성장율을 나타내는 등 전 종목에서의 고른 성장세에 기인함.

<그림 4>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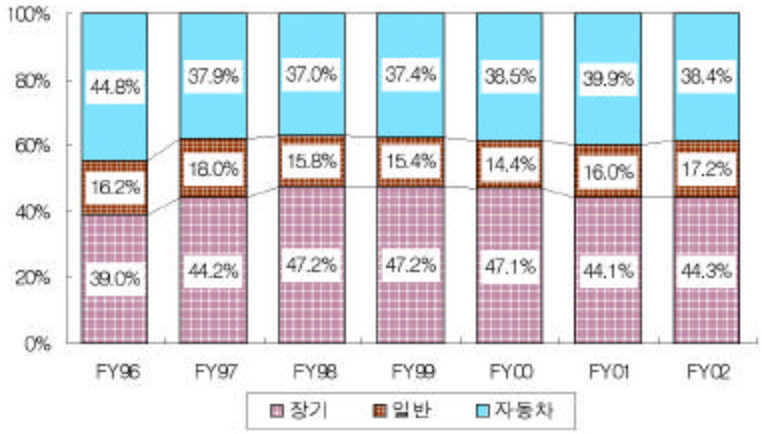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임.
2)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3) 일반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권원보험,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4)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 FY2002 보험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o 즉, 상위 4개사의 비중은 전년 대비 1.8%p 증가한 70.0%를 나타내었고, FY2002 분기별 시장점유율은 유사한 수준을 보임.

o 한편, 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이 FY2001 3.9%에서 0.9%p 증가한 4.7%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증보험의 성장과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의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임.

- FY2002 4/4분기 전업사 시장점유율은 5.2%로 나타나 FY2002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o 외국사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0.1%p 증가하고, FY2002 4/4분기 0.9%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시장이 확대됨.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는 전년보다 증가한 수준인 0.1571를 나타내어 FY2001에 비하여 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

<표 13>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 구 분 | | FY2001 | | FY2002 | | | |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점유비 | 상위1개사 | 28.9 | 28.9 | 29.6 | 30.7 | 29.6 | 29.8 | 29.9 |
| | 상위4개사 | 68.7 | 68.2 | 70.0 | 70.4 | 70.0 | 69.6 | 70.0 |
| | 일반사 계 | 95.1 | 95.5 | 95.0 | 94.9 | 94.6 | 94.0 | 94.6 |
| | 전 업 사 | 4.2 | 3.9 | 4.4 | 4.4 | 4.7 | 5.2 | 4.7 |
| | 외 국 사 | 0.7 | 0.6 | 0.6 | 0.7 | 0.7 | 0.9 | 0.7 |
| 허 핀 달 지 수 | | 0.1519 | 0.1525 | 0.1516 | 0.1604 | 0.1560 | 0.1557 | 0.1571 |

주 : 1) 일반사 계에는 교보자동차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4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아메리카 5개사임.
2)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 수지상황

**FY2002 손해보험 발생손해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3조 4,670억원, 사업비 지출 규모는 4조 7,032억원으로 10.9% 증가함.**

□ FY2002 전체 손해보험의 발생손해액은 13조 4,67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함.

o 자동차보험의 발생손해액은 FY2002 상반기 월드컵 개최 등으로 손해율이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태풍 피해를 비롯한 자동차 사고율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12.6% 증가한 4조 8,836억원을 기록함.

o 또한,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에서의 발생손해액은 증가한 반면, 보증보험의 경우 FY2001보다 대폭 감소하여 3,330억원을 나타냄.

□ FY2002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총 4조 7,032억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어 전년 대비 10.9%의 증가율을 나타냄.

o 전체 사업비중 42.1%는 자동차보험, 32.3%는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남.

<표 14> 손해보험회사 발생손해액 및 사업비

(단위 : 억원, %)

| 구 분 | FY2001 | | FY2002 | | |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발생손해액 | 46,433 | 131,685 | 30,794 | 33,120 | 33,892 | 34,916 | 134,670 |
| | 47.1 | 7.0 | 11.8 | 10.5 | 22.2 | -24.8 | 2.3 |
| 사 업 비 | 11,364 | 42,400 | 10,921 | 11,793 | 10,370 | 13,948 | 47,032 |
| | 21.0 | 12.2 | 30.5 | 9.7 | -0.2 | 22.7 | 10.9 |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퇴직보험과 부수사업은 제외된 수치임.
3)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당기순이익은 투자손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성장 및 손해율 하락에 따른 보험영업흑자 전환으로 전년 대비 48.8% 증가한 3,249억원을 나타냄.**

□ FY2002 손해보험 산업의 총수익은 21조 2,875억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으며, 이 중 보험영업수익이 18조 5,358억원으로 87.1%, 투자영업수익은 2조 1,000억원으로 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수지는 FY2001 1조 3,043억 적자에서 대폭 증가한 210억원 흑자를 시현함.

o FY2002에는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에서의 손해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측면에서 자동차보험의 꾸준한 확대, 장기손해보험 회복세, 보증보험 및 특종보험 등의 성장으로 인하여 보험수지 흑자를 나타냄.

□ FY2002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영업이익은 주식시장 침체 등 투자환경 악화로 인해 전년 대비 48.3% 감소한 8,860억원을 기록함.

o 투자영업수익은 1,401억원 감소한 반면, 투자영업손실은 4,375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투자여건 침체로 인한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보다 손실규모가 확대됨에 기인하는 것임.

o 즉, FY2002 상품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은 1,475억원으로 전년 대비 6,334억원 감소하였으며, 상품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실은 4,583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399억원 증가함.

□ FY2002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3,249억원으로 전년도 2,183억원 대비 1,066억원 증가함.

o 이는 투자손익에서 전년도 1조 7,218억원 대비 8,268억원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성장 및 손해율 하락으로 보험영업이 흑자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보임.

<표 15>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 구 분 | | FY2001 | | FY2002 | | | |
|---|---|---|---|---|---|---|---|
| | | 3/ 4 | 4/ 4 | 1/ 4 | 2/ 4 | 3/ 4 | 4/ 4 |
| 총수익 | 보험영업 | 121,229 | 164,254 | 43,869 | 89,670 | 135,707 | 185,350 |
| | 투자영업 | 15,300 | 22,401 | 5,859 | 11,037 | 15,972 | 21,000 |
| | 기 타 | 4,797 | 9,627 | 891 | 1,507 | 4,912 | 6,516 |
| | 계 | 141,326 | 196,282 | 50,620 | 102,215 | 156,591 | 212,875 |
| 총비용 | 보험영업 | 118,613 | 177,298 | 42,440 | 88,397 | 135,555 | 185,148 |
| | 투자영업 | 4,153 | 5,273 | 3,624 | 5,724 | 7,284 | 12,141 |
| | 기 타 | 3,143 | 8,141 | 2,160 | 3,056 | 7,154 | 9,648 |
| | 계 | 125,909 | 190,712 | 48,223 | 97,177 | 149,993 | 206,937 |
| 수지차 | 보험영업 | 2,616 | -13,043 | 1,429 | 1,274 | 151 | 210 |
| | 투자영업 | 11,147 | 17,128 | 2,235 | 5,313 | 8,688 | 8,860 |
| | 기 타 | 1,654 | 1,486 | -1,268 | -1,549 | -2,242 | -3,132 |
| | 계 | 15,417 | 5,570 | 2,396 | 5,038 | 6,598 | 5,937 |
| 법 인 세 | | 2,441 | 3,388 | 758 | 1,417 | 2,101 | 2,689 |
| 당기순이익 | | 12,976 | 2,183 | 1,638 | 3,621 | 4,497 | 3,249 |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3) 자산운용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현 · 예금 순으로 구성되며, 주식시장 침체 등 투자여건 악화로 주식, 수익증권의 보유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채권중심의 투자유가증권과 대출채권의 보유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FY2002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35조 3,683**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음.**

o **보험사 그룹별 자산점유율을 살펴보면, 대형사의 경우 전년말 대비** 2.6%p **증가한** 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형사는** 19.0%, **보증보험사** 9.2%, **재보사** 6.7%, **외**

국사 0.4%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일반계정 자산의 53.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출채권 17.1%, 부동산 9.1%, 현·예금 5.9%의 구성을 보이고 있음.

o 주식시장 침체 등 투자여건 악화로 인해 주식, 수익증권의 보유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채권중심의 투자유가증권과 대출채권의 보유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보험사 그룹별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o 대형사[5]의 경우, 투자유가증권(44.0%), 대출채권(21.5%)의 보유비중이 높게 나타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식 및 부동산의 보유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o 중소형사는 상품유가증권(26.5%)이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주식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2%p 하락하는 등 급감하고 있음. 대출채권(14.1%)의 보유비중이 높아지고, 부동산(11.6%)의 경우는 감소함.

o 반면, 외국사는 자산의 대부분을 현·예금(41.9%)과 유가증권(33.0%)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FY2002말 현·예금 비중은 전년 대비 9.0%p 증가함.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율은 85.3%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함.

o 대형사의 자산운용율은 90.8%로 높은 수준이며, 중소형사의 경우 86.6%, 외국사는 전년 대비 7.4%p 증가한 77.7%를 나타내고 있음.

□ FY1999 이후 도입된 퇴직보험을 운용하는 특별계정의 자산비중은 전년 대비 0.6%p 증가한 2.9%로 나타남.

5)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임.

<표 16>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 구 분 | FY2001 | | FY2002 | | | |
|---|---|---|---|---|---|---|
| | 3/ 4 | 4/ 4 | 1/ 4 | 2/ 4 | 3/ 4 | 4/ 4 |
| 현 금 과 예 금 | 7.4 | 6.7 | 6.5 | 7.0 | 6.1 | 5.9 |
| 유 가 증 권 | 48.5 | 53.8 | 54.1 | 53.6 | 54.2 | 53.2 |
| ㅇ 상품유가증권 | 24.2 | 23.8 | 22.8 | 20.8 | 19.3 | 17.5 |
| - 주 식 | 1.6 | 2.4 | 1.7 | 1.0 | 0.8 | 0.5 |
| - 채 권 등 | 15.4 | 12.8 | 14.4 | 13.0 | 12.7 | 12.2 |
| - 수익증권 | 7.2 | 8.6 | 6.7 | 6.8 | 5.8 | 4.8 |
| ㅇ 투자유가증권 | 24.3 | 30.0 | 31.2 | 32.8 | 34.9 | 35.7 |
| - 주 식 | 5.1 | 6.4 | 5.7 | 5.1 | 5.3 | 4.7 |
| - 채 권 등 | 18.3 | 23.0 | 25.2 | 27.5 | 29.1 | 30.8 |
| - 수익증권 | 0.9 | 0.5 | 0.3 | 0.2 | 0.5 | 0.2 |
| 대 출 채 권 | 13.3 | 14.4 | 14.8 | 15.1 | 15.6 | 17.1 |
| 부 동 산 | 9.5 | 9.7 | 9.5 | 9.3 | 9.1 | 9.1 |
| 운 용 자 산 계 | 78.7 | 84.5 | 84.9 | 85.0 | 85.1 | 85.3 |
| 비 운 용 자 산 | 21.3 | 15.5 | 15.1 | 15.0 | 14.9 | 14.7 |
| 일반계정 자산 계 | 100.0<br>(97.7) | 100.0<br>(97.7) | 100.0<br>(97.7) | 100.0<br>(97.8) | 100.0<br>(97.2) | 100.0<br>(97.1) |
| 특 별 계 정 자 산 | 2.3 | 2.3 | 2.3 | 2.2 | 2.8 | 2.9 |
| 총 자 산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 1)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단 ( )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경영효율

**FY2002 손해보험 산업의 합산비율은 사업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종목의 손해율 개선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8.4% 감소한 98.4%를 기록함.**

□ FY2002 손해보험 산업의 합산비율은 98.4%로 전년 대비 8.4%p 감소함.

o 장기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종목에서 합산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손해율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 특히 보증보험은 손해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합산비율이 전년 대비 166.3%p 감소함.

<표 17> 손해보험회사 합산비율

(단위 : %)

| 구 분 | FY2001 | | FY2002 | | | |
|---|---|---|---|---|---|---|
| | 3/ 4 | 4/ 4 | 1/ 4 | 2/ 4 | 3/ 4 | 4/ 4 |
| 경과손해율 | 70.9 | 80.8 | 70.7 | 71.1 | 73.5 | 72.9 |
| 사업비율 | 25.0 | 25.0 | 25.1 | 25.3 | 24.4 | 25.5 |
| 합산비율 | 95.9 | 106.8 | 95.8 | 96.4 | 97.9 | 98.4 |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퇴직보험은 제외된 실적임.
3)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2 전체 손해보험 산업의 사업비율은 전년 대비 0.5%p 상승한 25.5%를 기록함.

o 시장구성비가 높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업비율은 시장확대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전년 대비 0.4%p 감소한 32.2%로 나타남.

□ 손해보험 산업 전체 손해율은 72.9%로 전년동기 대비 7.9%p 감소함.

o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보증보험은 누적된 부실이 전년도에 이미 반영된 결과, 올해 손해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전년 대비 166.3%p 감소한 42.0%로 나타남.

o 특종보험은 재보험자 협의요율 상승에 기인한 보험료 인상효과 등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전년 대비 6.3%p 감소한 47.5%로 나타남.

o 장기보험은 위험률 상승 조정효과 및 언더라이팅 강화에 힘입어 손해율이 전년 대비 2.9%p 감소한 81.5%로 나타남.

o 반면, 자동차보험은 68.4%의 손해율을 나타내어 전년 보다 증가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월드컵 이후 사고건수의 증가 및 태풍에 의한 침수피해 등 사고율 증가, 2003년 1월 보상범위 확대 등에 따른 발생손해액의 확대, 2002년 10월부터 적용된 보험료 인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18>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단위 : %)

| 구 분 | FY2001 | | FY2002 | | | |
|---|---|---|---|---|---|---|
| | 3/4 | 4/4 | 1/4 | 2/4 | 3/4 | 4/4 |
| 화재보험 | 49.6 | 51.1 | 41.7 | 46.9 | 57.0 | 54.3 |
| 해상보험 | 49.4 | 46.0 | 37.4 | 49.5 | 53.4 | 51.6 |
| 자동차보험 | 67.7 | 67.6 | 62.8 | 64.7 | 66.9 | 68.4 |
| 보증보험 | -83.2 | 208.3 | 38.6 | 42.4 | 77.7 | 42.0 |
| 특종보험 | 53.6 | 53.8 | 49.5 | 46.0 | 41.4 | 47.5 |
| 해외원보험 | 53.4 | 57.8 | 52.4 | 52.6 | 54.5 | 50.4 |
| 장기보험 | 84.9 | 84.4 | 81.6 | 81.4 | 81.4 | 81.5 |
| 개인연금 | 113.3 | 117.8 | 113.3 | 113.7 | 114.4 | 118.7 |
| 전 체 | 70.9 | 80.8 | 70.7 | 71.1 | 73.5 | 72.9 |

주 :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FY2002 손해보험 산업의 총자산 수익율은 증시침체 등 투자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1.0%p 하락한 6.1%로 나타남.**

□ FY2002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 수익률은 6.1%로 전년 대비 1.0%p 감소함.

o 특히 운용자산의 수익률에 있어 증시침체 등 투자여건의 악화로 인해 투자영업이익측면에서 상품유가증권 처분 및 평가이익 등이 감소함에 따라 수익률이 감소함.

<표 19> 손보사 자산운용율 및 총자산 수익률

(단위 : %)

| 구 분 | | FY2001 | | FY2002 | | | |
|---|---|---|---|---|---|---|---|
| | | 3/ 4 | 4/ 4 | 1/ 4 | 2/ 4 | 3/ 4 | 4/ 4 |
| 자산운용율 | | 78.7 | 84.5 | 84.9 | 85.0 | 85.1 | 85.3 |
| 수익율 | 운용자산 | 8.3 | 8.9 | 8.7 | 8.1 | 7.6 | 7.5 |
| | 총자산 | 6.8 | 7.1 | 7.2 | 6.7 | 6.3 | 6.1 |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총자산수익률=(투자영업수익×2)/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투자영업수익)×(연기준 환산)
3)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5) 판매채널

**FY2002에는 보험설계사의 판매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대리점과 회사직급을 통한 판매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임.**

□ FY2002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회사직급 11.0%, 보험설계사 36.9%, 대리점 51.1%, 공동인수 1.0%임.

o 부실 모집조직에 대한 자체내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대리점 전환 방침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판매비중이 감소되고, 이는 대부분 대리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보임.

o 반면, 특종·보증·온라인자동차보험의 판매호조 등에 따라 회사직급을 통한 판매비중이 증가(전년 대비 1.9%p) 하면서, 원수보험료 규모 또한 전년 대비 32.6%가 증가하는 성장세를 나타냄.

<표 20> 손보사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 구 분 | FY2001 | | FY2002 | | | |
|---|---|---|---|---|---|---|
| | 3/ 4 | 4/ 4 | 1/ 4 | 2/ 4 | 3/ 4 | 4/ 4 |
| 회사직급 | 12,261<br>8.9 | 16,723<br>9.1 | 5,515<br>11.2 | 11,162<br>11.1 | 16,962<br>11.1 | 22,179<br>11.0 |
| 보험설계사 | 55,101<br>40.0 | 72,880<br>39.6 | 18,287<br>37.1 | 37,214<br>37.1 | 56,111<br>36.8 | 74,411<br>36.9 |
| 대 리 점 | 58,518<br>49.8 | 92,935<br>50.0 | 24,864<br>50.5 | 50,923<br>50.7 | 77,726<br>51.0 | 102,932<br>51.1 |
| 공동인수 | 1,833<br>1.3 | 2,384<br>1.3 | 571<br>1.2 | 1,064<br>1.1 | 1,540<br>1.0 | 2,019<br>1.0 |

주 : 1)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3)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부실 모집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보험설계사수가 감소하면서 FY2002 보험설계사 생산성(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하는 등 향상되었음.

□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규모는 1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8% 향상하였으며, 대리점당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7.2%,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는 7.3% 증가함.

o FY2002말 보험회사 임직원수는 전년 21,545명에서 20,886명, 보험설계사수는 57,061명에서 54,291명, 대리점수는 53,295개에서 50,877개로 감소함.

<표 21> 손보사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FY2001 | | FY2002 | | | |
|---|---|---|---|---|---|---|
| | 3/ 4 | 4/ 4 | 1/ 4 | 2/ 4 | 3/ 4 | 4/ 4 |
| 임 직 원 | 56.9 | 77.6 | 26.9 | 53.3 | 81.8 | 106.2 |
| | 34.9 | 46.5 | 68.1 | 54.3 | 43.1 | 36.8 |
| 모 집 인 | 93.0 | 127.7 | 32.7 | 68.3 | 101.5 | 137.1 |
| | 23.6 | 11.9 | 3.5 | 14.9 | 9.1 | 7.3 |
| 대 리 점 | 124.4 | 172.7 | 47.2 | 96.1 | 149.3 | 202.3 |
| | 10.0 | 27.5 | 19.8 | 18.2 | 20.0 | 17.2 |

주 : 1)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4)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 임직원수
5)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 보험설계사수
6)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 대리점수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조혜원 선임연구원, 신동현 연구원)

#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 1. 재경부,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초안 마련

<개정 배경>

□ 재경부는 방카슈랑스 도입, 의무보험 피해자 보호 강화 등 보험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77년 이후 26년만에 보험업법 전면개정을 공포하였으며, 방카슈랑스 시행방안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 이에 재경부는 6월 27일 시행령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와 법제처 및 정부각료회의를 통하여 금년 8월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임.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 보험금지급이 보장되는 손해보험계약 범위

*보험사 파산시 예보법상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의무보험 피해자(법인제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회사들이 기금을 출연·지급 보장*

o 법령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 된 15개 의무보험(자동차 책임보험, 도시가스사업법등에 의한 가스사고배상보험 등) 및 자동차종합보험

□ 보장되는 보험금액

o 보장대상은 신체손해만 보장함(재물손해는 제외).

o 보장한도는 개별법령의 보장한도*에서 예보법상의 보장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장함.

* (예) 화재보험, 자동차책임보험 : 사망시 1인당 8천만원

- 다만,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80%*만 보장(최고한도: 1억원)

* 피해액에서 책임보험 보장금액인 8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80%

□ 손해보험회사의 출연금액

o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사 파산시 각 사별 분담액*을 매년 예금보험료**의 범위이내에서 분할 납부함으로써 소요재원을 부담함.

* 개별 손보사의 책임준비금 및 수입보험료 규모에 비례하여 분담
** (책임준비금 및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액)×0.3%

<보험사 설립허가 및 겸영 ·부수 업무>

*보험종목별 허가제도 도입에 따라 일부 보험종목을 신설하고 단일 종목만 영위하는 보험사의 최소자본금을 규정*

□ 보험종목별 허가제도 도입에 따라 일부 보험종목을 신설하고 단일 종목만 영위하는 보험사의 최소자본금을 규정함.

| 현 행 | 개 정 |
|---|---|
| 자동차보험(200억원), 해상보험(150억원), 화재보험(100억원) | <좌 동> |
| <신 설> | 생명보험, 연금(퇴직)보험 : 각 200억원<br>상해·질병·간병보험 : 각 100억원 등 |

* 생명보험업(또는 손해보험업)의 모든 종목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300억원

□ 최소 자본금이 일반 보험사의 3분의 2수준으로 완화되는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의 정의 및 모집방법 등을 규정함.

o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이상을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회사'

o 동 모집비율 위반시 90% 모집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통신수단 외의 방법으로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함.

□ 기존 보험사를 인수하여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가 되거나 10%이상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사 설립시의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여 금감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험사 겸영*·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해당법령에서 보험사가 영위하도록 허용하거나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
** 금감위의 인가 없이 영위가능한 업무

o 겸영업무는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외에 수익증권 판매, 보험금 신탁업무 등을 포함.

o 부수업무는 보험계리업무 등 현행 금감위 규정으로 허용하고 있는 업무 외에 자동차관련 부가서비스, 재공제 업무 등을 추가함.

<보험모집 및 계약자 보호 관련 사항>

□ 부당한 보험계약 변경에 따른 계약자 구제절차 등을 구체화함.

*부당한 보험계약 변경에 따른 계약자 구제절차 등을 구체화*

o 보험료, 예정이자율 등의 주요 사항을 비교·고지하지 않고 3월 이내의 기간에 기존계약을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변경으로 간주함.

o 부당한 계약변경시 계약자는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기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함(통지가 없을 경우 승낙으로 간주).

□ 보험모집시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분의 1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으로 간주함.

o 특별이익 제공자 및 요구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제공자에 한함)을 부과함.

□ 보험대리점 등록과 관련, 겸영법인대리점*등록 요건을 일부 완화함.

* 보험대리점 외의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임직원수 100명 이상인 법인

o 보험설계사 자격이 필요한 소속 임직원의 수를 현행 3분의 1→10분의 1로 완화함(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동 요건의 적용을 제외).

*교차모집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서류를 보험협회에 제출해야함*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 보험설계사가 교차모집을 할 때는 교차모집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서류를 보험협회에 제출해야 함.

o 교차모집 보험설계사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함.

<보험조사협의회>

□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o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은 금감위 및 금감원의 각 1명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 금감위가 지정한 기관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1인과 금감위가 추천한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금감위가 위촉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o 보험조사협의회는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조사 정보의 교환, 공동조사의 실시 등 관련기관간 협조, 조사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사항을 각각 심의하도록 함.

□ 조사관련 정보의 공표

o 금융감독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 조사관련 통계, 관계자의 위법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언론기관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음.

(이상우 선임연구원)

## 2. 생 · 손보 직무위험등급 일원화 기준 마련

*가입금액 및 보험료 형평성을 위한 생손보 위험등급 일원화*

□ 금융감독원은 생 · 손보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o 상해보험 등 제3분야 보험은 생 · 손보 겸영이 가능한 보험으로 보험회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제3분야 보험 :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장기간병보험

o 위험률 산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가 생 · 손보간 상이하여 동일한 직업에 대한 보험가입한도 또는 보험료가 달리 적용되는 등 형평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음.

* 직무위험등급 분류표는 보험개발원에서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 보험업계에 제공하고 있으며, 화학제품제조공의 경우 생보는 5등급 중 2급으로, 손보는 3등급 중 3급으로 분류

* 생명보험은 191개 직업군에 대해 위험등급을 1 5등급으로, 손해보험은 543개 직업군에 대해 1 3등급으로 구분

□ 따라서, 생 · 손보간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를 일원화하여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위험등급의 차등적용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계획임.

□ 추진내용

o 보험개발원에 집적된 기초통계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생 · 손보 업계별 적정 분류기준 마련

o 생 · 손보 직무위험등급 분류기준 통일(안) 마련

o 보험업계 의견 수렴 및 금융감독원 제공

o 통일 기준에 의한 표준 직무분류 등급표 작성

o 생 · 손보 공동 표준 상해위험률 산출, 신고

□ 기대효과

o 생·손보간 직무위험등급 분류체계를 일원화하여 생·손간 공정 경쟁유도 및 보험계약자 권익 도모

□ 세부 추진계획

*2004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통일(안)마련*

| 구분 | 업무내용 | 추진일정 |
|---|---|---|
| 1단계 | 기초통계자료 작성 | 2003년 6월 |
| | 통계적 분석 | 2003년 7월 |
| | 생·손보 적정분류기준마련 | 2003년 8월 |
| | 분류기준 통일(안) 마련 | 2003년 8월 |
| | 업계의견 수렴 | 2003년 9월 |
| | 금융감독원 협의 및 제공 | 2003년 9월 ~ 10월 |
| 2단계 | 표준 직무분류 등급표작성 (업계 작업반 운영) | 2003년 11월 |
| | 업계의견 수렴 | 2003년 12월 |
| | 표준위험률 산출, 신고 | 2003년 12월 |
| | 상품개정 및 확인 | 2004년 1월 ~ 3월 |
| | 시행 | 2004년 4월 |

(김진억 선임연구원)

### 3. 2003년도 하반기 보험감독 중점추진과제

□ 금융감독원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보험업법의 전면 개정, 방카슈랑스 시행 등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2003년도 하반기 보험감독 중점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추진하기로 함.

<효율적 감독체계 구축>

□ 상시적 감시체제의 확립

*보험회사 부실 예방 및 적기대응을 위한 상시감시체제 / 구조조정시스템 개선*

o 이상·부실징후 보험회사의 조기 파악 및 적기대응으로 감독의 적시성 확보

o 보험회사 경영악화 요인 규명 및 부실 사전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제도의 개발 추진

□ 적기시정조치 등 구조조정 시스템 개선

o 부실 판단을 위한 자산·부채의 평가시기 조정 등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 보험회사의 도덕적 해이 차단 및 공적자금 절감 도모

□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로의 전환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 전환*

o 보험회사의 리스크 규모 등을 측정하는 통합리스크 측정시스템의 개발 및 평가제도 도입

o 회사별·업무분야별 위험도에 따른 감독역량 집중 등 차별적 감독 시행

□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한 자율규제기반 조성

o 준법감시인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모범규준 제정

*네거티브 자산운용규제에 따른 감독방안 마련*

□ 자산운용에 대한 효율적 감독방안 마련

o 자산운용규제의 전환(네거티브체제)에 따른 감독강화 및 자산·부채 미스매칭 위험해서 방안 강구

*규제완화, 선진형 상품개발 등을 통한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

□ 보험산업 진입규제의 완화

o 방카슈랑스 전문보험회사 등 특화된 보험회사 설립이 활성화되도록 동종 보험업종 출자제한 규제 폐지 추진

□ 보험규제의 합리적 정비

o 보험경영의 자율성·창의성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정비 추진

□ 선진형 보험상품의 적극개발 유도

o 변액유니버셜보험 및 장기간병보험(LTC) 등 선진형 보험상품 개발을 활성화하여 타금융권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

□ 통신판매(TM, CM 등) 활성화 지원

o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보험가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필서명의무 완화 등 계약체결 간소화방안 강구

*공시강화, 합리적 가격 산출 등 공정경쟁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

<공정경쟁질서의 확립 및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경영공시 및 상품공시 강화로 보험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기회 보장

o 보험회사의 경영상태, 상품별 사업비,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각종 자료의 공시 강화

o 보험소비자 보호 및 경영성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회사별 『재무정보 통계조회 시스템』 구축

□ 합리적 보험가격 산출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o 보험가격경쟁 촉진을 위해 보험회사별 자체통계에 의한 실적 위험률 산출시스템 구축 유도

o 제3보험업 겸영확대에 대비 생·손보간 서로 상이한 직업별 위험 등급 분류체계 등 관련 규정 정비

□ 통신판매(TM, CM 등) 확대에 따른 보험소비자 보호대책 강구

o 공시의무 강화 및 모집시 준수사항 마련 등 통신판매관련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o 인터넷 제휴사 등을 통한 부당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조혜원 선임연구원)

## 4. 재경부, 통합금융법 2007년 시행 예정

□ 재경부는 은행·증권·보험 등 업무 영역별로 돼 있는 각종 금융법을 기능별로 통합하는 작업을 2006년까지 마무리 짓고,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o 개편방안은 재경부를 중심으로 금융연구원, 증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여하는 4개 팀을 구성해 마련하고, 서울대 금융법센터에 법리 검토와 조문화작업을 맡기기로 함.

o 금융법 체계 개편 방향은 설립·업무영역, 자산운용등 감독, 금융거래, 퇴출·구조개선등 4개 기능별로 분담해 추진할 계획임.

o 금융법 체계 개편 일정은 2004년 6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해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2004년 말까지 개선방안을 확정 법령 조문화작업을 완료하고, 법안 국회 제출과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금융통합법 작업개요>*

*금융통합법의 기본방향은 금융규제를 통합하여 기존의 업종중심규제에서 기능중심규제로의 개편*

□ 금융통합법의 기본방향은 금융규제를 통합하여 기존의 업종중심규제에서 기능중심규제로의 개편임.

□ 금융통합법은 일정한 범위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영업으로 행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융업무'로 정의하여 적용대상으로 함.

o 거래상대방을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하여 비전문가를 상대로 한 금융업무에 대해서만 엄격한 규제를 부과함.

□ 금융통합법의 구성을 보면, 총칙, 감독기구, 금융업자, 주요 금융업무종사자, 자산운용의 건전성, 금융거래규제, 발행시장, 금융거래시장과 청산결제기구, 금융실명거래 등, 금융업자의 퇴출, 감독 및 제재, 분쟁해결 등으로 이루어짐.

* 금융통합법 작업개요는 제 16회 보험 경영인 조찬회 자료를 요약한 것임.

*진입규제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하나의 인가*

□ 진입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하나의 인가가 이루어짐.

o 인가대상업무를 지정

- 예 : 주식연계증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무

o 인가대상업무의 추후 변경 내지 확장

- 예 : 은행이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o 인가기준의 통일

- 예 : 원금보전형 주식연계증권이나 원금보전형 지수옵션부예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

*건전성규제, 법에선 일반 원칙, 세부사항은 하위규정*

□ 건전성규제는 금융통합법 작업에서 가장 통합이 곤란한 부문으로서 법에는 일반 원칙만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하위규정에서 다룸.

*행위규제는 상품별로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

□ 행위규제는 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금융기관별로 규율하기보다 상품별로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됨.

o 예를 들어, 원리금의 Cash Flow가 주식의 변동성에 연계되는 상품(주식연계연금, 주식연계사채, 주식형 수익증권, 주식연계변액보험 등)은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고객에 대한 위험설명의무 등 유사한 규제가 적용됨.

*퇴출규제는 금산법을 기준으로 통합적 규율*

□ 퇴출규제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을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금융기관 퇴출 및 구조개선 관련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여 제도적 일관성을 높이고 상시적인 금융구조조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것임.

(신동현 연구원)

# 해외보험동향

## 1. 미국, 보험업계 위기와 대처*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재정비 작업이 진행중*

□ 미국에서 금융서비스부문은 지난 10년간 풍미했던 진실들, 예를 들면 주식에 대한 맹목적 신뢰, 전통적 사업순환의 소멸, 만인을 위한 모험자본, 과도한 임원보상패키지 등은 사라지고 대신 기업지배구조, 연금보장, 테러안전망 등을 통한 산업재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현재 가장 도전받는 시기에 처해 있음.

o 주식과 채권시장에서의 손실, SarbOx와 TRIA(the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of 2002)규정 이행, 임박한 연금개혁, 이중규제체제에 대한 논란 등에 따라 업계의 윤리적 청렴에 대한 필요성 증가함.

<주식시장의 하락과 신뢰성 결여>

□ 지난 2년동안, 생명보험사들은 자본손실의 실현, 연금자산의 위축, 그리고 수수료수익의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함.

o 분석가들은 생보산업이 WorldCom, Qwest, Enron, Tyco, Global Crossing and Adelphia 등의 회사채 채무불이행으로 240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예측함.

o 투자이익의 감소, 보증장치의 내재, 그리고 비효과적인 헤징 등으로 인해 고정이율상품과 변동이율상품 모두 이익폭이 좁아지고 있음.

□ 주요 생보사들은 2002년 후반 주식에 기반을 둔 상품(변액연금과 변액생명보험)에 대한 이연신계약비(the Deferred Acquisition Costs: DAC)를 상각했으며, 이는 200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함.

* 본 자료는 LOMA의 "Doing The Right Thing(2003.4)"을 요약, 정리한 것임.

*S&P, 미국생보사의 1/3, 부정적 전망 또는 신용감시상태 의견*

o 이에 대한 결과로, Standard & Poor's사는 미국 생보산업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수정했고, 또한 다수의 개별회사들의 등급을 낮춤.

- 사실상 미국 생보사의 약 1/3에 대해 신용평가가 부정적 전망이거나 부정적 전망으로 신용감시상태에 있음.

o 현재 가장 큰 도전중에 하나는 투자자들을 다시 시장으로 불러모으는 것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여러 조치가 강구되고 있음.

*SarbOx법, 대공황이후 획기적인 기업규정 정비 유발*

<기업지배구조의 획기적 개선 : Sarbanes-Oxley 법>

□ 2002년 7월 30일 부시대통령이 서명하고 2003년부터 시행된 2002년 Sarbanes-Oxley 법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기업들을 정화하기 위해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기업규정의 정비를 유발한 획기적인 법임.

| Sarbanes-Oxley 법의 주요 내용 |
|---|
| · 상장기업회계사의 감독을 위해 새로운 감독위원회의 설립 |
| · 회계사기에 대한 벌과금을 4배로 증액 |
| · 내부자대출, 즉 임원에 대한 기업의 대출의 금지. |
| · 947개 기업(75개는 보험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임원확인 요구 |
| · 새로운 증권사기 범죄항목 설정 |
| · 기업공시의 확대 |
| · 투자은행으로부터 투자분석가의 분리 |

o 보험산업은 특히 내부자대출규정이 Split dollar 보험상품*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해약환급금이 있는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료와 보험금을 고용주와 종업원이 분할하는 특약이 있는 보험

- 특히 회사의 임원에 대한 대출 금지에 많은 임원들이 특권으로 얻고 있는 Split-dollar 생명보험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우려함.

o 개혁주의자들은 SarbOx가 특히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파생상품의 이용, 그리고 IPO(the Initial Public Offerings)의 재배치에 대해 충분치 않다고 말하고 있음.

*SarbOx 요건 충족을 위한 관련 전문기관의 확산*

o 미국기업들은 SarbOx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며 이를 도울 업체들, 예를 들면 법률회사, 컨설팅회사, M&A 전문가들은 많은 상태임.

o 한편, 많은 주요 기업들이 이러한 요건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장된 미국기업의 기업지배관행을 평가할 새로운 등급평가기관이 확산되었음. 기업지배구조평가기관은 Standard & Poor'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그리고 GovernanceMetrics, 등이 있음.

o Citigroup의 회장이자 CEO인 Sanford I. Weill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중에게 3가지 가치, 즉 청렴성, 독립성, 수탁책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개선에서 지도자급 역할을 수행함.

<연금개혁 : 신연금제도>

□ Enron 사태 등 일련의 기업실패로 인해 종업원 연금자산이 피해를 봄에 따라 일련이 연금개혁이 촉발됨.

o Enron의 종업원들은 회사가 이전의 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보고한 직후 Enron 주가가 폭락했을 때 401(k) 저축에서 10억 달러 가량 손해를 보았음.

- Enron사는 종업원 급료 일부를 오직 자사의 주식에 투자하게 하고 판매를 금지시켜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함.

o 지난 20년에 걸쳐 종업원들은 점진적으로 평생 연금을 보장하는 소위 확정급부형 제도를 401(k)와 같은 확정갹출형 제도로 대체해 왔으며, 전문가대신 종업원 자신들이 관리하는 형태였음.

- 2000년 말 현재 기업연금(3조 6천억 달러)에 가입되어 있는 7천만 미 근로자들 중에 4천 2백만명(1조 8천억 달러)가 401(k)에 가입돼 있었음.

o 최근 다수의 기업실패에 따라 미의회는 다양한 기업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연금제도를 바로 잡으려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음.

연금관련 법안

| | |
|---|---|
| · 퇴직보장자문법(H.R. 2269) | 하원의원 John Boehner(R-Ohio) 등이 2001년 11월에 제안 |
| · 종업원 퇴직 저축 법안(H.R. 3669) | 2002년 3월 House Ways & Means 위원회에서 통과 |
| · 연금보장법(H.R. 3762) | 연금개혁을 위한 부시대통령의 계획으로 2002 년 4월 하원에서 통과 |
| · 국민종업원저축과 신탁주식 보장법(S. 1971) | 별칭 NESTEG. 2002년 7월 금융서비에 관한 상원위원회에서 통과 |
| · 연금보장과 확대법(S. 9) | 상원의원 Tom Daschle (D-S.D.)에 의해 2003년 1월에 제출 |

□ Enron과 같은 폭락 상황에서 401(k)에 대한 보다 대량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의 제1순위는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연금보장제도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o 근로자들이 전문적인 투자자문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01(k) 포트폴리오를 분산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주는 것이 퇴직소득보장이란 의제에서 중요한 요소임.

*구상중인 신연금제도의 보험산업에 영향에 주목*

□ 퇴직소득문제에 있어 또 다른 문제는 3가지 새로운 저축계정에 대한 새로운 백악관안이며 이는 전체 보험산업에 충격적인 이슈를 제기함.

o 현재 미국인은 세 가지 퇴직소득원인 연금, 사회보장, 그리고 개인저축에 의지하고 있음.

- 부시대통령은 이것들을 종신저축계정, 퇴직저축계정, 그리고 종업원 퇴직저축계정으로 대체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2004년 예산에 이러한 새로운 계정을 고려하고 있음.

**구상중인 신연금제도**

· 종신저축계정(LSAs)

소득에 상관없이 납세자는 이 계정에 연 7,500달러까지 갹출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 면제임. 또한 세금상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어떤 목적에서든지 인출할 수 있음.

· 퇴직저축계정(RSAs)

소득에 상관없이 납세자는 이 계정에 연 7,500달러까지 갹출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 면제임. 그리고 58세 이후 인출할 수 있음.

· 고용주퇴직저축계정(RRSAs)

기존의 401(k)와 같은 확정갹출형 제도를 대체할 것으로 납세자는 2005년까지 연간 12,000달러, 이후 15,000달러까지 갹출할 수 있음. 50세이상 납세자는 2005년까지 연간 2,000달러, 이후 5,000달러의 만회추가갹출을 할 수 있음.

· 종신저축계정과 퇴직저축계정은 물가수준에 지수화될 것임. 납세자들은 동시에 세 가지 모든 계정에 갹출할 수 있음. 또한 기존의 IRAs를 RSAs로 전환할 수 있음.

o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계정들이 보험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퇴직소득제도를 제시하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납세자들로 하여금 연금상품 구입을 꺼리게 만들 우려가 있음.

<테러재보험 : 연방재보험제도정비>

□ Sarbanes-Oxley법과 연금개혁외에 보험사들이 따라야만 하는 법안 중에 다른 하나는 부시 대통령이 2002년 11월 26일에 서명한 2002 테러위험보험법(TRIA)으로 동 법은 연방정부가 보험회사와 미래 테러공격으로부터의 손실위험을 공유하기 위해 제정함.

o 테러재보험은 단지 손해보험 문제가 아니며 테러리스트들이 다시 공격을 한다면 누가 보상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체 금융서비스분야에 영향을 미쳤음.

o 예를 들어 지난해 후반 무디스는 테러리즘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45억달러 상당의 기업 MBS의 등급을 하락시켰으며 이는 이미 과민한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생명보험사들의 투자포트폴리오를 위협했음.

□ 새로이 제정된 테러위험보험법(TRIA)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2년 11월부터 2004년 말까지 유효한 3년 안전기금(2005년 말까지 연장될 수 있음)
· 연방기금이 손해배상액의 90%를 첫째 연도 100억달러, 둘째 연도에는 125억달러, 셋째 연도 150억달러 한도로 지급함.
· 연간 총공동 프로그램 한도는 1,000억 달러임.
· 보상되지 않은 손실이 보험시장 총유보액보다 적으면 보험회사가 기금에 지불해야 함.
· 보험회사는 각사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첫째 연도는 납입보험료의 7%, 둘째 연도는 10%, 셋째 연도는 15% 한도로 공제액을 지불해야 함.
· 연방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권리를 가짐.

o 미국내 위험에 대해 원수보험을 인수하는 모든 보험사들은 손해보험을 대상으로 테러 손실시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이 요구됨(재보험사 제외).

o 마지막으로 TRIA는 다른 보험분야로 규정을 확장할 수 있게 자동확장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예를 들어 8월말까지 지명된 산업전문가는 연방제도에 그러한 보상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생명보험과 기타보험에 대한 테러의 영향을 조사해야만 함.

o 현재, 미국정부는 보험사들과 보험계약자들이 새로운 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침을 개발하고 있음.

<선택적 연방법적용>

□ 연방 또는 주법 적용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

o 기존 주정부에 기반을 둔 보험산업 규제시스템에 법적용의 선택적 특권을 부과한다면 본질적으로 은행들이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이중적 규제시스템이 될 것임.

o 여기에는 세 가지 대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2001년 11월의 ACLI 초안, 2001년 12월 상원의원 Charles Schumer(D-N.Y.)이 지지하는 법안, 그리고 하원의원 John LaFalce(D-N.Y) 2002년 2월에 지지했던 법안임.

o 일반적으로 대형 보험사들과 은행들은 여러 이유로 선택적 연방법제를 선호함.

-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많은 상품들이 투자상품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사로 하여금 은행과 증권회사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만들었음.

- 이러한 여타 경쟁금융기관들은 절대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주의 다른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 없이 전국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많은 대형 회사들은 선택적 연방법제가 국제무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믿고 있음.

*찬성론자들, 상품보고의 합리화 기대*

□ 미국 은행보험협회(ABIA)와 미국 생명보험사협회(ACLI)는 연방 보험법제 선택권을 지지함.

o 생명보험 산업은 국가경제의 점차적으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사들은 은행과 증권산업과 함께 중요한 금융서비스 제공자임.

o 그리고, 상품과 국가의 재무적 건전성에 대한 중요성 측면에서 셋 사이의 현저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보험이슈를 처리할 연방 체제가 없었음.

o 선택적 연방법 적용이 상품 보고과정을 합리화해 결과적으로 보험사로 하여금 점차 치열해지고 국제화되는 경제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비용을 절약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상품선택권을 줄 것이라고 주장함.

*반대론자들, 규제적 차익거래를 조장하고 각주의 보험료세수익 감소를 가져올 것을 우려*

□ 전국보험감독관협회(NAIC), 미보험사연합(AAI), 전국상호보험사협회(NAMIC), 미국 독립보험설계사와 중개인(IIABA), 그리고 전국독립보험사협회(NAII) 등은 연방보험법제 선택권을 반대함.

o 연방법제가 규제적 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를 조장하고 주정부의 보험료세수익을 감소시키고 각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우려함.

o NAIC에 따르면 주정부 보험규제당국은 금융서비스산업이 변화하고 있고 과거 2년 동안 이 분야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시장현실에 반응하기 위한 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인식함.

- 결과적으로 NAIC는 단일의 표준과 단일의 상품보고지침에 규정할 수 있는 전국적 주정부 보험규제체계를 만들기 위해 2002년 3월 주정부간 협정 실무단체를 설립함.

- 이 단체가 제안하는 주정부간 협정에는 생명보험, 연금, 장애소득과 장기간병보험상품을 포함할 것임.

o 주정부 사이의 협력을 통해, 제안된 주정부간 보험상품 규제 협정은 다음과 같을 것임.

· 개인과 단체연금, 생명보험, 장애소득과 장기간병보험상품 소비자의 이해를 촉진하고 보호
· 협정 보험상품에 대한 단일의 표준개발
· 협정 보험상품에 대한 즉시검사와 협정가입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보험사가 제출하는 광고를 접수하거나 제공하는 정보교환기관을 설립
· 상품보고와 단일표준을 충족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적 승인부여
· 단일 표준의 설정과 협정보험상품의 검사에 관한 주정부 보험당국사이의 규제관련 정보와 전문지식 협조의 개선
· 주정부간 보험상품규제위원회의 창설

(김진억 선임연구원)

## 2. 북미, 건강보험 계약심사기법의 신경향*

□ 뉴밀레니엄은 보험산업에 큰 기회와 유례없는 도전을 가져왔으며, 북미 보험산업에서 부보성의 평가와 신계약처리업무에서 일고 있는 변화에 대해 기회와 도전측면을 살펴봄.

<몇 가지 도전>

*유통채널,과 기술의 발전등에 따라 계약심사의 변혁이 일어남*

□ 인터넷, 방카슈랑스, 우편(DM), 텔레마케팅, 현장판매(worksale)와 잠재고객에 접근하기 위한 기타의 대안적 유통방식 등 신유통방식은 생명/ 건강보험상품 판매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임.

o 그러나 대부분 새로운 유통채널은 보다 빠르고 보다 고객 친화적이며 저렴한 계약심사기법들을 필요로 하여 필수적인 기법들이 지난 20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음.

□ 신기술로 인해 위험관리 의사결정을 주기적인 것에서 본질적으로 실시간 업무처리로 전환할 수 있게 됨.

o 보험사들은 조심스럽게 신기술을 받아들여 전체 신계약처리과정을 재검토할 것임.

o 일시적 해결책을 꾀한다면 이는 기술이 가져올 기회를 극대화할 수 없을 것임. 더욱이 그러한 임시적 접근은 역설적으로 기존의 새로운 사업기반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것임.

□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에 내재된 기회가 방대하지만 이러한 기회들을 실현시키는 데는 전통적 마케팅, 판매, 위험관리와 신계약처리기법에 많은 변화를 요구함.

o 또한 새로운 상품(e.g., 북미시장의 치명적 질병보험)에 의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데도 많은 변화가 요구됨. 변화를 통해 과거의 경험(e.g., 장기간병보험도입시 부딪쳤던 장애)으로

* 본 자료는 LOMA의 "Metamorphosis(2003.3)"을 요약, 정리한 것임.

유사한 함정을 빗겨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치명적 질병보험을 중요한 상품으로 자리잡게 할 수 있을 것임.

□ 유전자검사와 유전자 치료의 등장에 의해 사생활보호와 비밀유지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새로운 이슈를 종식시킬 부보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이 요구됨.

o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기본적 위험선택 정보자원으로서 현재 의사의 입회하에 얻어지는 기록에 과중하게 의존하는 방식을 줄일 것임.

□ 신계약비가 새로운 현안으로 부각됨.

o 일상경비와 숨겨진 비용 모두 전통적 위험선택과 신계약처리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이러한 계약심사와 신계약처리에 중요한 요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현재 당면과제임.

o 진보적 보험사들은 신계약을 평가하고 처리하는데 새로운 기법을 수용할 것임.

<변화의 원천>

□ 흡연자/ 비흡연자와 "우량체 위험"

*흡연여부에 따른 위험률구분으로 가격결정 구분이 시작됨*

o 1970년대 후반에 소수의 보험사들은 흡연 청약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보험가격결정을 구분하기 위한 계리적, 마케팅적 잠재성에 대해 주의 깊게 평가를 시작했음.

o 이러한 관례가 일반적으로 넓게 받아들여짐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흡연자"의 정의를 모든 유형의 담배제품(씹는담배, 코담배 등 포함)을 포함하기 위해 과감히 확대했음.

o 금연을 위한 니코틴을 기초로 한 치료요법이 나오자 보험사들은 현재 사용되는 모든 비담배형 니코틴함유 제품을 포함하기 위해 정의를 개정하였고 이러한 종류의 니코틴제품수는 극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피부반창고, 껌, 코와 구강 스프레이 그

리고 드롭 등을 포함함.

*우량체구분에 따른 보험가격설정은 고객에게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o 1990년대에 "우량체 위험"은 가망보험고객에게도 강력한 건강 관련 유인을 제공함.

- 즉, 만약 고객이 개선가능하고 측정가능한 사망률/ 폐질율 위험요소(체중, 혈압, 콜레스테롤수치, 운전기록 등)에 관심을 갖는다면 고객의 노력은 일정 유형의 보험에 대해 현저하게 낮은 보험료로 보상받을 것임.

o 우량체 위험에 대한 실험은 곧 "초우량", "우량 흡연자" 등으로 확대되었음.

o 물론 이 모든 것은 보험산업연구와 임상의학문헌으로부터 도출된 충분한 증거에 기초하며 이러한 증거는 보다 유리한 위험요소를 갖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보다 장수하고 질병상태 기간이 짧으며 높은 삶의 질을 갖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줌.

o 20세기말까지 "흡연자/ 비흡연자" 가격설정은 이미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6개 대륙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얻고 있음.

*전세계적으로 우량체위험에 대한 관심 증대*

o 전세계적으로 "우량체 위험" 개념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예들 들어, 아시아 보험사들은 "우량체 위험"이란 개념이 일본, 중국 또는 인도의 적극적인 고객에게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호소력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혈액검사법의 확산

o 1980년대 AIDS 전염병에 대한 우려로 보험사들은 혈액검사를 생명/ 건강보험에 대한 필요요건으로 크게 확장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혈액 일람"이라고 알려진 다면적 혈액검사법을 선택했음.

o 이 검사법은 HIV-1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검사뿐만 아니라 혈액지질(콜레스테롤, HDL-C 등), 고혈당(당뇨병), 간기능, 신장

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함.

o 보험사들은 혈액검사의 예방적 가치를 검토한 이후 보험사들은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발견했고 일부 검사 항목(콜레스테롤, 혈당)은 "우량체 위험"의 구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었음.

*혈액검사의 일반화에 따라 새로운 검사기법 개발됨*

o 그 결과 혈액검사는 사실상 모든 보험회사들의 위험선택모델이이 됐으며, 특히 낮은 가입금액의 청약시 필수항목이 되었음.

o 보험사가 보험인수시 혈액검사결과를 이용하는데 익숙해짐에 따라 보험산업에 종사하는 혈액검사기관들은 "즉석검사"라고 알려진 검사법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음. 본사 계약심사관들은 혈액분석표를 검사할 때, 특정한 비정상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검사를 주문함.

o 이러한 현상은 C형 간염바이러스의 항체검사를 위해 ALT(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로 알려진 간관련 혈액효소수치가 높은 피보험자에 대한 추가검사하는 것으로 발전함.

o 생명보험가입을 위해 일상적 혈액검사를 받고 높은 ALT수치를 갖는 사람들의 상당 비율이 만성적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었고, 만성적 C형 간염은 간암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간질환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만성적 감염은 부보성에 대해 관련을 가짐.

*혈액검사의 단점을 보완할 대체검사법 개발*

o 즉석검사의 주목받는 또 다른 사례는 고민감 C형 반응단백질(hs-CRP)로 알려진 검사법인데 심장전문의들이 심장마비의 위험성과 관련되어져있다고 생각되는 염증의 미묘한 정도를 감지함.

o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혈액검사는 AIDS전염병에 관해서라면 분명한 필수항목이었음. 그러나 혈액검사와 즉석검사의 이용에는 이면이 있음.

o 첫째, 많은 사람들이 주사의 이용과 관련하여 혈액검사를 명확하게 고객에게 비우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o 둘째, 혈액검사에는 노련한 의료인(의사, 간호사 또는 혈액검사인)의 서비스가 필요하며 또한 혈액검사결과를 요구하는 모든 생명/건강보험에는 혈액샘플채취를 위해 예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보다 빠른 형식의 계약심사의 개발을 둔화시켰음.

o 마지막으로, 혈액검사는 20세기 후반에 우세해진 대안적인 체액채집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임.

o 그러한 "대체적 체액"중에 하나는 소변으로 소변검사는 한때 AIDS전염병이 검사되기 오래 전 생명보험에서 주요 실험실 검사법이었음.

o 1990년대까지, 실험실검사는 거의 완전히 회사내 검사를 대체하고 소변검사의 넓은 이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이는 미국 FDA가 HIV-1 검사와 소변표본에 대한 확인검사를 승인하면서 실무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음.

*구강액검사법은 획기적인 검사법으로 주목받고 있음*

o 보다 새로운 검사법 즉, 구강액(oral fluid)검사법이 승인되어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검사법은 현재 생명/건강보험산업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 계약심사 조사보고

o 수년간 대부분 보험사들은 위험평가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전문적인 외부기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존해왔음.

- 일부 회사들은 1980년대 초까지 유사한 기초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대안적 수단으로서 전화를 실험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보험청약서상의 위험관련 질문을 반복하는 전화인터뷰 방식이 생겼음.

o 지난 10년 동안 "계약심사"라고 잘 알려진 새로운 기법을 위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음. 지금 생명/건강보험 위험관리에서 위험정보 취득과 이용과정에 대한 이러한 급진적 방식은 비용과 불편을 제거하고 위험평가와 신계약 업무처리과정을

필연적으로 바꾸는 토대를 마련했음.

*위험관리자로 계약심사관 역할 변화*

□ 위험관리자로의 계약심사관

o 20세기 대부분에 걸쳐 계약심사부서는 "판매저지부서"로 인식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계약심사관들은 잠재적 수익원에 대해 소심하게 검사하면서 회사의 수익흐름에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임.

o 일부에서는 계약심사관들이 "상아탑"에 갇혀 있어 수익을 제한시키는 완고한 판매결정을 이끄는 무감각한 계리사와 의사들이 작성한 불가사의한 규칙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함.

o 반면 21세기 계약심사관은 "위험관리자"로 불릴 수 있는 위치로 발전하고 있으며, 여전히 계약심사관은 위험평가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지만 글자 그대로 판매개시부터 계약인도의 조성까지 신계약의 흐름을 관리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o 대신 이전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는 평범한 일을 하도록 요구되었던 보험설계사는 보다 많이 보험판매에 전념할 것임.

o 전체 신계약과정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위험관리자로 변한 계약심사관은 훨씬 빠르고 비용이 덜 드는 승인과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정보자원과 과정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o 여기서 계약심사라고 불리는 기법이 위력을 발휘하게 됨.

*구강액검사법은 여러 가지 장점으로 빠르게 성장*

□ 구강액(oral fluid) 검사법

o 21세기 위험관리기법으로서 주목받는 계약심사도구중에 하나는 구강액 검사법으로 이는 때때로 타액검사법이라고 잘못 분류되는데, 현재 구강액은 세 가지 주요한 위험요인(담배/ 니코틴 이용, 코카인섭취와 HIV-1바이러스 감염)을 선별하는데 이용할 수 있음.

o 혈액검사에 비해 구강액검사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보험판매 시점에서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인이 쉽게 구강액을 채집할 수 있다는데 있음.

o 미국에서 계약심사 목적으로 채집된 구강액샘플의 95%이상이 사실상 보험설계사에 의해서 채집된 것으로 추측되며 이 검사법의 이용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멕시코에서는 모든 구강액 표본이 보험설계사에 의해 채집된다고 함.

o 북미 이외 지역에서는 구강액검사법이 성장하는 데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됨.

o 그 이유로 첫째, 북미이외 지역에서는 보험설계사와 중개인으로 하여금 구강액표본을 채집하도록 요구하는데 어느 정도의 불편함/ 저항이 있을 것임.

o 구강액검사가 널리 이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위험관리인프라, 즉 구강액채취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준의료적 서비스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함.

o 둘째, 구강액검사법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HIV-1항체검사와 확정을 하는데 있어 혈액 또는 소변에 대한 대안으로 구강액 검사법의 신뢰성을 보다 더 솔직히 평가해야 함.

o 단백질(hs-CRP))을 추가함으로써 강화될 것임.

□ 약제목록(Pharmaceutical Profiles) 수집

*처방전정보는 전국적 네트워크의 발달로 새로운 정보원으로 이용됨*

o 처방전정보는 원고가 잘 준비된 전화인터뷰를 통해 매우 효율적으로 수집될 수 있음.

o 또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약국에서 정보를 수집하므로 가망보험소비자의 처방전이력을 보험사에 알려주는 새로운 정보회사들이 있음.

o 계약심사 목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정보자원을 이용하는 보험사들은 보험청약자의 승인을 요하는 정보이용항목으로 채택하고 있음.

o 유리한 처방전이력이 확인될 경우, 이는 고가의 다른 방법보다 훨씬 빠르게 청약승인을 할 수 있게 됨.

o 또한 처방전이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상품의 설계 특히, 비전통적 유통경로로 판매되는 상품설계를 원활하게 해줌.

<몇 가지 이슈들>

□ 건강습관을 이용한 계약심사

o 보험사들이 개발한 "우량체 위험"에 더해서 다른 요소가 계약심사기법, 즉 "건강습관을 이용한 계약심사"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됨.

o 연구에 의하면 중년 남성 혹은 폐경기 여성이 심장마비위험을 줄일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할 때, 이 자발적 행동이 무수히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고 함. 또한 육체적 여가 활동, 균형잡힌 식사, 음주 절제, 애완동물기르기 등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 밝혀짐.

o 또한 가망피보험자가 약 복용을 잘 하고, 질병 추적을 위한 유방암검사, 혈액검사 등 정기적 검사를 받고 의사의 조언을 잘 따르는 개인은 보다 나은 위험을 가짐.

o 이러한 종류의 혁신적 건강습관 계약심사는 과거에 단순히 의료적 이력이 보험설계사에 의해 기록된다는 이유로 실무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음.

o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정보가 현재 전화로 수집되고 있어 몇 년 후 공격적 보험사들은 이러한 정보를 위험관리에 이용할 것임.

□ 아웃소싱

o 아웃소싱 역시 생명/건강 위험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아웃소싱 친화적 기술의 지속적 발전으로 아웃소싱이 가시화 될 것임.

o 전화인터뷰와 의료기록의 수집에서 비용효율적으로 광범위한 위험관리 노하우를 제공하는 회사에 실제 계약심사와 계약처리에 대한 책임을 이전시키는 것까지 영향은 광범위할 것임.

(김진억 선임연구원)

### 3. 미국, 장기간병보험 실태*

<장기간병보험(LTCI : Long Term Care Insurance)의 역사>

*미국 장기간병보험 시장은 1960년대 이후 지속*

□ 장기간병서비스에 대한 보험은 1965년에 CNA사에 의해 최초로 제공되었던 개인 요양 및 회복보험(Individual Convalescent Care and Rehabilitation Policy)에서부터 시작됨.

o 1986년 The Travelers사는 최초로 단체간병보험 상품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요양을 담보하는 전통적인 보험상품이 되었으며 병원 간병에 이어 가정간호에도 적용됨.

□ 과거 백년간 장기간병시장은 정체되지 않았으며, 보험산업은 장기간병보험 상품의 발전으로 장기간병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왔음.

o 전통적인 독립형 장기간병보험 상품은 요양시설 지원, 호스피스간병, 가정간병 서비스 등을 담보함.

<장기간병보험 판매 현황>

*과거 5년간 장기간병보험 연평균 6% 성장*

□ 2002년 장기간병보험 산업은 신규가입건수 기준 전년도 8% 감소세에서 반등하여 4% 성장하였으며, 연간 수입보험료는 5% 증가함(1998 2002년간 평균 6% 성장).

o 31개 장기간병보험 사업자의 절반가량이 5% 이상의 수입보험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4개 회사에서는 20% 이상 성장하였음.

* A.M.Best, "Spreading the Word", Best's Review, 2003.4, LIMRA, "LTC Insurance and Medicare Supplement", 2003.의 자료를 번역·정리한 것임.

*2002년 장기간병보험 5% 성장, 대부분 세제적격형 상품 판매*

□ 2002년 장기간병보험 수입보험료의 93%는 세제적격형 상품으로 구성되어 전년 대비 9%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세제비적격 상품의 보험료 규모는 32% 감소하였음.

o 1996년 HIPAA(the Health Insurance Pro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통과 이후, 많은 소비자들이 세제 적격형 상품을 선호하고 있음.

**미국 장기간병보험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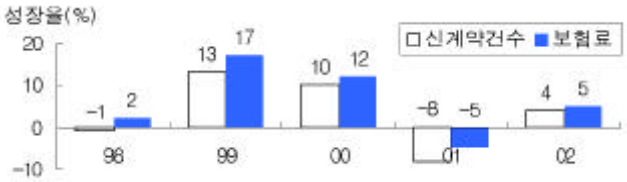


**2002년 장기간병보험 상품별 판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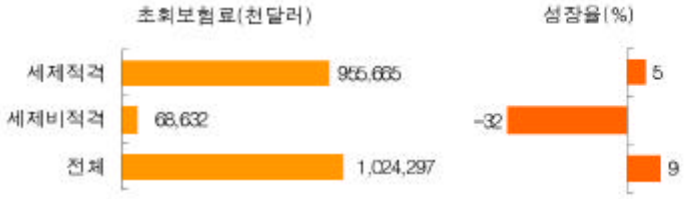


□ 2002년말 장기간병보험의 유효계약건수는 약 390만건에 이르고 있으며, 2001년말보다 10% 가량 증가한 수준임.

o 1998 2002년간 유효계약 보험료 규모는 평균 18% 가량 증가하였으며, 2002년의 경우 동 기간동안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

미국 장기간병보험 유효계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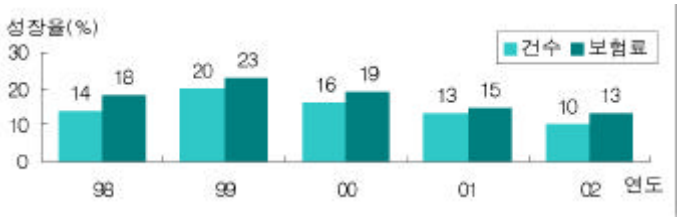


2002년 장기간병보험 판매 및 유효계약 현황

| 구 분 | 계약건수 | 보험료(천달러) |
|---|---|---|
| 판매현황(전체) | 581,625 | 1,024,297 |
| 세제적격 | 536,640 | 955,665 |
| 세제비적격 | 44,985 | 68,632 |
| 유효계약현황 | 3,855,584 | 5,992,785 |
| 세제적격 | 2,645,941 | 4,091,404 |
| 세제비적격 | 604,929 | 940,775 |

*상위 10개사 M/S 80%, 상위 5개사 56% 기록*

□ 2002년 상위 10개 장기간병보험 사업자는 전체 보험료의 80%를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위 5개사 점유율은 56%임.

2002년 장기간병보험 상위 10개사

| 초회보험료 기준 | 총보험료 기준 |
|---|---|
| Aegon USA | Aegon USA |
| Allianz LTC | Bankers Life and Casualty |
| Bankers Life and Casualty | CNA Insurance |
| CNA Insurance | Conseco Companies |
| GE Financial Insurance | GE Financial Insurance |
| John Hancock | IDS Life |
| Lincoln Benefit Life | John Hancock |
| State Farm | Penn Treaty |
| Thrivent Fianacial | Thrivent Fianacial |
| UnumProvident | UnumProvident |
| 시장점유율 76% | 시장점유율 80% |

<장기간병보험 상품 구조>

*가정간병담보, 요양시설지원을 포함하는 종합적 형태의 상품 선호*

□ 최근의 Centrelink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의 독립보험 중개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절반 이상의 보험회사에서 가정간병에 대한 담보 제공 및 요양시설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o 실제로 1990년대 이후 개인 및 단체보험 시장 모두에 있어서 가정간병보호 담보와 요양시설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형태의 상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음.

장기간병보험 상품 구조

| 구분 | 개인보험 | 단체보험 |
|---|---|---|
| 보험증권 형태 | | |
| 요양시설 지원만 제공 | 14% | 3% |
| 가정간병 담보만 제공 | 9% | - |
| 가정간병 담보 및 요양시설 지원 모두 제공 | 77% | 97% |
| 1일 평균 지급보험금 | | |
| 요양시설 지원만 제공 | $109 | $124 |
| 가정간병 담보만 제공 | $106 | $79 |
| 평균 보험금 지급기간 | 5.5년 | 6.3년 |
| 평균 면책기간(average elimination period) | 65일 | 63일 |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

*장기간병보험 구입의사, 미미한 수준*

□ "Long Term Care Partners Survey of American Parents and Adult Children"의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23% 만이 그들의 부모에게 장기간병보험을 구입할 것을 조언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모의 12%만이 본인 스스로 동 보험을 구입할 것이라고 조사되었음.

o 동 조사는 Zogby International, Utica, N.Y.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적어도 한명 이상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34세 65세 성인 603명을 대상으로 함.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 34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의 64%는 간병보호가 필요할 경우, 그들의 자녀가 이사오기를 희망하지 않음.
- 성인의 44%는 그들의 부모가 간병보호가 필요할 경우 이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부모의 32%는 장기간병 보호가 필요할 경우, 그들의 자녀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성인자녀의 44%는 장기간병 보호를 위해 부모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성인자녀의 23%는 그들의 부모에게 장기간병보험을 구입할 것을 조언하고 싶다고 생각함.
- 부모의 12%는 스스로 장기간병보험을 구입하고자 함.

*장기간병보험 필요성 확산 추세, 조기가입 필요성 인식해야*

□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기간병보호가 요구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구성원에게도 장기간병보험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임.

o 즉, 고연령층 및 베이비붐 세대(향후 고연령층)가 장기간병보험의 대상자로서, 보험가입 여부가 그들의 가족구성원에게 긍정적이거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o 이에 따라, 고연령층 및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까지도 장기간병보험 상품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임.

□ 또한, 간병서비스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일생에 걸친 저축액이 의료비용으로 빠르게 소진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o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장기간병보험의 구입이 필수적이며, 50 70세에는 보험료가 거의 3배에 육박하게 됨에 따라, 최대한 조기에 보험 가입함이 필수적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병보험 가입자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65세 미만의 가입자 점유율이 3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장기간병보험 가입자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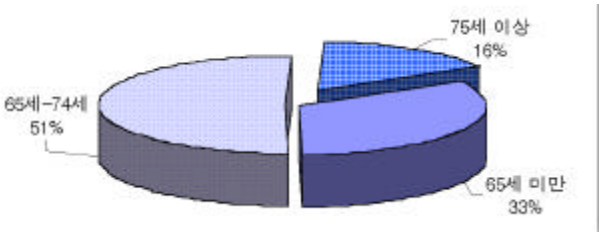


<향후 장기간병보험 전망>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사망시기 근접으로 향후 장기간병보험 시장 활성화 전망*

□ 장기간병보험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사망이 가까워짐에 따라 판매가 유리해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부모에 대한 장기간병서비스 및 간병비용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

o 2050년까지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7,9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660만명에 달할 것임.

o 요양시설 이용 및 가정간병비용의 상승으로 장기간병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o 현재 평균 요양시설 사용료는 연간 4만 달러, 대도시 지역의 경우 10만 달러임.

o 70세 이상 인구의 40%가 장기간병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반면, 7%만이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GE Long Term Care Insurance 조사).

*장기간병보험 시장 재개편 예상*

□ 한편, 향후 장기간병보험 시장의 기업 합병 및 퇴출 등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o 최근 LIMRA의 60개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몇몇 기업들이 장기간병보험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o 응답자들은 상위 5개 장기간병보험 사업자가 향후 5년 이내에 전체 초회보험료의 65%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보다 8%p 증가한 수준임.

o 또한, 노령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확대되면서 장기간병보험 시장으로 새로운 시장진입자들을 유인하고 있음.

<장기간병보험의 판매제고 방안>

*교육훈련 체계 시급*

□ 대리점/ 브로커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체계 마련

o 장기간병보호 및 이를 담보하는 보험의 필요성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대리점/ 브로커들도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있음.

o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개인/ 단체 건강보험 가입에 의해 장기간병보호가 담보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음.

- 의료보험을 통해서는 장기간병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이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o 이에 따라, 대리점/ 브로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체계가 필요하며,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마케팅 및 판매 조언 등도 제공하여야 함.

o 보험회사는 장기간병보험 전문가 및 직원을 충원하고, 이와 더불어 공인회계사 및 금융서비스컨설팅 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한 장기간병 교육훈련 체계 마련이 요구됨.

*마케팅 전략 수립*

□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행

o 장기간병보험의 필요성을 제기시키고, 상품 구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

o 예를 들어, 보험/금융상품 구입에 대한 결정은 대부분 1명의 가족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동시에 제시함이 효과적임.

o 또한, 장기간병보험의 가입대상인 고연령층 및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홍보세미나 개최시 각 연령층에 적절한 시간, 장소 등을 물색하여야 함.

o 이 외에도 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내 마케팅 활동 등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정보기반 확충 필요*

□ 다양한 정보의 수집

o 장기간병보험 교육훈련 체계 마련,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위해서는 동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 획득이 수반되어야 함.

o 즉, 대리점/브로커는 장기간병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다수의 보험사업자로부터의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함.

o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 및 거래에 대한 기사, 장기간병보험 책자, 세미나, 광고 등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음.

(조혜원 선임연구원)

## 4. 미국,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보험금 과다청구 및 허위보험금 청구에 대한 수용 가능성 시사*

□ 미국 컨설팅회사 Accentur Ltd.에 의해 실시된 설문조사(2002년)는 무작위로 추출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 성향을 조사하였음.

□ 동 조사에 따르면, 4명중 1명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o 응답자의 8% 가량은 보험금 과다청구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용납할 수 있다", 16%는 "용납할 수 있다"고 응답함.

"보험금 과다청구 행위를 용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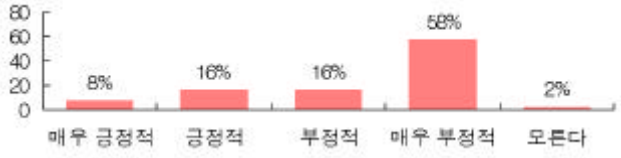


o 실제로 발생한 신체상해/ 재산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1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주로 자동차보험(47%), 재물/ 가정종합보험(39%)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10명중 1명(11%)은 발생하지 않은 재산손해 또는 신체상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다고 동의하였음.

"허위 보험금 청구 행위를 용납할 수 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 보험사기는 무죄라고 생각*

□ 또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주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9%는 "보험사기는 무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나타났으며, "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30%로 조사됨.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이유"**

□ 한편, 응답자의 40%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를 고발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83%는 보험회사가 사기와 연관된 손해보험 클레임을 식별 또는 예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

**"보험사기범을 고발할 의향이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 | |
|---|---|
| 1. 손해보험(재산,자동차,가정종합,근재) 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이 있습니까? | |
| a) 있다 | 29% |
| b) 없다 | 70% |
| c) 모른다 | 1% |
| 2. 어떤 방법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셨습니까? | |
| a) 콜센터 또는 전화 | 46% |
| b) 인터넷 | 0.3% |
| c) 우편 | 2% |
| d) 대리점 또는 직원 | 44% |
| e) 기타 | 7% |

3. 가장 최근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어떤 청구과정을 통하였습니까(복수응답)?

| | |
|---|---|
| a) 손실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진술 및 비용청구 | 32% |
| b) 신체상해에 대한 진술 및 비용청구 | 13% |
| c) 손해사정인을 통한 청구 | 51% |
| d) 모른다 | 7% |

4. 경제가 침체되었을 경우,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a) 매우 그렇다 | 11% |
| b) 그렇다 | 19% |
| c) 약간 그렇다 | 36% |
| d) 그렇지 않다 | 21% |
| e) 매우 그렇지 않다 | 5% |
| f) 모른다/무응답 | 8% |

5. 실제로 발생한 신체상해/재산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 | |
|---|---|
| a) 예 | 11% |
| b) 아니오 | 88% |
| c) 모른다 | 1% |

6. 알고 있는 경우, 어느 보험종목에서 발생하였습니까?

| | |
|---|---|
| a) 자동차보험 | 47% |
| b) 재물/가정종합보험 | 39% |
| c) 근재보험 | 14% |
| d) 기타 | 2% |
| e) 모른다 | 14% |

7.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a) 매우 중요하다 | 39% |
| b) 중요하다 | 41% |
| c) 어느정도 중요하다 | 17% |
| d) 중요하지 않다 | 1% |

8. 귀하께서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과다청구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 | |
|---|---|
| a) 전적으로 용납할 수 있다 | 8% |
| b) 어느정도 용납할 수 있다 | 16% |
| c) 용납할 수 없다 | 58% |
| d)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58% |
| e) 모른다 | 2% |

9. 귀하께서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재산손해나 신체상해에 대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 | |
|---|---|
| a) 전적으로 용납할 수 있다 | 4% |
| b) 어느정도 용납할 수 있다 | 7% |
| c) 용납할 수 없다 | 8% |
| d)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79% |
| e) 모른다 | 2% |

10.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주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
|---|---|
| a) 돈이 필요해서 | 30% |
| b) 보험사기는 무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49% |
| c) 공제금 부담을 충당하기 위하여 | 20% |
| d)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였기 때문에 | 24% |
| e) 가족, 친구, 보험대리점, 의사, 변호사의 영향으로 | 11% |
| f) 기타 | 4% |
| g) 모른다/무응답 | 6% |

11.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를 알고 있다면, 고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
|---|---|
| a) 매우 그렇다 | 13% |
| b) 그렇다 | 19% |
| c) 어느정도 그렇다 | 24% |
| d) 그렇지 않다 | 19% |
| e) 모른다/무응답 | 5% |

12. 보험회사는 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보험사기를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의 보험금 청구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a) 매우 그렇다 | 10% |
| b) 그렇다 | 28% |
| c) 어느정도 그렇다 | 9% |
| d) 그렇지 않다 | 2% |
| e) 모른다/무응답 | 6% |

**(조혜원 선임연구원)**

## 5. 미국, 손해보험회사 파산 실태*

*미, 손해보험 회사의 2002년도 파산회사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27% 증가*

□ A.M. Best에 따르면,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파산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2002년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파산회사 수는 38개 회사로 전년 대비 27% 증가함.

o 이하에서는 1991~2002년사이에 일어난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파산현황과 파산원인, 파산율, 파산에 따라 지출된 보험보장기금현황을 제시하고자 함.

<미국 손해보험회사 파산 현황>

□ A.M. Best에 따르면 1999년 이후로 파산한 손해보험회사의 수는 2001년에 30개 회사, 2002년에 38개 회사로 증가하고 있음.

o 반면, NAIC 자료에 의하면 총 12개사가 파산하여 전년보다 5개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o A.M. Best와 NAIC의 보고서에서 나타난 파산한 손해보험회사의 수가 다른 이유는 파산한 보험회사를 파악하는 세부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임.

- NAIC의 보고서의 경우, 파산한 손해보험회사를 파악할 때 합병된 보험회사들을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였기 때문임.

- 즉, 개별 보험회사들은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합병되기 때문에 합병되어 만들어진 릴라이언스(Reliance)보험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간주함.

* 동 자료는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Insolvencies/ Guaranty Funds』, HOT Topics & INSURANCE ISSUES 와 BEST'S REVIEW, 『By the Numbers』, 2003.4.을 요약·정리한 것임.

o 그러나, A.M. Best 보고서는 릴라이언스(Reliance)보험그룹 산하에 있는 11개 보험회사를 각각 하나의 보험회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파산한 숫자가 크게 나타남.

미국 손해보험회사 파산 현황

(단위 : 회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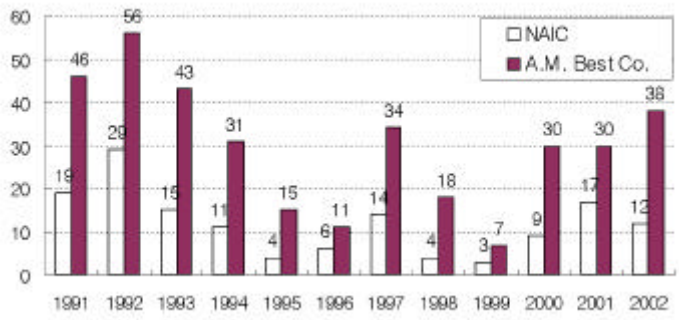


*최근에는 준비금부족으로 인해 파산한 보험회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999년 이후 파산한 보험회사의 수가 증가한 이유는 보험금에 대한 부적절한 준비금 적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o 2001년, 2002년에 준비금 부족으로 파산한 보험회사는 각각 71%, 61%로 나타남.

o 과거자료에 의하면, 준비금 부족으로 파산한 보험회사의 비중은 30 ~ 35% 사이인데 비해 2001, 2002년의 준비금 부족으로 인한 파산한 보험회사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o 부적절한 가격결정과 지속불가능한 성장도 보험회사의 파산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o 2002년에 파산한 보험회사를 살펴보면, 근로자재해보상(WC)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와 소형 자동차보험회사가 대부분이고 일부 의료사고 관련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도 포함됨.

- 또한 의료사고 관련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파산시 보험보장기금(state guaranty funds)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 손해보험회사 파산 원인>

*파산한 원인을 살펴보면, 손실준비금 부족(51%), 급속한 성장(10%), 운영미숙(8%) 순으로 나타남.*

□ 1993년부터 2002년 사이에 미국손해보험회사가 파산한 원인을 살펴보면, 손실준비금 부족이 전체의 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급속한 성장이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손해보험회사 파산 원인(1993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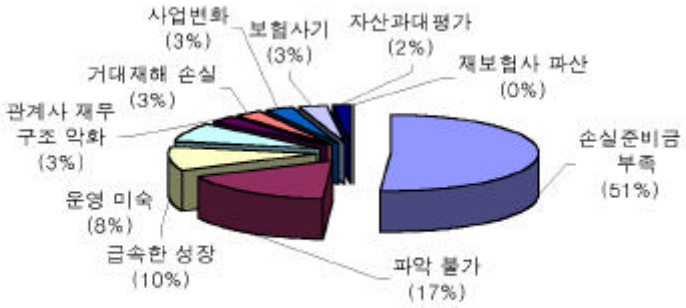


주 : ( )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연도별 파산율, 2001년 : 1.03%, 2002년 : 1.33%*

<미국 손해보험회사 연도별 파산율>

□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파산율은 2002년의 경우 1.33%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o 2002년 1.33%의 파산율은 1993년의 1.20%보다 높은 수치임.

**미국 손해보험회사 연도별 파산율(1993 200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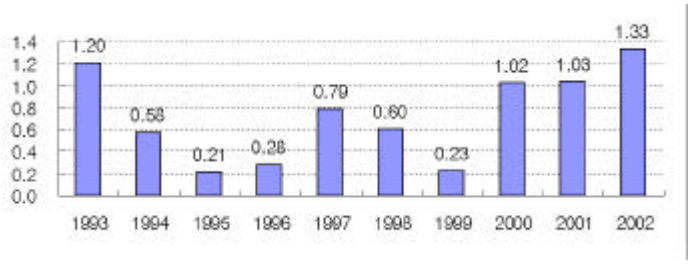


**<미국 손해보험 연도별 보험보장기금 현황>**

*파산으로 갹출된 보험보장기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3억 16백만달러에 이름.*

□ NCIGF(the National Conference of Insurance Guaranty Funds)에 따르면, 2000년의 경우 파산으로 인해 갹출된 보험보장기금(state guaranty funds)는 3억 16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o 이는 1999년 2억 34백만 달러에 비해 40% 증가하였으며, 또한 1996년 95백만 달러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미국 손해보험 연도별 보험보장기금 현황(1991 2000)**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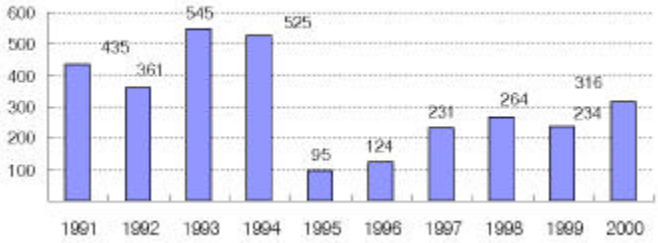


**(신동현 연구원)**

## 6. 미국,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오차 분석*

<개요>

*개인용자보험요율 오차방지와 수정을 위한 대안제시 목적*

□ QP(Quality Planning)사는 미국의 주요 10개의 보험회사의 12백만 건이 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요율 오차(Premium Rating Error)를 분석하였음.

<보험요율 오차 원인>

□ 보험료손실은 실제보험료에서 기대 연간주행거리가 주어졌을 경우의 기대보험료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o 보험요율 오차는 실제보험료에서 기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의 합계를 실제보험료 합계로 나눈 값으로 나타남. 즉, 보험요율 오차는 실제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남.

*보험요율 오차 주요원인, "통학/ 주행거리"와 "신규보험가입 운전자"로 분석*

□ 동보고서에서 추정한 기대치와 보고된 수치와의 차이 측정결과, 보험요율 오차는 보험료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o 차량요율요소에서는 "통학/ 연간주행거리"가 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됨.

- 차량요율요소를 살펴보면, 통학/ 연간주행거리(1.6%), 차량용도(0.9%), 차량특성(0.6%), 지역(0.5%) 순으로 나타남.

o 또한, 운전자요율요소에서는 "신규보험가입운전자"가 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됨.

- 운전자요율요소를 살펴보면, 신규보험가입운전자(1.8%), 운전자특성(1.5%), 교통법규위반/ 사고경력(1.4%), 차량운전자지정(1.2%) 순으로 나타남.

* 동 자료는 Quality Planning Co., "Premium Rating Error : Industry Audit Results for Private Passenger Auto", Research Reports, 2002를 요약·정리한 것임.

o 보험회사별로 보험요율 오차는 상품의 특성, 지리적 위치, 판매 채널, 요율 제도, 시스템이 보유한 과거 정보, 규제여건, 판매회사와의 관계, 언더라이팅 기준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보험요율 오차가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

| 개인용자동차 | | 보험료 비율 |
|---|---|---|
| 차량요율요소 | 통학/ 연간주행거리 | 1.6 |
| | 차량특성 | 0.6 |
| | 차량용도 | 0.9 |
| | 지역 | 0.5 |
| | 소계 | 3.7 |
| 운전자요율요소 | 신규보험가입운전자 | 1.8 |
| | 차량운전자지정 | 1.2 |
| | 운전자특성 | 1.5 |
| | 교통법규위반/ 사고경력 | 1.4 |
| | 소계 | 5.9 |
| 기타요율요소 | | 0.2 |
| 요율오차합계 | | 9.8 |

*보험요율 오차는 보험회사에 127억달러(보험료의 9.8%)의 보험료손실 유발*

<보험요율 오차에 따른 피해>

□ 보험요율 오차에 따른 2001년의 보험료손실비용은 127억 달러로, 총보험료 대비 9.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o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오차를 줄임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함.

- 보험회사는 평균적으로 매년 보험료의 5%정도의 이윤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보험요율 오차 1%를 줄임으로써 20%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음.

*부적절한 위험세분화로 위험관리비용 부담*

□ 보험회사는 위험을 적절하게 세분하지 못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위험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됨.

o 보험회사는 부적절한 위험관리로 보험요율 오차를 발생시킴.

- 예를 들어, 신규보험가입자인 16세 남자의 보험계약의 합산비율이 200%를 초과하였음.
- 동보고서에서 추정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 합산비율은 107%임.

o 보험회사는 높은 위험에 노출된 차량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손실비용을 부담하게 됨.

-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연간 주행거리 등급구간을 0~8,000, 8,001~16,000, 16,000 마일 이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음.
- 반면, 동 보고서에서는 30,000 마일이상 주행한 차량의 손실발생빈도가 16,000~20,000 마일 주행한 차량보다 31% 높다고 분석함.

*정교한 보험요율 조정체계가 경쟁우위확보 수단*

o 그러므로, 정교한 보험요율조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는 경직적인 보험요율체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보다 다각적인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자료의 체계적인 오류로 인해 과다한 경영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됨.

*언더라이팅자료의 오차로 과다경영관리비용 부담*

o 보험회사는 요율과 언더라이팅자료를 마케팅, 판매, 사업영역구분, 재무계획, 기업경영계획, 임직원보상 등의 주요자료로 이용하고 있음.

o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자료의 체계적인 오차로 인해 과다한 경영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됨.

*알릴의무 위반으로 도덕적해이 비용 부담*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위반으로 도덕적해이 비용을 부담하게 됨.

o 예를 들어, 연간주행거리가 30,000마일인 보험계약자가 연간주행거리가 5,000마일이라고 거짓 알릴 경우, 보험회사는 거짓으로 알린 보험계약자에게 실제 30,000마일을 주행한 계약자보다 더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됨.

o 보험회사는 도덕적해이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알릴 경우 심각한 손실비용을 부담하게 됨.

-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죽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할 경우, 높은 보험금 청구행태와 관련이 있고, 나아가 보험사기적 행위와 연결됨.

*보험요율로 계약자간 요율부과의 형평성 저하*

□ 보험요율 오차로 인해 보험계약자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위험에 대응한 부적절한 요율부과로 요율의 형평성이 저하되는 것임.

o 보험요율 오차로 인해 낮은 위험을 보유한 보험계약자가 높은 위험을 보유한 보험계약자를 보조하는 결과를 초래함.

o 보험회사는 보험요율 오차의 25%에 해당하는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로부터 과다 청구하게 됨.

□ 보험요율 오차로 인해 보험료를 정확하게 책정하는 보험모집 종사자는 잘못된 계약을 판매하려는 보험모집 종사자에 비해 경쟁우위를 점유하지 못하게 됨.

<보험요율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 분석>

*보험요율 오차를 줄이기 위해 서신 질의서 작성방법과 언더라이팅직원의 전화인터뷰방법 활용가능*

□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요율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계약갱신시 질의서 작성방법과 언더라이팅직원에 의한 전화인터뷰방법이 있음.

o 갱신계약시 질의서 작성 방법의 경우, 즉 변경된 정보를 얻기 위해 서신을 보낼 경우에 보험회사가 정한 일정수준의 연간주행거리보다 높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갱신보험계약자의 응답비율은 낮고 또한 데이터의 질도 좋지 않음.

-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응답하지 않은 갱신계약자에게 일정수준의 연간주행거리를 지정할 경우에 실제로 응답한 갱신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정한 일정수준의 연간주행거리보다 낮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어 낮은 보험료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높은

응답율을 보일 것임.

- 반면, 보험회사가 정한 일정수준의 연간주행거리보다 높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갱신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낮게 책정받기 위해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응답율을 보일 것임.

*이 두 방법 모두 실효성이 없음.*

o 언더라이팅직원에 의한 전화인터뷰방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임.

- 왜냐하면, 보험계약건수 대비 언더라이팅직원의 비율이 낮아 업무량이 너무 많아 제대로 언더라이팅을 하지 못할 것임.

- 언더라이팅직원은 보험계약자와 접촉하고 응답을 받는 데 적절한 스케줄을 잡지 못함으로써 비효율을 발생시킴.

-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시스템은 계약갱신시 언더라이팅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언더라이팅직원은 적절한 인터뷰기술을 교육받지 못함으로써 보험요율 오차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킴.

*보험요율 오차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관리자위임, 오차평가, 새로운 기술로의 전환 등을 고려*

□ 보험회사는 보험요율 오차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관리자위임, 오차평가, 새로운 기술로의 전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정확한 보험요율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강력한 언더라이팅 정책과 위임이 필요함.

o 보험회사는 특이한 보험요율 오차 프로파일을 파악하기 위해 철저한 오차평가 작업이 수반되어야 함.

- 보험요율 오차는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요인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왜냐하면, 보험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특성, 기존 검증시스템, 지리적 위치, 판매채널, 시스템이 보유한 과거 정보, 규제환경, 보험모집 종사자와의 관계, 언더라이팅 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임.

o 메일이나 전화인터뷰를 통한 방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보험회사는 통계적 패턴분석기술, 전문가시스템,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모든 보험계약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검증기능 등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오차탐지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보험요율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고객지향적인 언더라이팅 계획이 필요함.

- 고객의 의도적인 거짓고지는 보험요율 오차의 주요 원인이므로, 보험회사는 협조적인 고객관계 정립이 필요함.

-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직원의 내재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콜센터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함.

<시사점>

□ 보험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른 중요한 위협과는 달리 보험요율 오차 자체를 수정함으로써 이익을 증가시켜줌.

o 보험회사는 계약갱신시 적절한 언더라이팅으로 요율을 수정하여 이익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동화된 오차탐지시스템의 도입과 고객지향적인 언더라이팅계획 필요*

□ 자동화된 오차탐지시스템과 콜센터의 활용은 보험요율 오차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할 것임.

o 자동화된 오차탐지시스템과 콜센터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보험회사는 이익, 경쟁우위, 위험관리 등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임.

□ 보험회사는 보험요율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고객지향적인 언더라이팅 계획이 필요함.

(신동현 연구원)

# OECD 동향

## ◆ OECD의 보험관련 국제기준 논의 동향

### 1. 배 경

| |
|---|
| **2003년 6월에 개최된 OECD보험회의에서 보험회계, 기업연금, 자유화 등 국제기준 설정이 추진되고 있는 분야의 논의 내용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 2003년 6월 개최된 OECD 보험관련 회의(보험전문가 회의, 사적연금 작업반 회의, 보험위원회)에서 논의된 국제기준 관련 논의 중 이슈가 되는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o 보험회계기준 변경 : 국제회계기준 위원회 (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는 2006년 이후 모든 보험회계 기준을 '공정가치(Fair Value)로 평가하는 자산-부채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계획을 설명하고 OECD 회원국의 지지를 받고자 함.

o OECD 기업연금원칙 제정 : 사적연금 작업반은 기업연금 관련 제도를 8개 원칙으로 종합하여 OECD의 공식선언으로 채택함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기업연금 제도 평가에 적용코자 함.

o 보험자유화 이행계획서 추진 : 보험위원회는 보험규제방식에 대한 WTO의 논의 과정에 영국, 미국 등에서 선호하고 있는 '수직적 접근방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개입하자는 안건에 대해 토의함.

## 2. 보험회계기준의 변경

| |
|---|
| **자산-부채 방식의 도입으로 보험사의 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발생하는 회계상의 불안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 IASB는 보험회계의 국제기준으로 공정가치(fair value)에 기초한 자산·부채방식(asset and liability)을 적용하는 계획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함.

o 자산·부채 방식이 적용될 경우 수입과 지출은 공정가치 즉 시가로 평가된 자산과 부채의 변동과 동일하게 하게 나타남.

o 제 1단계 (2004년 완료) : 보험계약의 정의, 투자형 계약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 및 공시 등의 항목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질 것임.

o 제 2단계 (2006년 완료) : 공정가격의 적용 범위를 모든 보험계약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회계기준의 전면적인 적용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함.

- 자산 뿐 아니라 부채(책임준비금)의 평가에 있어서도 미래의 현금 흐름을 고려한 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됨을 의미함.

□ 자산 부채 방식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으나 2006년 이후 전면 실시 지역은 EU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음.

o 보험사의 경영 성과가 실제 영업실적보다는 자본시장의 움직임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보험사의 경영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크게 부각됨.

- 특히, 보험사 부채의 경우 장기적인 성격이 있어 금리 즉 할인율의 변동에 대해 부채의 시가평가 금액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이 우려됨.

o 미국의 경우 모든 금융 상품에 동일한 시가평가방식을 적용하기보다는 보험산업의 특징에 맞는 새로운 회계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o 보험사의 부채평가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2006년 전면 시행은 EU 등 일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3. OECD 기업연금원칙 제정

**OECD 사적연금작업반은 기업연금 관련 제도 전체를 포괄하는 공식적인 원칙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자발성과 비강제성의 원칙에 의거 평가작업을 실시할 예정임.**

□ OECD사무국은 OECD 기업연금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각국의 기업연금 상태를 평가하고자 함.

o 2000년 11월 합의되었던 기업연금규제에 대한 15가지 원칙은 규제 및 감독원칙, 연금 지배구조, 수급권 보장의 3개 부분으로 나뉘어 세부 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2003년 6월회의는 이를 모두 8개 원칙으로 통합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공식안으로 채택하고자 함.

o OECD는 자체 스텝, 각국 대표단의 전문가 및 국제 기관의 기업연금 전문가를 포괄하는 팀을 구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8개 핵심원칙에 근거한 기업연금 평가작업을 할 예정.

| OECD 기업연금원칙(시안)의 8대 핵심 원칙 | 15개 기본 원칙(2000년 11월) |
|---|---|
| 핵심원칙 1<br>(효과적인 통제 및 감독을 위한 조건) | 원칙 1 (제도) 원칙 2 (금융시장 감독)<br>원칙 10 (공정경쟁) |
| 핵심원칙 2<br>(연금계약, 연기금, 독립적 운영기관의 설립) | 원칙 5<br>(규제시스템과 분리) |
| 핵심원칙 3<br>(지배 구조) | 원칙 15 (기업지배구조)<br>원칙 9 (자율 감독) |
| 핵심원칙 4<br>(연금계약의무, 적립방식, 청산, 보험) | 원칙 6 (적립) 원칙 7 (계산방법)<br>원칙 13 (청산) 원칙 12 (보험 체계) |
| 핵심원칙 5 (자산 관리) | 원칙 11 (투자) 원칙 7 (계산방법) |
| 핵심원칙 6<br>(수급자의 권리 및 급부의 적정성) | 원칙 3 (수급자의 권리)<br>원칙 4 (사적 계약의 적정성) |
| 핵심원칙 7 (공시와 교육) | 원칙 14 (공시와 교육) |
| 핵심원칙 8 (감독) | 원칙 8 (감독 체계) |

□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올해 안에 공식적인 기업연금원칙이 선언될 것으로 예상됨.

o 주로 핵심원칙 1에서 국가별 연금제도의 상이성이 있고 기업연금 제도의 고려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점이 있음.

- 기업 연금 가입시 관련 금융기관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은 일본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일부 국가들의 국내 여건과 배치되는 것으로 파악됨.

- 연금 제도의 목표와 관련 정책의 수행과 관련된 일부 조항에 있어서 전체 경제나 금융 시장의 안정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한계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남.

o 2003년 7월 중 수정보완한 후 2003년 안에 공식적인 OECD 기업연금원칙이 제정되고 2004년부터는 비강제성(non-binding)과 자발성(voluntary)의 원칙 하에 각국의 기업연금에 대한 평가가 실시될 예정임.

## 3. 보험자유화 이행 계획서 추진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규제 논의에 대해 OECD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가별 입장차가 크게 나타남.**

□ '회원국의 보험관련 규제에 대한 모범규준'과 관련한 WTO 규제작업반의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OECD의 지지를 요청하는 안건이 제기됨.

o 보험자유화 이행 계획서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약속'과 '회원국의 보험관련 규제에 대한 모범규준'의 2개 부문으로 구성됨.

o 현재 WTO에서는 '회원국의 보험관련 규제에 대한 모범규준'은 입법절차, 세제개정시 WTO사전통보 의무화, 상품 및 요율의 신고/ 인가제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2가지 접근 방식이 검토되고 있음.

- GATS Article VI(수평적 접근방식) : 일본에서 제안한 것으로 전회원국의 동의를 받는 공동의 규제 원칙을 정하는 것임.

- GATS Article XVIII(수직적 접근방식) : 미국, 일본, 스위스 등이 선호하는 것으로 일정수준의 규제원칙을 제시하고 회원국별로 일부 또는 전체항목에 대해 수용 여부를 제시토록 하는 것임.

□ 보험산업의 발전 및 자유화 정도의 국가별 차이가 심해 강도 높은 규제 완화의 추진을 의미하는 GATS Article XVIII의 채택에는 많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보험산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 일부 국가는 GATS Article XVIII을 채택하고 보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함.

o 보험선진국들의 선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의 자유화 정도가 국가별로 차이가 큰 만큼 GATS Article XVIII의 채택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전망임.

## 4. 시사점

| |
|---|
| 진전 속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세계 보험산업은 각종 기준의 통일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유화의 길로 가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 보험 회계 기준, 보험자유화의 향방에 따라 우리 보험사의 경영 환경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인 만큼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

o 새로운 보험 회계 기준의 적용 시 책임준비금적립 및 지급여력제도 등 우리 보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특히, 2006년 회계기준이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도 도입 국가가 확대되면서 국제적 압력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기적으로 도입이 불가피할 것임.

o OECD 기업연금원칙이 선언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인 기업연금법이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OECD 기업연금원칙은 회원국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신용도 평가에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임.

o 보험자유화 이행계획서는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보험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만큼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만약 WTO에서 수직적 접근방식인 GATS Article XVIII이 채택될 경우 시장 개방 및 규제 완화 속도가 크게 빨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이태열 연구위원)

# 통 계 표

##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 구 분 | | 2002 | | | 2003 |
|---|---|---|---|---|---|
| | | 2/ 4 | 3/ 4 | 4/ 4 | 1/ 4 |
| 국내총생산 성장률 | | 6.6 | 5.8 | 6.5 | 3.7 |
| 경상수지 | | 1,600.1 | 929.4 | 1,970.6 | △1,721.3 |
| 수 출 | | 40,252 | 41,255 | 45,307 | 43,078 |
| 수 입 | | 37,192 | 38,885 | 42,262 | 44,218 |
| 실업률 | | 3.0 | 2.8 | 2.9 | 3.6 |
| 금리 | 국고채(3년) | 5.66 | 5.30 | 5.11 | 4.62 |
| | 회사채(3년) | 6.59 | 6.00 | 5.68 | 5.38 |
| 소비자물가지수 | | 106.9 | 107.4 | 107.9 | 109.8 |
| 환율 | 원/ 달러 | 1,201.30 | 1,227.80 | 1,189.20 | 1,254.60 |
| | 엔/ 달러 | 119.6 | 121.70 | 118.79 | 117.99 |
| 종합주가지수 | | 742.72 | 646.42 | 627.55 | 556.33 |
| 외환보유고 | | 112,438 | 116,690 | 121,413 | 123,825 |

주 :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 <표 2> 주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수신 추이

(기간 중 증감, 억원)

| 구 분 | 2002 | | | 2003 |
|---|---|---|---|---|
| | 2/ 4 | 3/ 4 | 4/ 4 | 1/ 4 |
| 은 행 계 정 | 116,181 | 103,885 | 138,525 | 84,136 |
| 실세요구불 | -2,454 | 15,642 | 54,148 | 91,257 |
| 저축성예금 | 65,453 | 84,845 | 89,929 | 111,890 |
| 금 전 신 탁 | -6,827 | -18,817 | -1,711 | -22,453 |
| 추가금전 | -3,082 | -1,928 | -4,317 | 1,159 |
| 단위금전 | 663 | -4,648 | -3,793 | -2,675 |
| 신종적립 | -12,175 | -9,952 | -7,771 | -5,897 |
| 투 신 사 | -34,535 | 49,664 | -2,159 | -80,618 |
| 단기채권 | 4,791 | 40,048 | 43,769 | 26,497 |
| 장기채권 | -45,443 | -19,842 | -9,962 | -3,321 |
| M M F | -46,064 | 34,135 | 21,871 | -96,384 |
| 주 식 형[1)] | 52,181 | -4,677 | -57,297 | -7,950 |
| 종 금 사 | -10,948 | 1,735 | -10,262 | 26,715 |
| 증권사고객예탁금 | -24,263 | -13,406 | -965 | 28,774 |
| 주식형뮤추얼펀드 | 2,546 | 2,472 | -1,086 | 1,474 |

주 : 혼합투자신탁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 수입보험료 증가율 · 보험료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 구 분 | | FY2001 | | FY2002 | | | | |
|---|---|---|---|---|---|---|---|---|
| | | 4/ 4 | 연간 | 1/ 4 | 2/ 4 | 3/ 4 | 4/ 4 | 연간 |
| 생존 보험 | 보험료 | 20,431 | 74,955 | 21,382 | 22,121 | 23,611 | 24,311 | 91,424 |
| | 증가율 | -7.8 | -31.7 | 19.7 | 23.5 | 25.9 | 19.0 | 22.0 |
| | 비중 | 18.3 | 15.8 | 18.5 | 19.4 | 16.2 | 21.0 | 18.6 |
| 사망 보험 | 보험료 | 47,632 | 174,334 | 50,313 | 52,829 | 54,866 | 55,814 | 213,677 |
| | 증가율 | 35.0 | 37.0 | 30.9 | 22.5 | 21.2 | 17.2 | 22.6 |
| | 비중 | 42.6 | 36.8 | 43.6 | 46.4 | 37.6 | 48.2 | 43.5 |
| 생사혼합 보험 | 보험료 | 30,185 | 128,510 | 27,687 | 26,869 | 28,877 | 26,959 | 110,392 |
| | 증가율 | -20.3 | -22.8 | -16.5 | -16.5 | -12.4 | -10.7 | -14.1 |
| | 비중 | 27.0 | 27.1 | 23.9 | 23.6 | 19.9 | 23.3 | 22.5 |
| 개인 보험계 | 보험료 | 98,248 | 377,799 | 99,382 | 101,818 | 107,116 | 107,084 | 415,493 |
| | 증가율 | 3.1 | -6.3 | 11.0 | 9.2 | 10.6 | 9.0 | 10.0 |
| | 비중 | 88.0 | 79.8 | 86.0 | 89.4 | 73.6 | 92.6 | 84.7 |
| 단체 보험계 | 보험료 | 13,436 | 95,844 | 16,131 | 12,098 | 38,332 | 8,613 | 75,175 |
| | 증가율 | -23.5 | -20.0 | -28.5 | -32.5 | -8.6 | -35.9 | -21.6 |
| | 비중 | 12.0 | 20.2 | 14.0 | 10.6 | 26.4 | 7.4 | 15.3 |
| 전 체 | 보험료 | 111,684 | 473,643 | 115,606 | 113,917 | 145,448 | 115,697 | 490,668 |
| | 증가율 | -1.0 | -9.5 | 3.1 | 2.5 | 4.8 | 3.6 | 3.6 |
| | 비중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 1) FY1999년부터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된 실적이며, FY2001 2/ 4분기부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 구 분 | | FY2001 | | FY2002 | | | |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생존보험 | 지급보험금 | 14,665 | 64,852 | 11,511 | 12,142 | 12,532 | 16,439 | 52,624 |
| | 증가율 | -24.2 | -10.9 | -37.4 | -32.4 | -9.3 | 12.1 | -18.9 |
| | 지급률 | 71.8 | 86.5 | 53.8 | 54.9 | 53.1 | 67.6 | 57.6 |
| 사망보험 | 지급보험금 | 10,880 | 46,263 | 11,653 | 13,672 | 14,161 | 15,933 | 55,419 |
| | 증가율 | 7.0 | 26.1 | 7.0 | 4.3 | 24.4 | 46.4 | 19.8 |
| | 지급률 | 22.8 | 26.5 | 23.1 | 25.9 | 25.9 | 28.5 | 25.9 |
| 생사혼합보험 | 지급보험금 | 25,287 | 116,182 | 21,777 | 22,374 | 24,649 | 35,355 | 104,155 |
| | 증가율 | -22.3 | -3.0 | -29.8 | -21.9 | -21.1 | 39.8 | -10.4 |
| | 지급률 | 83.8 | 90.4 | 78.7 | 83.3 | 85.4 | 131.1 | 94.4 |
| 개인보험계 | 지급보험금 | 50,833 | 227,297 | 44,941 | 48,187 | 51,342 | 67,727 | 212,197 |
| | 증가율 | -18.1 | 0.9 | -25.5 | -19.3 | -9.0 | 33.2 | -6.6 |
| | 지급률 | 51.7 | 60.2 | 45.2 | 47.3 | 47.9 | 63.2 | 51.1 |
| 단체보험계 | 지급보험금 | 15,694 | 116,231 | 19,162 | 14,451 | 31,030 | 17,340 | 81,984 |
| | 증가율 | -44.9 | -33.6 | -45.9 | -45.1 | -20.1 | 10.5 | -29.5 |
| | 지급률 | 116.8 | 121.3 | 118.8 | 119.4 | 81.0 | 201.3 | 109.1 |
| 전 체 | 지급보험금 | 66,527 | 343,528 | 64,103 | 62,639 | 82,372 | 85,067 | 294,181 |
| | 증가율 | -26.5 | -15.0 | -33.0 | -27.2 | -13.5 | 27.9 | -14.4 |
| | 지급률 | 59.6 | 72.5 | 55.4 | 55.0 | 56.6 | 73.5 | 60.0 |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FY1999년부터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된 실적이며, FY2001 2/4분기부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 구 분 | | FY2001 | | FY2002 | | | | |
|---|---|---|---|---|---|---|---|---|
| |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생존보험 | 사업비 | 3,731 | 11,660 | 3,382 | 3,340 | 3837 | 3,586 | 14,145 |
| | 증가율 | 20.7 | 0.8 | 38.0 | 41.4 | 23.1 | -3.9 | 21.3 |
| | 사업비율 | 18.3 | 15.6 | 15.8 | 15.1 | 16.3 | 14.8 | 15.5 |
| 사망보험 | 사업비 | 13,973 | 53,101 | 14,051 | 15,205 | 15896 | 15,208 | 60,359 |
| | 증가율 | 24.3 | 36.3 | 15.8 | 15.7 | 14.7 | 8.8 | 13.7 |
| | 사업비율 | 29.3 | 30.5 | 27.9 | 28.8 | 29.1 | 27.2 | 28.2 |
| 생사혼합보험 | 사업비 | 2,400 | 11,175 | 1,992 | 1,924 | 2326 | 1,877 | 8,119 |
| | 증가율 | -51.4 | -38.6 | -37.4 | -35.0 | -11.6 | -21.8 | -27.3 |
| | 사업비율 | 8.0 | 8.7 | 7.2 | 7.2 | 8.1 | 7.0 | 7.4 |
| 개인보험계 | 사업비 | 20,105 | 75,936 | 19,425 | 20,468 | 22059 | 20,671 | 82,623 |
| | 증가율 | 4.3 | 10.2 | 9.4 | 10.8 | 12.5 | 2.8 | 8.8 |
| | 사업비율 | 20.5 | 20.1 | 19.5 | 20.1 | 20.6 | 19.3 | 19.9 |
| 단체보험계 | 사업비 | 527 | 2,280 | 572 | 561 | 699 | 736 | 2,568 |
| | 증가율 | -44.1 | -34.5 | 1.4 | -0.7 | 11.8 | 39.7 | 12.6 |
| | 사업비율 | 3.9 | 2.4 | 3.5 | 4.6 | 1.8 | 8.5 | 3.4 |
| 전 체 | 사업비 | 20,632 | 78,216 | 19,997 | 21,029 | 22758 | 21,407 | 85,191 |
| | 증가율 | 2.1 | 8.0 | 9.1 | 10.5 | 12.5 | 3.8 | 8.9 |
| | 사업비율 | 18.5 | 16.5 | 17.3 | 18.5 | 15.6 | 18.5 | 17.4 |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FY1999년부터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된 실적이며, FY2001 2/4분기부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4)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율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 구 분 | | FY2001 | | FY2002 | | | | |
|---|---|---|---|---|---|---|---|---|
| | | 4/ 4 | 연간 | 1/ 4 | 2/ 4 | 3/ 4 | 4/ 4 | 연간 |
| 화 재 | 보험료 | 698 | 3,035 | 804 | 755 | 910 | 750 | 3,219 |
| | 성장율 | 9.8 | 10.2 | 13.1 | 2.2 | 2.6 | 7.4 | 6.1 |
| | 구성비 | 1.5 | 1.6 | 1.6 | 1.5 | 1.7 | 1.5 | 1.6 |
| 해 상 | 보험료 | 1,402 | 5,292 | 1,506 | 1,388 | 1,293 | 1,418 | 5,605 |
| | 성장율 | 23.8 | 21.8 | 31.5 | 9.6 | -12.6 | 1.1 | 5.9 |
| | 구성비 | 3.0 | 2.8 | 3.0 | 2.7 | 2.4 | 2.8 | 2.7 |
| 자동차 | 보험료 | 18,012 | 74,601 | 19,334 | 20,917 | 20,529 | 18,358 | 79,138 |
| | 성장율 | 10.7 | 14.8 | 8.3 | 7.5 | 6.5 | 1.9 | 6.1 |
| | 구성비 | 38.6 | 39.9 | 39.1 | 40.7 | 37.4 | 36.7 | 38.4 |
| 보 증 | 보험료 | 1,954 | 7,156 | 2,184 | 2,235 | 2,413 | 2,530 | 9,362 |
| | 성장율 | 27.3 | 18.9 | 40.0 | 28.1 | 27.2 | 29.5 | 30.8 |
| | 구성비 | 4.2 | 3.8 | 4.4 | 4.3 | 4.4 | 5.1 | 4.5 |
| 특 종 | 보험료 | 3,110 | 13,876 | 4,302 | 4,319 | 4,641 | 3,472 | 16,734 |
| | 성장율 | 32.4 | 29.7 | 24.5 | 27.2 | 18.5 | 11.6 | 20.6 |
| | 구성비 | 6.7 | 7.4 | 8.7 | 8.4 | 8.4 | 6.9 | 8.1 |
| 해외 원보험 | 보험료 | 156 | 502 | 144 | 121 | 146 | 153 | 564 |
| | 성장율 | 159.9 | 13.8 | 7.9 | -2.1 | 63.8 | -1.8 | 12.3 |
| | 구성비 | 0.3 | 0.3 | 0.3 | 0.2 | 0.3 | 0.3 | 0.3 |
| 장 기 | 보험료 | 19,271 | 72,882 | 19,302 | 19,707 | 20,342 | 20,783 | 80,134 |
| | 성장율 | 11.8 | 5.0 | 11.6 | 11.0 | 9.6 | 7.8 | 10.0 |
| | 구성비 | 41.3 | 39.0 | 39.0 | 38.3 | 37.0 | 41.5 | 38.9 |
| 개 인 연 금 | 보험료 | 1,660 | 6,678 | 1,661 | 1,684 | 1,701 | 1,740 | 6,786 |
| | 성장율 | 3.4 | 8.5 | -0.4 | 0.4 | 1.7 | 4.8 | 1.6 |
| | 구성비 | 3.6 | 3.6 | 3.4 | 3.3 | 3.1 | 3.5 | 3.3 |
| 퇴 직 보 험 | 보험료 | 387 | 2,865 | 258 | 282 | 2,982 | 879 | 4,401 |
| | 성장율 | -42.6 | -25.1 | -12.9 | 38.9 | 50.7 | 127.3 | 53.6 |
| | 구성비 | 0.8 | 1.5 | 0.5 | 0.5 | 5.4 | 1.8 | 2.1 |
| 계 | 보험료 | 46,649 | 186,887 | 49,494 | 51,409 | 54,958 | 50,083 | 205,944 |
| | 성장율 | 12.4 | 10.8 | 12.2 | 10.9 | 10.5 | 7.4 | 10.2 |

주 : 1) 성장율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 구 분 | | FY2001 | FY2002 | | | |
|---|---|---|---|---|---|---|
| | | 4/ 4 | 1/ 4 | 2/ 4 | 3/ 4 | 4/ 4 |
| 화재보험 | 경과손해율 | 51.1 | 41.7 | 46.9 | 57.0 | 54.3 |
| | 사업비율 | 54.2 | 53.6 | 46.5 | 48.7 | 51.4 |
| | 합산비율 | 105.3 | 95.4 | 93.4 | 105.7 | 105.6 |
| 해상보험 | 경과손해율 | 46.0 | 37.4 | 49.5 | 53.4 | 51.6 |
| | 사업비율 | 34.0 | 30.9 | 33.8 | 33.1 | 32.7 |
| | 합산비율 | 80.0 | 68.3 | 83.3 | 86.5 | 84.4 |
| 자동차보험 | 경과손해율 | 67.6 | 62.8 | 64.7 | 66.9 | 68.4 |
| | 사업비율 | 32.6 | 30.5 | 31.9 | 32.3 | 32.2 |
| | 합산비율 | 100.2 | 93.3 | 96.6 | 99.2 | 100.6 |
| 보증보험 | 경과손해율 | 208.3 | 38.6 | 42.4 | 77.7 | 42.0 |
| | 사업비율 | 11.3 | 7.5 | 10.7 | -19.0 | 7.0 |
| | 합산비율 | 219.6 | 46.1 | 53.1 | 58.7 | 49.1 |
| 특종보험 | 경과손해율 | 53.8 | 49.5 | 46.0 | 41.4 | 47.5 |
| | 사업비율 | 24.0 | 26.1 | 17.6 | 19.8 | 23.6 |
| | 합산비율 | 77.8 | 75.6 | 63.6 | 61.3 | 71.1 |
| 해외원보험 | 경과손해율 | 57.8 | 52.4 | 53.6 | 54.5 | 50.4 |
| | 사업비율 | 54.6 | 63.1 | 59.1 | 56.8 | 53.0 |
| | 합산비율 | 112.4 | 115.5 | 112.7 | 111.1 | 103.4 |
| 장기보험 | 경과손해율 | 84.4 | 81.6 | 81.4 | 81.4 | 81.5 |
| | 사업비율 | 21.5 | 21.9 | 22.1 | 22.2 | 21.7 |
| | 합산비율 | 106.0 | 103.5 | 103.5 | 103.6 | 103.2 |
| 개인연금 | 경과손해율 | 117.8 | 113.3 | 113.7 | 114.4 | 118.7 |
| | 사업비율 | 10.8 | 10.9 | 11.2 | 11.0 | 11.2 |
| | 합산비율 | 129.6 | 124.2 | 124.9 | 125.4 | 129.9 |
| 전 체 | 경과손해율 | 80.8 | 70.7 | 71.1 | 73.5 | 72.9 |
| | 사업비율 | 26.0 | 25.1 | 25.3 | 24.4 | 25.5 |
| | 합산비율 | 106.8 | 95.8 | 96.4 | 97.9 | 98.4 |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3)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97-2 남북 경협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억, 1998.6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I)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 | |
|---|---|
| 99-2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
| 99-3 | 국민연금 민영화보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억, 1999.3 |
| 99-4 |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
| 99-5 |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효·해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
| 99-6 |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
| 99-7 |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
| 99-8 |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
| 2000-1 |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
| 2000-2 |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
| 2000-3 |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
| 2000-4 |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
| 2000-5 |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
| 2000-6 |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헌수, 2000.6 |
| 2000-7 |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
| 2000-8 |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
| 2000-9 |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랜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
| 2000-10 |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
| 2001-1 |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01.1 |
| 2001-2 |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
| 2001-3 |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요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
| 2001-4 |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
| 2001-5 |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
| 2001-6 |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
| 2001-7 |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
| 2001-8 |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
| 2001-9 |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

| | |
|---|---|
| 2001-10 |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
| 2001-11 |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
| 2002-1 | 국내외 보험사기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3 |
| 2002-2 |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3 |
| 2002-3 |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5 |
| 2002-4 |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5 |
| 2002-5 |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10 |
| 2002-6 |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10 |
| 2002-7 |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박홍민,이정환, 2002.12 |
| 2002-8 |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신동현,배윤희, 2002.12 |
| 2003-1 |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3 |
| 2003-2 |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3 |
| 2003-3 |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3 |

■ 연구조사자료

| | |
|---|---|
| 96-1 |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
| 96-2 |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
| 96-3 |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
| 96-4 |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
| 96-5 |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
| 97-1 |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
| 97-2 |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
| 98-1 |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Ⅰ) / 김영욱, 차일권, 1998.2 |
| 98-2 |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
| 98-3 |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
| 98-4 |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

| | |
|---|---|
| 98-5 |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
| 98-6 |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
| 98-7 |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
| 99-3 |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
| 99-4 |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
| 99-5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
| 99-6 |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
| 99-7 |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
| 99-8 |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
| 99-9 | 생명보험 계약 심사(Underwriting)제도 / 장강봉, 1999.11 |
| 99-10 |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
| 2000-1 |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회, 2000.3 |
| 2000-2 |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
| 2001-1 |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
| 2001-2 |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
| 2001-3 | 지방채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회, 2001.3 |
| 2001-4 |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
| 2001-5 |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
| 2001-6 |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
| 2001-7 |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
| 2002-1 |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
| 2002-2 |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
| 2003-1 |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3.3 |
| 2003-2 |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

■ 정책연구자료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 연구논문집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Insurance Business Report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1997.5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3

| | |
|---|---|
| 7호 |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 8호 |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 9호 |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 10호 |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 11호 |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 12호 |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 13호 |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 14호 |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회남, 2002.4 |
| 15호 |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 16호 |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 5 |
| 17호 |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 영문발간문

| | |
|---|---|
| 1호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Hokyung Kim, Sangho Park, 1995.5. |
| 2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 3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 4호 |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 CEO Report

| | |
|---|---|
| 2000-1 |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5 |
| 2000-2 |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6 |
| 2000-3 |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 김재현, 2000.10 |
| 2000-4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11 |
| 2001-1 |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8 |
| 2001-2 |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8 |
| 2001-3 |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10 |
| 2002-1 |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4 |
| 2002-2 |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6 |

| | |
|---|---|
| 2002-3 |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6 |
| 2002-4 |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9 |
| 2002-5 |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10 |
| 2002-6 |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10 |
| 2003-1 |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2 |
| 2003-2 |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
| 2003-3 |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6 |

## 정기간행물

■ 월간

○ 보험통계월보

■ 계간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개발연구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table>
<tr><th>구분<br>내용</th><th>법인회원</th><th>특별회원</th><th>개인회원</th><th>연속간행물 구독회원</th></tr>
<tr><td>연회비</td><td>₩ 300,000원</td><td>₩ 150,000원</td><td>₩ 150,000원</td><td>간행물별로 다름</td></tr>
<tr><td rowspan="2">제공자료</td><td colspan="2">-연구조사보고서<br>· 연구보고서(10~15회/ 년)<br>· 조사연구자료(5~10회/ 년)<br>· 정책연구자료(3~5회/ 년)<br>· 기타 보고서<br><br>-연속간행물<br>· 보험개발연구(3-4회)<br>· 보험동향(계간)</td><td>-연구조사보고서<br>· 연구보고서(10~15회/ 년)<br>· 조사연구자료(5~10회/ 년)<br>· 정책연구자료(3~5회/ 년)<br>· 기타 보고서<br><br>-연속간행물<br>· 보험개발연구(3-4회)<br>· 보험동향(계간)</td><td rowspan="2">- 간행물별 년간 구독료는 다음과 같음<br><br>· 보험개발연구<br>(연간 3회 4회 ₩ 30,000)<br>· 보험통계월보<br>(월간 ₩ 50,000)<br>· 보험동향<br>(계간 ₩ 20,000)</td></tr>
<tr><td colspan="2">-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br>-보험통계연보<br>-보험통계월보<br>-영문발간자료</td><td>-</td></tr>
</table>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047 팩스 : 368-4099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 가입절차

구독신청서와 회비납입증 사본을 우편 또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에게 송부하여 주시면 회비입금일로부터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Yes 24,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보험동향** 2003년 여름호(통권 26호)

2003年 7月 1日 第1刷發行

發行人 임 재 영
編輯人 오 영 수

發行處 **保 險 開 發 院**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35-4
登 錄 1997. 7. 15. (바-2873)
代表電話 (02) 368-4000

印刷所 대 화 인 쇄
電 話 (02) 2265-1330

定價 6,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368-4188, 368-4183)으로 하여 주십시오.